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1074-01
연 구 보 고	2021-09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2021. 8

여성가족부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1074-01
연 구 보 고	2021-09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2021. 8

연 구 기 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의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 1
2. 연구 내용 ····· 3
3. 연구방법 ····· 4

Ⅱ. 아이돌보미 인력현황 및 직무분석 6

1. 아이돌보미 인력 현황 ····· 6
2. 아이돌보미 직무 및 자격관리 현황 ····· 11
3. 아이돌봄지원법 및 유관법령 고찰 ····· 18
4. 국가자격 도입 시 고려사항 ····· 30

Ⅲ. 국내외 유관분야 인력 양성·자격체계 분석 35

1. 요양보호사 ····· 35
2. 청소년지도사 ····· 43
3. 건강가정사 ····· 51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52
5. 국내 유관자격 현황 ····· 55
6. 국내 관련 법령 비교 ····· 60
7. 국외 돌봄인력 정책 ····· 71

Ⅳ.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쟁점 및 의견조사 결과 79

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쟁점 ····· 79
2. 국가자격 도입 관련 아이돌보미 및 사업담당자 의견 조사 결과 ····· 95

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법제화 방안 119

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배경 및 운영 개요 ····· 119
2.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법제화 방안(일부개정법률안 초안) ····· 127

참고문헌 144

부록 151

부록 1. 설문지 (아이돌보미용) ····· 152
부록 2. 설문지 (사업담당자용) ····· 167
부록 3.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181

표 목차

〈표 Ⅰ-3-1〉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 관련 설문조사 대상 및 규모 ····· 4
〈표 Ⅰ-3-2〉 설문조사 내용 ····· 5
〈표 Ⅱ-1-1〉 아이돌보미 규모 및 교육이수 현황과 추이(2011~2020년) ····· 7
〈표 Ⅱ-1-2〉 아이돌보미 연령 현황과 추이(2013~2020년) ····· 7
〈표 Ⅱ-1-3〉 아이돌보미 월 평균 임금 및 활동시간 현황과 추이(2011~2020년) ····· 8
〈표 Ⅱ-1-4〉 활동 아이돌보미 지역 및 연령 현황(2021. 1월) ····· 9
〈표 Ⅱ-2-1〉 아이돌봄 직무 능력단위 ····· 11
〈표 Ⅱ-2-2〉 아이돌봄 직무의 NCS 학습모듈 ····· 12
〈표 Ⅱ-2-3〉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14
〈표 Ⅱ-2-4〉 2021년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 ····· 15
〈표 Ⅱ-2-5〉 아이돌보미 보수교육과정: 기본과정 ····· 16
〈표 Ⅱ-3-1〉 「아이돌봄지원법」(법률 제17539호) 주요 내용 ····· 20
〈표 Ⅱ-3-2〉 직업안정법(법률 제17326호)상 직업소개업체 및 직업정보제공업체의 결격사유 및 벌칙 규정 ····· 26
〈표 Ⅱ-3-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법률 제18285호] 상 결격사유 및 벌칙 규정 ····· 27
〈표 Ⅱ-3-4〉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및 조회 관련 규정 ····· 29
〈표 Ⅲ-1-1〉 신규, 면허소지자, 경력자의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 36
〈표 Ⅲ-1-2〉 승급교육 ····· 37
〈표 Ⅲ-1-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 구성 ····· 38
〈표 Ⅲ-1-4〉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내용 ····· 39
〈표 Ⅲ-1-5〉 요양보호사 실습지도자의 자격 ····· 40
〈표 Ⅲ-1-6〉 시설 유형에 따른 1회 및 1인당 실습가능인원 ····· 40
〈표 Ⅲ-1-7〉 자격검증 시험 내용 및 방법 ····· 41
〈표 Ⅲ-2-1〉 청소년지도사 발전과정 ····· 44
〈표 Ⅲ-2-2〉 청소년지도사 양성추이(2013~2020) ····· 45
〈표 Ⅲ-2-3〉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 46
〈표 Ⅲ-2-4〉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관련) ····· 48
〈표 Ⅲ-2-5〉 연수 종류별 대상 및 시간 ····· 48
〈표 Ⅲ-3-1〉 건강가정사 이수과목 ····· 51

〈표 Ⅲ-4-1〉 연수 종류별 대상 및 시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9호) ····· 53
〈표 Ⅲ-4-2〉 신규자 및 경력자 과정 교육 내용 ····· 54
〈표 Ⅲ-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보수교육내용 ····· 55
〈표 Ⅲ-5-1〉 교육·보육·돌봄인력 자격-양성-교육·훈련 현황 ····· 56
〈표 Ⅲ-6-1〉 직무 및 자격증 교부 등 ····· 61
〈표 Ⅲ-6-2〉 결격 사유 ····· 63
〈표 Ⅲ-6-3〉 자격 취소 ····· 64
〈표 Ⅲ-6-4〉 자격시험 응시자격 ····· 64
〈표 Ⅲ-6-5〉 교육과정 ····· 65
〈표 Ⅲ-6-6〉 교육기관 ····· 65
〈표 Ⅲ-6-7〉 자격시험 실시기관 ····· 66
〈표 Ⅲ-6-8〉 자격시험 과목 ····· 67
〈표 Ⅲ-6-9〉 자격시험 응시원서 ····· 67
〈표 Ⅲ-6-10〉 자격시험 실시 공고 ····· 68
〈표 Ⅲ-6-11〉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 69
〈표 Ⅲ-6-12〉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 69
〈표 Ⅲ-6-13〉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조치 ····· 70
〈표 Ⅲ-6-14〉 경과조치 ····· 71
〈표 Ⅲ-7-1〉 아동 교육·보육·돌봄(ECEC) 인력(workers) 유형 ····· 71
〈표 Ⅳ-2-1〉 아이돌보미 응답자 특성 ····· 96
〈표 Ⅳ-2-2〉 사업담당자 응답자 특성 ····· 97
〈표 Ⅳ-2-3〉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양성과정/자격체계 개선사항 필요도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 98
〈표 Ⅳ-2-4〉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필요성-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 99
〈표 Ⅳ-2-5〉 국가자격 도입 시 항목별 필요도(12개)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 101
〈표 Ⅳ-2-6〉 국가자격 취득 시 연령제한 ····· 102
〈표 Ⅳ-2-7〉 국가자격 취득 시 최저학력 기준 ····· 102
〈표 Ⅳ-2-8〉 적절한 국가자격 갱신절차 필요 여부 ····· 102
〈표 Ⅳ-2-9〉 적절한 국가자격 갱신절차 기간 ····· 103
〈표 Ⅳ-2-10〉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 시 적절한 방식 ····· 103
〈표 Ⅳ-2-11〉 국가자격 도입 시 늘려야 할 교과수업 시간 ····· 104
〈표 Ⅳ-2-12〉 국가자격 도입 시 적절한 교육시간 구성 - 교과(이론),교과(실기),현장실습 104
〈표 Ⅳ-2-13〉 국가자격 도입 및 이행 방식별 취득의향과 적절성 의견 ····· 105
〈표 Ⅳ-2-14〉 국가시자격 도입방식별 취득의향이 없는 이유(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 107

〈표 Ⅳ-2-15〉 국가시험 합격기준 및 난이도-사업담당자 ····· 107
〈표 Ⅳ-2-16〉 유관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시간 면제에 대한 적절성 ····· 108
〈표 Ⅳ-2-17〉 유관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시간 면제에 대한 조정 의견 ····· 108
〈표 Ⅳ-2-18〉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경험 ····· 109
〈표 Ⅳ-2-19〉 향후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의향 유무 ····· 110
〈표 Ⅳ-2-20〉 국가자격제도 도입시 도움정도 ····· 112
〈표 Ⅳ-2-21〉 국가자격 도입 시 아이돌보미 명칭변경의 필요성 ····· 113
〈표 Ⅳ-2-22〉 국가자격 명칭 육아전문관리사에 대한 의견 ····· 114
〈표 Ⅳ-2-23〉 국가자격 도입 시 확대/추가가 필요한 양성교과목①-기본소양교육 ····· 115
〈표 Ⅳ-2-24〉 국가자격 도입 시 확대/추가가 필요한 양성교과목②-아동발달단계 교육 · 115
〈표 Ⅳ-2-25〉 국가자격 도입 시 확대/추가가 필요한 보수교육 교과목 ····· 116
〈표 Ⅴ-1-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안 개요 및 장단점 ····· 125
〈표 Ⅴ-2-1〉 아이돌봄지원법 신규조문 대비표(1안) ····· 131
〈표 Ⅴ-2-2〉 아이돌봄지원법 신규조문 대비표(2안) ····· 137

그림 목차

[그림 Ⅱ-3-1] 한국의 자격법체계 ····· 25
[그림 Ⅲ-1-1]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 42
[그림 Ⅲ-2-1] 청소년지도사 자격급별 양성 현황 및 추이 ····· 45
[그림 Ⅲ-2-2] 청소년지도사 자격급별 양성 현황 및 추이 ····· 45
[그림 Ⅲ-2-3]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 47
[그림 Ⅲ-2-4] 자격취득절차 ····· 50
[그림 Ⅲ-7-1] 뉴질랜드 ECEC 자격체계(NQS) ····· 77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공적돌봄의 인프라 구축과 돌봄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 돌봄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수요자 부모의 다양한 돌봄서비스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 돌봄에 관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

-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비용지원체계,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내재되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의 미스매칭과 안정적 공급규모, 비등하는 일자리의 질 및 돌봄서비스 수요에의 대응 등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이 갖는 과제가 있음.

- 원활한 서비스 매칭과 수급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규모와 같은 양적인 공급 부족에서 오는 문제만이 아닌,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질, 아이돌보미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활동역량에 관한 수요자 부모의 다층적인 요구와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

□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공공·민간 가정돌봄 인력의 근무여건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시함(여성가족부, 2021d: 72).

-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관리 제고와 일자리의 질, 비등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에의 질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재된 미스매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의 의의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가칭)육아전문관리사의 국가자격 도입에 관련된 주요 쟁점과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격제도 도입의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 아이돌보미 인력과 직무 및 자격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아이돌봄지원법과 유관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인력운영 현황을 고찰함.
- 아동 돌봄에 관한 국내외 유관분야 인력 양성 및 자격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비교함으로써, 국가자격 도입에 관한 유사 사례를 살펴봄.
-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을 아이돌보미 및 전달체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적절성과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국가자격 도입의 법제화 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아이돌보미 유관분야 자격체계 및 법 현황 분석, 돌봄인력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 아이돌봄사업 주요 관계자 대상 면담조사(Focus Group Interview)와 자문회의
- 설문조사 자료 분석: 최근 3개월 이내 활동 중인 전국의 아이돌보미 2,140명과 광역/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실무담당자 2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조사기간: 2021. 6 24 ~ 7. 7)
- 여성가족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 아이돌보미 인력현황 및 직무분석

가. 아이돌보미 인력 현황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기준 소속 아이돌보미 23,185명, 활동 아이돌보미 24,469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로 시간제 23,690명, 영아종일제 4,603명, 종합형 1,242명, 질병감염 2,391명, 기관연계 1,25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여성가족부, 2020b).

- 2011~20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규모가 줄어듬. 보수교육의 이수자 규모는 2020년에도 줄지 않고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함.

- 2021년 1월 기준 활동 아이돌보미의 연령대는 50~65세미만이 79.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45세미만의 아이돌보미 비중은 미미함.
- 보육교사 등 유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활동 아이돌보미는 15.1%(3,195명)로 집계됨.
- 아이돌보미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12월 기준 시간제의 경우 1,408,425원, 종일제의 경우 2,244,219원으로 나타남.

나. 아이돌보미 직무 및 자격관리 현황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의하면, 아이돌봄은 사회복지·종교(07)〉보육(01)〉보육(01)-산후육아지원(02)-아이돌봄(03) 중 후자의 아이돌봄(03)의 세분류에 해당함.

- 아이돌봄 직무에 요구되는 NCS 능력단위 및 학습모듈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봄 기본업무관리, 건강안전돌봄, 정서돌봄, 신체돌봄, 아이생활지원의 6가지로 구성됨.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아이돌보미가 담당하는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직무능력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NCS 기반 양성교육과정의 구성과 자격의 검정 및 승급 등 자격체계와 연동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현황

- 아이돌보미 자격요건과 선발, 양성교육 80시간(기본소양교육 32시간, 아동발달단계별교육 48시간) 및 보수교육 16시간(기본 8시간, 특화 8시간), 활동제한과 사후관리에 대해 살펴봄.
-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의 아동학대 사례와 및 토론의 확대,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아동 안전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재를 개편하였으며, 현장실습도 20시간으로 확대하여 2020년부터 적용함.
- 선행연구를 통해 2020년 양성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이론 교과목 중 실기교육(실습오리엔테이션)과 유아의 사회성발달 상호작용,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학령기 아동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법에 대한 신규과목 추가를 제안함. 코로나19 상황에 아이돌보미 온라인교육 운영의 필요성과 양성/보수 교육 후 평가의 실시, 현장실습 제공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기준의 마련과 자격강화에 대해 논의함(황혜신 외, 2020).

다. 아이돌봄지원법 및 유관법령 고찰

□ 아이돌봄지원법, 자격기본법, 직업안정법과 가사근로자법, 아동복지법 고찰

라.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고려사항

□ '국가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자격증 소지자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credibility), 자격증 소지자가 보유한 역량의 최신성(currency), 자격증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이 되는 노동이동의 가능성(transferability), 그리고 국가자격이 학위, 이수증 등 다른 자격과 비교가능한 수준(comparability), 이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자격체계(예: KQS, NQS) 도입이 가능한지 등 해당직무의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조정윤, 2021).

- 해당 직무의 현황을 나타내는 기초 직업지표는 소득, 근무여건, 고용안정, 직업가치, 직무특성, 입직요건의 6개 영역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자격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량기반의 자격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국가자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취득체계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NCS에 근거한 양성과정과 (시험)검정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관리 체계를 고려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NCS 기반 자격제도의 최근 추세는 역량중심의 과정평가형 직무능력평가체계를 고려하는 것임. 많은 응시자에게 단기간 내에 자격증을 공급하기 위한 시험제도로서의 특성을 갖는 '검정형 자격시험 제도'보다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으로서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학습결과(learning outcome)에 기반한 평가의 중시되는 능력중심의 관리체계 경향성을 가짐.
- 역량기반의 자격검정을 위해서는 먼저 아이돌봄 직종의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체계 설계에서부터 역량 개념이 반영되도록 함.

□ 국가자격 신설시 민간자격 및 유관분야 자격과의 관계 설정 검토

- 유관자격 및 민간분야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아동 교육·보육·돌봄) 자격체계와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시간 면제 요건으로 반영되어있는 국가자격 4종, 민간분야 육아도우미의 활동과의 관계설정과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을 고려할 때, 시간제 중심의 아이돌보미 직무의 수행이 국가자격의 도입에 합당한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검토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아종일제 및 질병감염/환아 아동에 대한 돌봄직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 영아종일제와 질병감염서비스에 대한 직무분석은 아이돌보미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 즉 직무의 파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가사업무를 포함하는 아이돌보미 종합형 및 가사근로자법상의 가사근로자의 업무에 아동돌봄이 포함됨에 따라,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아이돌보미 직무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시험 또는 무시험 검정 여부와 양성과정의 강화, 자격급 체계 등의 사항을 고려함.

- 민간자격 제도와의 관계 설정 및 연계에 대한 검토(민간자격체계 공인 과정 등)
- 인적성검사와 면접심사를 운영절차의 어느시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세부기준
-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일정기간 활동경력(예: 3년)이 있는 아이돌보미에 한하여 부여하는 안
- 자격취득 시점의 학력제한 및 연령제한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매 5년 활동이력과 결격사유를 고려한 자격갱신 절차 마련
- 국가자격제도와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경력과 근무평정 등에 대한 인적관리DB 구축
- NCS 양성과정 프로그램 표준화 모듈 적용 등

3. 국내외 유관분야 인력 양성·자격체계 분석

가. 국내 유관분야 인력 양성·자격체계 및 법령 비교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기본법

- 유관분야 자격에 대한 법령에는 직무 및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자격시험 응시자격,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자격시험 실시기관,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실시 공고,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자격증 발급/재발급,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조치, 경과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국내 ECEC 유관자격 현황(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초등돌봄전담사, 지역아동센터 등)

나. 국외 돌봄인력 정책

□ OECD 아동 교육·보육·돌봄(ECEC) 인력 유형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학령기 직전 교사, 가정보육담당자, 교육사, 보조직원 등 다양한 인력 형태를 가짐.

□ 영국의 Childminder와 Nanny

- Childminder는 본인의 거주지에 아동을 데려와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루에 2시간이상 임금을 받고 아동을 돌보며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교육표준청)에 등록되어야 함.
- Nanny는 의뢰인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동시에 1~2가정의 아동을 돌볼 수 있음. 단 자신의 집에서 2곳의 가정을 초과한 아동들을 돌보는 경우에는 childminder로 Ofsted에 등록해야 함.
- 영국의 경우 nanny로 활동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격은 요구되지 않음. Nanny는 Ofsted에 등록할 의무는 없지만 부모의 원활한 선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Ofsted에 등록할 수 있음.
- 영국의 childminder와 nanny 등록 요건은, 5세이하 아동을 돌보는 childminder의 경우 Early Years Register에 등록하고, 5~8세 아동을 돌보는 childminder인 경우 그리고 아동의 나이와 무관하게 nanny인 경우는 Childcare Register에 등록함.
- 영국의 childminder/nanny 교육·훈련 과정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지자체위원회(local council)에서 지역 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PACEY(The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 아동돌봄 전문가협의회) 등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장함.

□ 독일, 오스트리아의 Tagesmutter

- Tagesmutter는 childminder와 같이 tagesmutter의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을 수행하며, 5명 이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Tagesmutter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교육학 관련 자격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영유아를 위한 응급조치 교육 등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돌봄의 서비스 유형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대부분의 국가에서 ECEC(아동 교육·보육·돌봄)는 센터와 학교, 개별가정에서의 가정보육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ECEC에 관한 제반 환경과 인력운영 및 행정체계는 점차 통합되어가는 경향을 보임.

-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수준의 자격체계는 양적·형식적 요건으로 교육연한과 학점 수, 자격급 체계와 경력연한, 연수(보수교육 시간) 등이 있으며, 질적·비형식적 요건으로 교사 멘토링과 인성 지원의 상담체계, 보조인력의 배치와 같은 팀 단위 역할, 지자체와 각 원의 자율연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아동돌봄 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증명서 제출에서부터(레벨 1~4), 프로그램 졸업증서(레벨 5~6), 학사학위에 준하는 교육연한(레벨 7), 학사학위 이후 과정 및 프로그램 이수(레벨 8), 석사학위(레벨 9), 박사학위의 경우 레벨 10으로 분류함.
- NCS 기반의 역량중심 자격체계의 도입과 같은 직무역량 단위에 기초한 업무의 체계화와 연계는, 돌봄에 관한 유관분야 양성 및 자격 체계가 그 유관성과 연속성의 관점에서 체계화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예: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4.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관련 아이돌보미/사업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양성교육과정(9개항목)과 자격취득(5개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필요도를 질문함.

- 아이돌보미와 사업담당자 공통적으로 '아동권리/아동학대예방' 관련 교과목 강화와 '인성' 관련 교과목 필수 지정 강화, '양성/보수교육' 시간보다 내용과 질적인 보강, '인적성검사' 실시 강화'의 대한 의견이 많았음.
-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자격시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이돌보미 50.0%(3.4점), 사업담당자 71.8%(4.0점)으로 나타남.
- 별도문항을 통해 (보육교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같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아이돌보미 62.7%(3.6점). 사업담당자 73.6%(4.0점)로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긍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자격 도입 시 강화된 양성과정 및 자격취득의 과정이 체계화 될 필요가 있음을 보임.

- 아이돌보미와 사업담당자 공통적으로 '채용 시 면접심사'와 '인적성검사' 및 '현장실습과 실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이돌보미 '활동경력과 이력관리(DB구축)'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자격취득 시점 연령 제한에 대한 의견으로, 아이돌보미는 평균 62.0세, 사업담당자는 평균 61.6세로 유사하게 응답함.

□ 국가자격 도입 시 양성과정 교과교육의 시수는 추가 약 20시간이상, 현장실습 시간은 약 10시간이상 추가 확대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응답됨.

- 총 양성교육 시간은 아이돌보미 응답 평균 124.1시간, 사업담당자 평균 143.3시간으로 사업담당자의 교육시간이 약 20시간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자격 제도 도입 시 양성과정 강화 및 자격시험의 도입이 가능함을 보여줌.

□ 국가자격 취득 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아이돌보미는 중졸 14.6%, 고졸 53.1%, 2-3년제 대졸 7.5%, 4년제 대졸 1.0%, 학력제한 필요없음 23.8%로, 사업담당자는 중졸 20.9%, 고졸 46.6%, 2-3년제 대졸 4.0%, 학력제한 필요없음 28.5%로 사업담당자의 경우 아이돌보미에 비해 학력기준에 대해 유연한 경향을 보임.

- 국가자격 취득 시 자격갱신 절차와 자격갱신 연한에 대해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이돌보미 34.6%, 사업담당자 82.3%, 갱신 연한은 아이돌보미 평균 5.2년마다(5년미만 31.4%), 사업담당자는 평균 3.8년마다(5년미만 61.4%)으로 나타남.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식으로, 아이돌보미는 현행유지 44.3%, 양성과정 강화 25.9%, 국가시험 26.6%, 기타 1.3%, 사업담당자는 각각 15.5%, 21.3%, 61.7%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 사업담당자는 '국가시험'을 통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하였고, 현재 활동중인 아이돌보미 응답자는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기존 아이돌보미가 새로 도입되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격전환 기간을 일정기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87.4%, 국가자격 취득 후 아이돌보미로서 근로계약 체결 없이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 가능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31.0%로 나타남.

- 국가시험 난이도 관련하여 첫째, 시험 합격기준에 대해 사업담당자에게 질문한 결과 과목당 60점이상/전체평균 60점이상에 대한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음.

- 시험 난이도에 대해 고연령/시간제 위주의 아이돌보미 활동 현황과 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서 '이에 합당한 난이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2%, 44.3%로 비슷하게 나타남.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교사, 의료인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양성교육 시간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아이돌보미 적절함 32.7%, 보통 30.1%, 부적절 37.2% (2.9점), 사업담당자 적절

함 21.7%, 보통 26.7%, 부적절 51.6% (2.5점)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사업담당자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에 참여한 아이돌보미는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한 적이 있다 19.6%, 향후 민간육아도우미로서 활동의향이 있다 20.9%로 나타남.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도움이된다)에 대한 응답이 (아이돌보미 응답 기준) 약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업담당자에서 국가자격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이 좀 더 많았음.

- 아이돌보미/사업담당자 공통으로 '자긍심의 향상'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제고', 그리고 사업담당자의 경우 '아이돌보미 역량과 전문성 강화',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긍정응답이 많았음.
- 한편 아이돌보미와 사업담당자 공통으로 서비스 미스매치의 해소와 아이돌보미 양성규모 증가의 양적측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각 49.3%, 54.5%)이 다른 긍정적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국가자격 도입 시, 아이돌보미에 대한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아이돌보미 44.5%, 사업담당자 51.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약 반반으로 나타남.

- '육아전문관리사' 명칭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적절 55.3%(3.6점), 사업담당자의 경우 적절 48.0%(3.4점)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음.

5.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법제화 방안

가. 국가자격 도입 방안

□ 목적: 아이돌봄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의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국가자격증을 도입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안: 현행 교육과정(80시간+현장실습) 유지 및 국가자격시험 도입

2안: 교육과정 강화(110시간+현장실습) 및 학과시험 실시-국가자격시험 미도입

- 2개안 모두 공공아이돌보미 업무독점형 자격, 민간육아도우미 능력인정형 자격을 적용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아이돌봄지원법의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를 포괄하되, 아이돌보미에게는 국가자격의 취득을 통해 업무독점형 자격을, 민간 육아도우미에게는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운영되도록 함.

- 국가자격 취득자의 민간 돌봄영역에서의 활동과 이로 인한 확장은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원체계 및 질 관리, 이를 통한 공공성의 제고와 돌봄인력 운영에 대한 정책 설계를 필요로 함.

□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안 공통으로 육아전문관리사의 정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육아전문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기존 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 일부개정법률안 1,2안의 차이는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교부 요건으로 1안은 육아전문관리사 교육과정 수료 및 자격시험 합격을, 2안은 교육과정 수료를 요건으로 함[1].

- 기존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자에 대한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취득의 기한을 5년 이내로 적용하는 〈부칙〉을 제안

나. 국가자격 도입 방안의 예상 효과 및 쟁점

□ 1안: 현행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시험의 실시를 통해 돌봄인력으로서의 사회적 위상과 전문성을 검증함.

- (장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아이돌보미 직무능력을 평가한 국가시험을 통해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합리성과 체계성을 들 수 있음.
- (단점) 국가시험 실시를 통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어려움으로 첫째, 처우개선과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 개선이 충분히 논의 및 선결되지 않은 상황임. 둘째, 자격시험의 도입은 아이돌보미의 진입과 양성규모를 크게 위축시키고 이로써 수급 미스매치의 어려움이 제도 도입 초기에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자격시험의 실시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이 시험준비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교육기관과 현장을 통해 습득해야하는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키우는데 제약이 될 수 있음. 또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아이돌보미 희망자에게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을 줄 수 있음.

1) 일부개정법률안 1, 2안(표 V-2-1, 표 V-2-2)은 제9조의2 육아도우미 교육기관 인증 등에서 차이를 보임.

- (대응방안) 제도 도입의 본격화 이전에 시범적용을 실시함. 제도 이행기간으로서 과도기적 유예기간을 3~5년이상 충분히 두거나, 국가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아이돌보미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함.
 · 아이돌봄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의 증진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마련 필요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근로환경 개선이 선결요건으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예상하지 못한 큰 규모의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민간 육아도우미의 활용과 유관분야 자격자(유치원, 보육교사 등)의 진입을 원활히 하는 방안 검토

□ 2안: 현재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30시간에 해당하는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현장에서 종합적 대응력 위주의 아이돌보미 전문성과 역량의 증진을 대표적인 긍정효과로 볼 수 있음.

- (장점)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학과시험의 실시를 통해 국가자격 부여에 합당한 전문성과 역량을 진단·평가할 수 있음.
 · 2안의 핵심은 확대 강화된 양성교육과정이 실기와 실습, 사례중심의 실질적인 내용과 질이 보강되는 것으로, 정부 교육훈련 체계 전반의 선진화 된 운영이 요구됨.
- (단점) 교육 내용과 질의 보강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과목 시간의 양적 확대에 머무는 안으로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역량이 증진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교과목 수업 시간과 학과시험의 도입으로 고령자와 아이돌보미 희망자의 참여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아이돌보미 공급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대응방안) 교육과정 130시간 운영에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설계 및 교수학습 멘토링과 네트워크 운영을 반영하여 강화된 양성과정에의 진입이 증가하고 중도이탈과 자격증 취득 후 활동하지 않는 비중을 줄여가는 방안 필요. 아이돌보미 양성단계에서부터 인적DB를 구축하여 종사자 생애주기 커리어 경로를 지원함.

Ⅰ. 서론

1. 연구목적

정부는 공적돌봄의 인프라 구축과 돌봄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 돌봄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수요자 부모의 다양한 돌봄서비스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 돌봄에 관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재가 돌봄서비스로, 기관 서비스 위주의 돌봄 지원 체계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 이후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왔으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돌보미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의 강화 등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또한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외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는 돌봄인력과 관련하여 2020년 5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민간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가능, 인·적성검사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범위를 공-사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였다(여성가족부, 2021a).

2020년 기준 아이돌보미는 24,469명, 이용가구 59,663가구로[2], 이용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라형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을 차등지원 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서비스 이용가구의 소득유형별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51.1%, 나형(75~120%이하) 21.5%, 다형(120~150%이하) 4.8%, 라형(150%초과) 22.6%로 정부의 비용지원을 받는 가~다 유형이 3/4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2020년 기준 시간제 88.9%, 영아종일제 5.3%,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3.7%, 종합형 2.1%로[3] 시간제 위주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다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용률이 가장 많은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가구에 기존의 연간 720시간 한도에서 840시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은 2020년 0~85%에서 2021년 40~90%로 늘렸다.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2020년 사업현황 자료.
3) 여성가족부(2020a),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12월).

그러나 이용자의 만족도와 비용지원체계,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내재되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의 미스매칭과 안정적 공급 규모, 비등하는 일자리의 질 및 돌봄서비스 수요에의 대응 등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이 갖는 과제와 제한점 또한 누적되어 있다. 최근 아이돌봄서비스 질 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및 노동권 보장의 요구가 주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요자-근로자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노동권 제고와 인력공급의 안정적 기반이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원활한 서비스 매칭과 수급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규모와 같은 양적인 공급 부족에서 오는 문제만이 아닌,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질, 아이돌보미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활동역량에 관한 수요자 부모의 다층적인 요구와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자격제도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공공·민간 가정돌봄 인력의 근무여건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d: 72).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관리 제고와 일자리의 질, 비등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에의 질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재된 미스매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의 의의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자격'이라 함은, 자격증 소지자의 역량에 대한 고용주/이용자 등의 신뢰도(credibility), 자격증 소지자가 보유한 역량의 최신성(currency), 자격증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이 되는 노동이동과 적용의 가능성(transferability), 국가자격이 학위, 이수증 등 다른 자격과 비교가능한 수준인지(comparability), 그리고 이를 판단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자격체계(예: KQS, NQS) 도입이 가용한지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된다(조정윤, 2021).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제도는 점차 역량 기반의 자격검정으로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전문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이동임·김윤아, 2021), 많은 응시자에게 단기간 내에 자격증을 공급하기 위한 시험제도로서의 특성을 갖는 '검정형 자격시험 제도'보다 'NCS기반 과정평가형 자격검정'으로서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학습결과(learning outcome)에 기반한 평가로 그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직무능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기반으로 직무능력 평가 및 양성훈련 체계를 갖추고 종사자들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인적지원관리 전반(채용-배치-평가-보상승진-교육·훈련 등)에 걸쳐 개인의 직무능력과 적합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 능력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조정윤, 2021).

유관 교육·보육·돌봄 일자리가 이미 일정수준 국가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돌봄서비스에의 수요와 이용 환경을 고려할 때, 재가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육아돌봄 분야 국가자격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의의를 갖는다. 또한 민간분야의 돌봄인력 운영 또한 활발한 상황에서 국가자격의 도입이 갖는 의의와 영향, 적정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격증이 지향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와 일자리의 질, 원활한 수급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바람직한 아이돌보미 자격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가칭)육아전문관리사 명칭의 국가자격 도입에 관련된 주요 쟁점과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격제도 도입의 법적 요건과 절차, 이행방안에 관한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상기한 연구의 필요성을 위해 다음의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아이돌보미 인력과 직무 및 자격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아이돌봄지원법을 유관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인력운영 현황을 고찰하였다.

둘째, 아동 돌봄에 관한 국내외 유관분야 인력 양성 및 자격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비교함으로써, 국가자격 도입에 관한 유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사례로 자격시험의 도입을 통해 수급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꾀한 요양보호사, 대학 양성과정의 학점이수와 교육연한에 근거하여 국가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청소년지도사, 대학 양성과정의 학점이수와 교육연한에 근거하되 무시험검정을 통해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건강가정사, 교육기관을 통해 소정의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한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운영을 살펴보았다. 국가수준의 활동 자격 부여 및 관리에 대한 유관 제도 현황을 통해 자격제도 운영의 절차와 방식, 긍-부정의 효과 등 자격제도 도입의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돌봄인력의 자격 및 질 관리체계로 영국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셋째,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을 아이돌보미 및 전달체계 실무자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넷째, 상기한 아이돌봄사업 인력 운영 현황 및 유관분야 인력 양성자격체계 고찰과 의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적절성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내용의 수행을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관련자료 고찰을 통해 유관분야 자격체계 및 관련 법 현황을 분석하고, 돌봄인력 현황과 자격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아이돌봄사업 주요 관계자(stakeholder) 대상 그룹별 심층면담 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현안과제와 아이돌보미 현행 자격부여 및 교육·훈련, 근로 현황에 대한 의견을 현장전문가(2회), 아이돌보미(2회), 민간육아도우미(1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총 5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플랫폼 운영 현황, 돌봄분야 국가자격 제도화 방안과 도입 시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총 5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제도화 방안의 가능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였다.

〈표 Ⅰ-3-1〉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 관련 설문조사 대상 및 규모

조사대상	조사규모 / 조사 방법
아이돌보미	2,140 사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웹 조사 참여
광역/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실무담당자	277사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웹 조사 참여

주. 조사기간: 2021. 6. 24~7. 7

셋째,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예상되는 효과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활동 중인 전국의 아이돌보미와 광역/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21. 6 24 ~ 7. 7). 약 2주에 걸친 온라인 웹조사에 대한 자발적 참여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 2,140명, 전달체계 실무담담자 227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Ⅰ-3-2〉 설문조사 내용

조사내용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 및 근로 현황/ 응답자 특성, 근로만족도	○	○
• 전문성 및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도(5점척도)	○	○
- 양성과정 관련(9개항목)	○	○
- 자격취득 및 유지 관련(5개항목)	○	○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필요도),(1개, 5점척도)	○	○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시 항목별 필요도(12개, 5점척도)	○	○
• 국가자격 취득 연령제한, 최저학력기준, 갱신절차/연한	○	○
• 국가자격 도입 방안(①현재유지, ②양성과정강화, ③국가시험) 의견/이유	○	○
-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3개과정별) 교육시간	○	○
• 국가자격 취득 의향(5개/7개 요건별) 및 그 이유	○	○
• 국가자격 전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	-	○
• 국가시험 실시에 대한 적절/부적절 이유	-	○
• 국가시험 실시 시 시험 난이도 및 합격기준	-	○
• 국가자격 실시 vs. 양성과정 강화 방안의 장단점	-	○
• 국가시험 도입에 대한 적절/부적절 이유	-	○
• 국가시험 도입 시 시험 난이도 및 합격기준	-	○
• 국가자격 도입의 장단점	-	○
•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경험 및 향후 활동 의향	○	-
• 유관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시간 면제에 대한 적절성	○	○
• 국가자격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도움이 됨, 13개항목)	○	○
• 아이돌보미 명칭변경 및 육아전문관리사, 새로운 명칭에 대한 의견	○	○
• 국가자격 도입 시 확대/추가가 필요한 양성·보수교육 교과목	○	○

Ⅱ. 아이돌보미 인력현황 및 직무분석

1. 아이돌보미 인력 현황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기준 소속 아이돌보미 23,185명, 실제 활동 아이돌보미 24,469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로 시간제 23,690명, 영아종일제 4,603명, 종합형 1,242명, 질병감염 2,391명, 기관연계 1,2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0a).

인력 규모에 대한 연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규모가 줄었다. 이용가구의 경우 2015년 57,687가구에서 2019년 70,485가구로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0년 12월 59,663가구로 감소하였으며, 서비스 유형별로 시간제 53,406가구, 종합형 1,246가구, 질병감염아동돌봄 2,233가구, 영아종일제돌봄 3,318가구로 시간제 아이돌봄에 대한 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신청 가구의 감소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이용가구 감소의 영향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2020년 양성 아이돌보미 규모도 2,403명으로 기존 연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성과정과 달리 보수교육의 최종이수자 규모는 2020년에 줄지않고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21년 1월 기준으로는 활동 아이돌보미의 연령대는 50~65세미만이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45세미만의 젊은층 아이돌보미 비중은 미미하다. 한편 보육교사 등의 유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활동 아이돌보미는 15.1%(3,195명)로 집계되었다(여성가족부, 2021b).

〈표 Ⅱ-1-1〉 아이돌보미 규모 및 교육이수 현황과 추이(2011~2020년)

단위: 명

구분	활동 돌보미	소속 돌보미	교육인원		
			양성	집합보수	개별보수
2011년	10,482	10,758	4,729	5,731	-
2012년	11,131	11,589	3,149	8,295	8,608
2013년	17,380	16,393	6,692	2,570	6,505
2014년	17,008	17,208	3,021	8,642	30,044
2015년	16,740	17,553	2,978	7,061	42,244
2016년	18,801	19,377	4,886	10,453	15,923
2017년	20,082	20,878	3,781	최종 이수자 : 16,581	
2018년	23,675	21,456	3,496	최종 이수자 : 18,758	
2019년	24,677	23,597	5,793	최종 이수자 : 19,700	
2020년	**24,469**	**23,185**	**2,403**	**최종 이수자 : 20,947**	

자료: 여성가족부(2020a). 2020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통계 (내부자료)

2020년 12월 기준 아이돌보미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55세이상~60세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세이상~55세미만과 60~65세미만이 각 23.8%, 23.0%로 많았다. 60세 이상 활동 아이돌보미가 전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56.2%, 40대 12.5%, 40세미만 0.6%로 앞서 살펴본대로 40대이하의 아이돌보미 활동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40대 아이돌보미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50대이상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2〉아이돌보미 연령 현황과 추이(2013~2020년)

단위: 명, (%)

구분	합계	40세 미만	40세 이상~45세 미만	45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55세 미만	55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
2013년	16,393	600	5,668		8,831		1,118	176
2014년	17,008	483	5,269		9,713		1,460	283
2015년	17,553	353	4,650		10,259		1,888	404
2016년	19,377	274	780	2,933	5,114	6,246	3,218	812
2017년	20,878	194	703	2,721	5,176	6,891	4,058	1,135
2018년	23,675	246	818	3,178	5,967	7,767	4,510	1,189
2019년	24,677	160	511	2,363	5,701	7,966	5,926	2,050
2020년	24,469	150	558	2,484	5,829	7,924	5,630	1,894
	(100.0)	(0.6)	(2.3)	(10.2)	(23.8)	(32.4)	(23.0)	(7.7)

자료: 여성가족부(2020a). 2020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통계 (내부자료)

아이돌보미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12월 기준 시간제의 경우 1,408,425원, 종일제 2,244,219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시간제와 종일제 돌봄 모두 월 임금 약 1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종일제 돌봄의 경우 월 평균 활동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종일제 돌봄의 월 임금수준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3〉 아이돌보미 월 평균 임금 및 활동시간 현황과 추이(2011~2020년)

단위: 원, 시간

구분	12월 평균 임금			12월 평균 활동시간	
	시간제	종일제	수당 (연장, 주휴)	시간제	종일제
2011년	732,534	1,017,505	-	93	189
2012년	684,565	980,782	-	90	172
2013년	681,542	954,944	-	89	165
2014년	723,578	1,069,951	-	98	178
2015년	765,542	1,139,644	-	93	173
2016년	776,324	1,320,801	-	93	197
2017년	775,189	1,407,852	-	85	191
2018년	922,426	1,656,863	-	85	187
2019년	1,048,553	1,363,615	195,949	97	145
(2020년)	(1,408,425)	(2,244,219)	184,190	86	139

자료: 여성가족부(2020a). 2020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통계 (내부자료)
주: 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된 수치로, 2019년 급여와 차이가 큼에 유의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의 규모와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총 21,131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으로 남성(N=2) 대비 여성 아이돌보미의 비중이 절대 다수이다. 그 중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전체 19,673명으로 9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총 4,4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 3,213명, 경북 1,708명, 부산 1,643명의 순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55세~65세미만이 5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 지역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전남의 경우 50세미만 돌보미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제주의 경우 65세이상의 고연령 돌보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 3,195명으로 2021년 1월 기준 전체 활동 아이돌보미의 약 15.1%로 나타났다.

〈표 Ⅱ-1-4〉 활동 아이돌보미 지역 및 연령 현황(2021. 1월)

단위: 명(%)

구분	계/광역합계	서비스 유형					자격증 소지자	연령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질병아동	기관연계		40세 미만	40~45세 미만	45~50세 미만	50~55세 미만	55~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세 이상
총계	21,131 (100.0)	19,673 (93.1)	2,095 (9.9)	361 (1.7)	94 (0.4)	175 (0.8)	3,195	71 (0.3)	316 (1.5)	1,661 (7.9)	4,565 (21.6)	6,548 (31.0)	5,669 (26.8)	2,301 (10.9)
서울	3,213 (100.0)	2,851 (88.7)	500 (15.6)	80 (2.5)	4 (0.1)	67 (2.1)	561	2 (0.1)	13 (0.4)	120 (3.7)	510 (15.9)	1,015 (31.6)	1,030 (32.1)	523 (16.3)
부산	1,643 (100.0)	1,541 (93.8)	122 (7.4)	42 (2.6)	1 (0.1)	12 (0.7)	227	3 (0.2)	20 (1.2)	103 (6.3)	336 (20.5)	518 (31.5)	495 (30.1)	168 (10.2)
대구	950 (100.0)	902 (94.9)	63 (6.6)	3 (0.3)	2 (0.2)	19 (2.0)	192	0 (0.0)	7 (0.7)	86 (9.1)	238 (25.1)	351 (36.9)	209 (22.0)	59 (6.2)
인천	999 (100.0)	924 (92.5)	97 (9.7)	4 (0.4)	4 (0.4)	15 (1.5)	126	1 (0.1)	7 (0.7)	50 (5.0)	188 (18.8)	315 (31.5)	302 (30.2)	136 (13.6)
광주	843 (100.0)	758 (89.9)	99 (11.7)	26 (3.1)	6 (0.7)	2 (0.2)	165	0 (0.0)	12 (1.4)	82 (9.7)	211 (25.0)	278 (33.0)	200 (23.7)	60 (7.1)
대전	529 (100.0)	499 (94.3)	49 (9.3)	0 (0.0)	5 (0.9)	2 (0.4)	70	0 (0.0)	7 (1.3)	30 (5.7)	125 (23.6)	175 (33.1)	135 (25.5)	57 (10.8)
울산	713 (100.0)	673 (94.4)	44 (6.2)	12 (1.7)	1 (0.1)	16 (2.2)	83	2 (0.3)	8 (1.1)	79 (11.1)	212 (29.7)	196 (27.5)	155 (21.7)	61 (8.6)
세종	264 (100.0)	253 (95.8)	18 (6.8)	2 (0.8)	1 (0.4)	0 (0.0)	28	1 (0.4)	6 (2.3)	29 (11.0)	38 (14.4)	83 (31.4)	81 (30.7)	26 (9.8)
경기	4,416 (100.0)	4,152 (94.0)	346 (7.8)	92 (2.1)	19 (0.4)	11 (0.2)	643	10 (0.2)	40 (0.9)	250 (5.7)	890 (20.2)	1,457 (33.0)	1,265 (28.6)	504 (11.4)
강원	879 (100.0)	810 (92.2)	107 (12.2)	25 (2.8)	5 (0.6)	0 (0.0)	97	8 (0.9)	22 (2.5)	95 (10.8)	224 (25.5)	286 (32.5)	174 (19.8)	70 (8.0)
충북	648 (100.0)	611 (94.3)	52 (8.0)	20 (3.1)	2 (0.3)	1 (0.2)	59	1 (0.2)	10 (1.5)	64 (9.9)	173 (26.7)	188 (29.0)	152 (23.5)	60 (9.3)
충남	830 (100.0)	777 (93.6)	82 (9.9)	6 (0.7)	10 (1.2)	6 (0.7)	102	5 (0.6)	23 (2.8)	71 (8.6)	190 (22.9)	218 (26.3)	203 (24.5)	120 (14.5)
전북	958 (100.0)	915 (95.5)	93 (9.7)	13 (1.4)	9 (0.9)	6 (0.6)	99	9 (0.9)	21 (2.2)	69 (7.2)	218 (22.8)	287 (30.0)	261 (27.2)	93 (9.7)

구분	계/ 광역합계	서비스 유형					자격증 소지자	연령						
		시간제	영아 종일제	종합형	질병아동	기관연계		40세 미만	40~45세 미만	45~50세 미만	50~55세 미만	55~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세 이상
전남	934 (100.0)	881 (94.3)	88 (9.4)	5 (0.5)	10 (1.1)	4 (0.4)	175	14 (1.5)	42 (4.5)	117 (12.5)	232 (24.8)	224 (24.0)	222 (3.8)	83 (8.9)
경북	1,708 (100.0)	1,597 (93.5)	191 (11.2)	22 (1.3)	8 (0.5)	2 (0.1)	309	14 (0.8)	45 (2.6)	234 (13.7)	379 (22.2)	505 (29.6)	404 (23.7)	127 (7.4)
경남	1,347 (100.0)	1,289 (95.7)	120 (8.9)	8 (0.6)	3 (0.2)	10 (0.7)	225	1 (0.1)	30 (2.2)	177 (13.1)	358 (26.6)	377 (28.0)	301 (22.3)	103 (7.6)
제주	257 (100.0)	240 (93.4)	24 (9.3)	1 (0.4)	4 (1.6)	2 (0.8)	34	0 (0.0)	3 (1.2)	5 (1.9)	43 (16.7)	75 (29.2)	80 (31.1)	51 (19.8)

자료: 여성가족부(2021b). 아이돌보미 현황 자료(1월).

2. 아이돌보미 직무 및 자격관리 현황

가. 아이돌보미 직무분석

국가수준의 자격체계 및 교육훈련 과정과 경력개발, 임금체계에 필요한 아이돌보미 직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4]에 제시되어 있다. 아이돌봄 세분류는 사회복지·종교(07)〉보육(01)〉보육(01)-산후육아지원(02)-아이돌봄(03) 중 후자의 아이돌봄(03)으로, 아이돌봄 직무에 요구되는 NCS 능력단위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봄 기본업무관리, 건강안전돌봄, 정서돌봄, 신체돌봄, 아이생활지원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직무는 2, 3, 5 수준으로 각각 제시되어 있으며, 직무능력단위에 대한 설명과 아이돌봄의 NCS 학습모듈은 2021년 기준 〈표 II-2-1〉, 〈표 II-2-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NCS 학습모듈,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2021. 8. 2 인출).

〈표 Ⅱ-2-1〉 아이돌봄 직무 능력단위

능력단위		능력단위 정의
01	아이돌봄 서비스관리	아이돌봄서비스관리란 아이돌봄서비스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서비스관리를 계획·설계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서비스의 점검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능력임
02	아이돌봄 기본업무관리	아이돌봄기본업무관리란 서비스계약 전 고객과의 면접을 통해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이의 일정에 맞춰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임
03	건강안전돌봄	건강안전돌봄이란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관리하고 아이의 건강을 돌보며, 사고와 학대행동의 예방을 수행하는 능력임
04	정서돌봄	정서돌봄이란 아이와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교감을 나눌 수 있으며, 상황별로 일어날 수 있는 아이의 정서적 반응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능력임
05	신체돌봄	신체돌봄이란 일반적 발달 단계와 개인차를 고려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배변관리와 목욕시키기를 수행하고, 아이의 성장발달 단계와 목적에 따라 아이 달래기와 영양관리를 실시하며, 아이가 즐겁게 놀이활동을 하도록 돕는 능력임
06	아이생활지원	아이생활지원이란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용품의 관리와 생활공간 청소를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아이의 일정을 관리하는 능력임

자료: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s://www.ncs.go.kr/unity/th03/ncsSearchMain.do 2022. 8. 2 인출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 한 것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에 NCS를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https://www.ncs.go.kr/th01/TH-102-001-01.scdo, 2021. 8. 2 인출).

아이돌봄 직무능력에 대한 NCS 학습모듈의 능력단위 요소가 2019년 연구내용과 견주어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봄 기본업무관리, 신체돌봄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모듈로서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을 알 수 있다.

〈표 Ⅱ-2-2〉 아이돌봄 직무의 NCS 학습모듈

순번	학습모듈 /능력단위	수준	능력단위 요소	
			2021년	유해미 외(2019)
1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5	정보분석하기	- 면접하기
			관리설계하기	- 업무계약하기
			사후관리하기	- 양육자와의 면담하기
			교육지원하기	- 업무과정 관리하기
				- 건강안전 돌봄
2	아이돌봄 기본업무관리	2	면접하기	- 업무 계약하기
			업무계약하기	- 양육자와의 면담하기
				- 업무과정 관리하기
3	건강 안전 돌봄	3	물리적환경 관리하기	- 물리적환경 관리하기
			사고예방하기	- 사고 예방하기
			건강관리하기	- 건강관리하기
			학대예방하기	- 학대예방하기
4	정서 돌봄	3	언어소통하기	- 언어소통하기
			신체적교감하기	- 신체적 교감하기
			상황별 정서돌보기	- 상황별 정서돌보기
5	신체 돌봄	2	배변관리하기	- 언어소통하기
			목욕시키기	- 신체적 교감하기
			아이달래기	- 상황별 정서돌보기
			영양관리하기	- 신체돌봄
			놀이활동하기	- 목욕시키기
6	아이생활 지원	2	기본생활습관지도하기	- 기본생활습관 지도하기
			아이용품관리하기	- 아이용품 관리하기
			아이생활공간청소하기	- 아이생활공간 청소하기
			일정관리지원하기	- 일정관리 지원하기

자료: 1.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s://www.ncs.go.kr/unity/th03/ncsSearchMain.do 2022. 8. 2 인출
2. 유해미·권미경·김근진·이윤진·이혜민(2019). 아이돌보미 및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아이돌보미에 대한 국가자격의 도입은 아이돌보미가 담당하는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그 직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NCS 기반 양성교육과정의 구성과 자격의 검정 및 승급 등 자격체계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 종합형 등으로 나타나는 아이돌봄의 서비스 유형을 고려할 때, 시간제서비스 중심의 아이돌보미 직무의 수행이 국가자격의 도입에 합당한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검토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아종일제 및 질병감염/환아 아동에 대한 돌봄 직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아종일제와 질병감염서비스에 대한 직무분석은 아이돌보미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 즉 직무의 파악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가사업무를 포함하는 종합형의 경우 이를 국가자격제도 운영 시 그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업무에 아동돌봄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직무로서의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나.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현황[5)]

1) 아이돌보미 자격요건과 선발

아이돌보미 신청 대상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정하고 있으며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로 공개 모집한다.

아이돌보미 선발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면접심사는 정규 심사와 수시 면접심사로 구분된다. 정규면접 심사는 아이돌보미 신청자에 한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및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심사를 하여 최종 선발은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수시 면접심사의 심사 대상은 관련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이수자이며, 심사위원은 인사담당 등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2인으로 구성된다.

심사 기준은 일반 기준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일반 기준으로는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한다. 심사는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기준과 「국가유공자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는 〈표 Ⅱ-2-3〉과 같고, 면접심사 통과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공문을 발송하면 시·군·구청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5) 여성가족부(2021a).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정리함.

〈표 Ⅱ-2-3〉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75.

2)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양성교육과정은 80시간의 이론교육과 2~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교육은 기본소양교육 32시간,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서비스 교육 4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와같은 교육훈련 과정의 이수와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공공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과정을 교과목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성교육과정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도 지정 여성새일센터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비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납부 받아 필요시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양성교육 시간은 교과학습 이론교육 80시간, 현장실습 2~20시간이며, 현장실습은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10시간 현장실습을 지도한 활동 돌보미에게

는 3만원을 지급한다. 출석률 90% 이상인 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2021년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Ⅱ-2-4〉 2021년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수
		Ⅰ. 기본소양교육	총 32시간
1	아이돌봄 직무의 이해 (12시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해	1
2		아이돌보미의 직업윤리와 역할 및 자질	3
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족의 이해	4
4		아동관찰 및 부모면담 방법	4
6	아동안전·건강관리 (12시간)	아동의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5
7		아동의 건강관리	3
8		성인지 교육	2
9		아동안전, 건강관리 사례 및 토론	2
10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교육 (8시간)	아동권리의 이해	2
11		아동학대 예방교육(1): 판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이해	2
12		아동학대 예방교육(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 방법	1
13		아동학대 예방교육(3):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방법	1
14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사례 및 토론	2
		Ⅱ.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	총 48시간
15	영아 돌봄의 이해 (20시간)	영아기 발달의 이해	2
16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	2
17		영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	3
18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	2
19		영아의 몸 다루기 및 베이비 마사지	3
20		영아기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2
21		영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4
22		영아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2
23	유아 돌봄의 이해 (14시간)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24		유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실제	2
25		유아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와 지도의 실제	3
26		유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4
27		유아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2
29	학령기아동 돌봄의 이해 (14시간)	학령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30		학령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및 지도	4
31		학령기 놀이 및 매체지도	3
32		학령기 또래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2
33		학령기아동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2
		전체 양성교육 총계	80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p. 154-166

나)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및 수시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단,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보수교육을 면제 받는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양성교육기관에서 병행하며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방문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은 기본과정 8시간 및 특화과정 8시간을 합한 총 16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필수로 하고, 여타 교육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여성가족부고시 제2019-51호).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은 반드시 강사를 초빙하여 편성해야 하며,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표 Ⅱ-2-5〉 아이돌보미 보수교육과정: 기본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본과정	8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성희롱 예방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아동심리 이해
	부모상담
	연령별 놀이지도(놀이활동, 동화구연, 종이접기, 손 유희 등)
	놀이교구 제작 및 활용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제도 이해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
특화과정	8시간
- 영아기과정(8시간)	영아-아이돌보미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영아발달에 적합한 놀이활동의 이론과 실제
	영아기 건강한 돌봄 이론과 실제
	영아를 위한 수유, 이유 및 영양
- 유아기과정(8시간)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 이해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기본생활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신체운동발달 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언어 및 인지발달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정서발달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사회성발달영역
	유아 인성교육의 이해
	부모와의 관계와 의사소통

교육과정	교육내용	
- 학령기과정(8시간)	취학 아동 돌봄의 필요성과 돌보미의 역할	
	학교생활의 이해	
	취학 돌봄 아동 상담 및 대화방법	
	학습지도, 숙제지도	
	취학 돌봄 아동 안전 정보문화교육	
	아동생활지도-성교육	
	매체교육 및 활용법	
- 발달에 따른 놀이활동 (8시간)	신체발달놀이 (8시간)	연령별 신체발달의 특성
		놀이의 특성과 놀이 환경조성
		신체발달을 돕는 놀이
	인지언어발달놀이 (8시간)	연령별 인지언어발달의 특성
		놀이에서의 돌보미의 역할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놀이
	정서사회성 발달놀이 (8시간)	연령별 정서사회성달발달의 특징
		놀이에서의 돌보미와 아동간의 소통
		정서사회성발달을 돕는 놀이

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p. 167-168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사례와 및 토론의 확대,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아동안전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재를 개편하였으며, 현장실습도 20시간으로 확대하여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황혜신 외, 2020 재인용). 아이돌보미의 교육 체계와 교육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 및 보수교육의 교재를 개발하였다(황혜신 외, 2020).

동 연구에서는 2020년 양성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이론수업 교과목 중 실기교육(실습오리엔테이션)과 유아의 사회성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학령기 아동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법에 대한 신규과목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그밖에 코로나19 상황에 아이돌보미 온라인교육 운영의 필요성과 양성/보수 교육 후 평가의 실시, 현장실습제공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과 자격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 활동제한 및 사후관리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는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다음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시적 조치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중지할 수 있다. 즉,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징계 등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와 기타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아동에 대한 학대·폭행·치상·유기 의심으로 신고 된 경우가 그것이다(여성가족부, 2021a: 74).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아이돌보미 직무 및 서비스 이용 계약서 준수사항 위반, 이용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 또는 복수의 이용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 반복, 친인척 연계 또는 웃돈 요구, 돌보는 아동을 타 돌봄 장소로 이격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의 연계 중지 및 활동 정지는 최대 6개월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 정지 및 연계정지를 결정하게 된다. 활동이 정지된 자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여성가족부, 2021a: 74-5).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맡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하고,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격정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에 따라 1년 이내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취소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위반 등과 관련된 사안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조치할 수 있다.

3. 아이돌봄지원법 및 유관법령 고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관련 유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에서는 아이돌보미 및 육아도우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동법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육아도우미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제19조의2에서는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육아도우미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규정한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아이돌보미는 자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정 자격이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상 교사, 「초중등교육법」상 교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외에 별도의 국가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구성되고,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의 안전 및 건강 관리, 응급처치,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등을 교육내용으로 한다.

동법 제7조제3항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에 인·적성 검사를 추가하였다.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동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30시간 이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6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및 아동학대 전력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2에서는 이러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대해 규정한다. 동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이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등)에서는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건강진단 및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공공 아이돌보미의 경우 결격사유와 자격 정지 및 취소, 벌칙과 양벌규정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상기한 신원확인 외에 관련 조항이 부재하다.

동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는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 및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표 Ⅱ-3-1〉「아이돌봄지원법」(법률 제17539호) 주요 내용

구분	해당 조항
정의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 ·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 · 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	해당 조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봄미 결격사유 확인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의 안전 및 건강 관리, 응급처치,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양성평등·성인지(性認知)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등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구분	해당 조항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의2.「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3의3.「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7.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보수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보수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30시간 이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기관에는 보수교육의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아이돌보미 건강진단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보미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분	해당 조항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 5. 아이돌보미 자격·이력·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나. 자격기본법[6)]

자격법제는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자격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 중 자격법제의 기본이 되는 자격기본법을 살펴보았다.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국가자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가가 법령에 따라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자격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규율되는지 기준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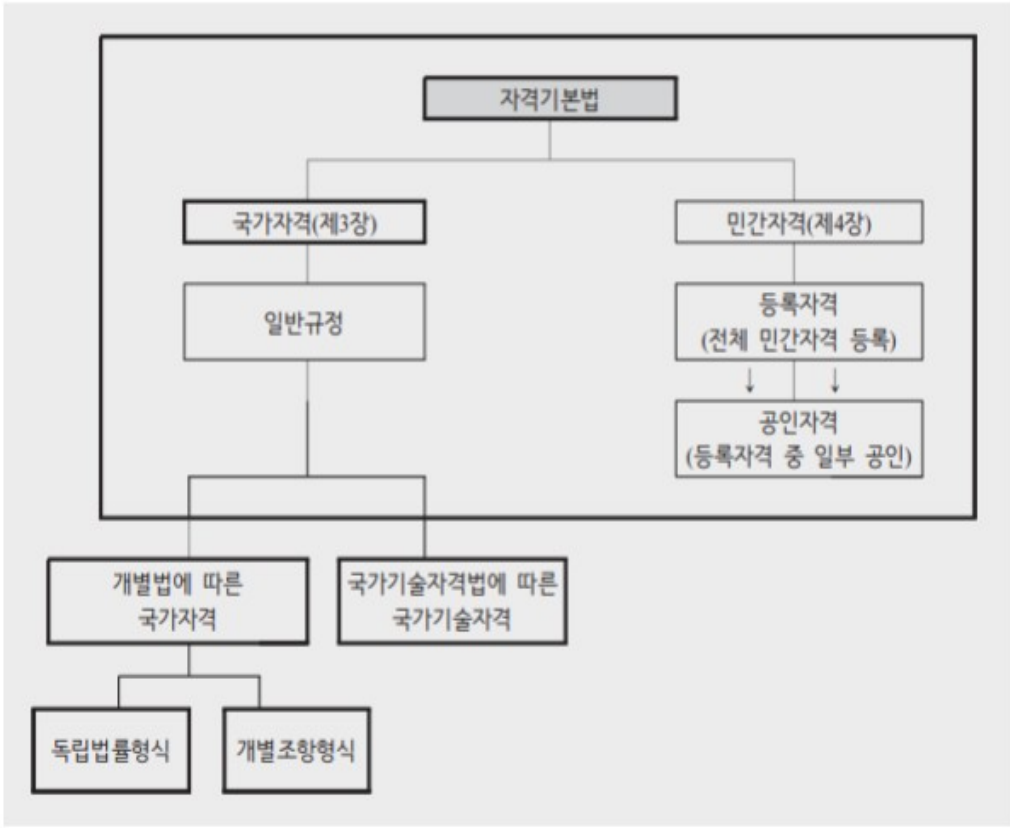
6) 자격기본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314호, 1997. 3. 27., 제정]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2208&ancYd=19970327&ancNo=05314&efYd=1997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1. 7. 1 인출)

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검정 현황조사에 의하면 개별법에 근거한 국가자격(140개 종목)과 공인민간자격(직업자격에 한정하여 60개 종목)으로 보고된다(이동임·김윤아, 2021).

국가자격은 (1)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하여 근거를 두는 방식, (2) 자격에 관한 독립법을 두어 단일 법률에서 해당 자격의 전반에 대해 규율하는 방식, (3) 개별법에 자격제도 장이나 조항을 두는 형식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있다(백옥선, 2018). 국가자격은 크게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에 특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업무독점형 자격'과 특정분야의 지식이나 기술, 기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격이 활용되고 이러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나뉘는데, '업무독점형 자격'은 자격을 소지한 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형 자격'과 자격자를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의무고용형 자격'으로 구분된다(백옥선, 2018: 55-56).

정부는 1997년 3월 27일 자격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과 국가-민간 자격의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고, 또한 자격제도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업종에서 민간자격이 개발 및 운영되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 중 국가자격 수준과 상응하는 자격에 한해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자격 공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2000년에 시작된 '민간자격 공인 제도'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제도로서 무분별 하게 운영되는 민간자격 간의 상호경쟁을 통해 품질관리를 유인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편 국가공인을 받기 위해 민간자격 관리자 간의 과다한 경쟁이 유발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 등의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으며(김덕기 외, 2020). 민간자격관리자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자격의 남발과 질 저하, 과다한 유사자격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격 생태계의 생산성, 강건성, 혁신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자격개발-등록-관리운영및공인-폐지의 각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최영렬·김덕기·박문군, 2018).

[그림 Ⅱ-3-1] 한국의 자격법체계



자료: 백옥선(2018).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다. 직업안정법과 가사근로자법

「직업안정법」[7]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제1조(목적)에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직업소개업체 및 직업정보제공업체의 결격사유와 벌칙에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기록 조회 등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역시 부재하고 있다.

〈표 Ⅱ-3-2〉 직업안정법(법률 제17326호)상 직업소개업체 및 직업정보제공업체의 결격사유 및 벌칙 규정

구분	조항
결격사유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벌칙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

7) 「직업안정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구분	조항
	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21. 7. 1. 인출)

아이돌봄지원법에 포함된 민간 육아도우미의 활동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벌칙에 대한 유관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한편 2021년 6월 15일 공포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2022년 6월 시행)[8]에 의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등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업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최소 근로시간(주 15시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과 퇴직금 및 유급휴일과 연차수당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그리고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표 Ⅱ-3-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법률 제18285호] 상 결격사유 및 벌칙 규정

구분	조항
결격사유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

구분	조항
	제12조(아동의 보호 · 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벌칙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21. 7. 1. 인출)

가사근로자법에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외에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조회가 근거조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가정내 보호·양육 관련 업무가 가사근로자 업무에 포함됨에 따라, 아동돌봄에 대한 아이돌보미/육아도우미 활동 영역과 중첩되는 지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9]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에 대해 규정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

9)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는 해당되지만, 육아도우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법 제3조는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위탁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이혼, 수감 등의 경우는 보호대상에 포함되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일시적 동거불가 아동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 돌봄과 아동 보호에 대한 대상 범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Ⅱ-3-4〉「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및 조회 관련 규정

구분	조항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21. 7. 1. 인출)

공공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민간 육아도우미 활동에 대한 조항(건강진단, 범죄경력 조회)이 아이돌봄지원법에 제시되어 있는 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검토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자격체계 관련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4. 국가자격 도입 시 고려사항

국가자격의 관리·운영은 국가자격에 대한 유효기간 또는 갱신 제도, 취득자에 대한 교육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며, 자격의 관리·운영 과정상의 분산체계 해소와 소관 담당부처 간 연계, 탄력적인 자격제도 관리·운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다(백옥선·이상윤, 2019). 현행 아이돌보미 교육훈련과 자격관리를 고려할 때 이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2가지 큰 흐름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국가자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취득체계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여타 국가자격 도입과 운영에 참조가 된다.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첫째, 등급/분류 체계 등에 관한 '자격의 틀(framework)'과 둘째, 출제/채점/시험시행 등에 관한 '검정운영', 셋째, 개별법상 활용과 국가 간 상호인정 등에 관한 활용, 그리고 넷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통계 등의 인프라로 크게 구성된다.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기능과 역할로, (1)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수준과 분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신호로서 기능하며, 구직-구인 간에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 발생하는 skill mismatch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 (2)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의 수직적 등급체계를 통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도한다.

자격취득 관리체계로서 첫째,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검정의 합격결정기준)에 따라 필기시험(지필) 및 실기시험(작업 및 면접)의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NCS 기반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10]

10)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일정 합격기준이라 함은 출석률 75%이상이면서 내부평가(예: 교육훈련기관) 및 외부평가(예: 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임(고용노동부 2021년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p. 34).

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를 가리킨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배경은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직업 교육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표준능력(NCS)을 기반으로 개편 운영하고, 일-교육훈련-자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 교육훈련 과정을 제고하는 특성을 갖는다.

여기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 한 것으로,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24대 분야 1,039개의 NCS를 개발 및 고시하였다('21.5.27)(고용노동부, 2021: 37). 각 NCS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직무(NCS)-능력(능력단위)-세부능력(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21: 37) 아이돌보미는 사회복지·종교(07)〉보육(01)〉아이돌봄(03)의 세분류로 제시되어 있으며, 아이돌봄 직무에 요구되는 NCS 능력단위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봄 기본업무관리, 건강안전돌봄, 정서돌봄, 신체돌봄, 아이생활지원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본 보고서 〈표 II-2-1〉, 〈표 II-2-2〉 참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NCS에 근거한 양성과정과 (시험)검정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관리 체계가 연계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다.

'NCS 기반 자격제도'는 역량중심의 과정평가형 직무능력평가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현장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이는 많은 응시자에게 단기간 내에 자격증을 공급하기 위한 시험제도로서의 특성을 갖는 '검정형 자격시험 제도'보다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으로서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학습결과(learning outcome)에 기반한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11]. 즉 근로자의 다양한 학습결과와 경력 등을 평가 인정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역량 기반의 과정평가형'으로 발전과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직무능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기반으로 직무능력평가체계를 갖추고 종사자들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기준을 제시 및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인적자원관리 전반(채용-배치-평가-보상승진-교육훈련 등)에 걸쳐 개인의 직무능력과 적합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 능력중심의 관리체계

11) · 검정형 자격시험: 60점을 합격점수로 정하고 있는 규준 지향 평가(norm-referenced assessment).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적 관점에 근거함.
· NCS 기반 자격시험(과정평가형):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목표지향평가(criterion-based assessment) 또는 절대기준평가로 무엇을 성취하였느냐에 초점을 둠.

를 의미한다. 이는 곧 학습결과(learning outcome)에 기초한 NCS 기반 자격제도가 필요함을 나타낸다(조정윤, 2021[12]).

나. 국가자격 도입 요건 및 유관자격과의 관계

'국가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첫째, 자격증 소지자의 역량에 대한 고용주/이용자 등의 신뢰도(credibility), 자격증 소지자가 보유한 역량의 최신성(currency), 자격증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이 되는 노동이동의 가능성(transferability), 그리고 국가자격이 학위, 이수증 등 다른 자격과 비교가능한 수준인지(comparability),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자격체계(예: KQS, NQS) 도입이 가능한지 등 해당직무의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조정윤, 2021). 해당 직무의 현황 전반을 나타내는 기초 직업지표는 소득, 근무여건, 고용안정, 직업가치, 직무특성, 입직요건의 6개 영역별로 소득(소득수준, 경력인정, 소득만족), 근무여건(업무유연성, 일가정균형, 경력단절복귀, 양성평등, 업무환경의 쾌적성), 고용안정(고용유지, 평생직업), 직업가치(직업평판, 사회공헌, 소명의식), 직무특성(업무복잡성, 융합성, 전문성, 변화속도), 입직요건(학력, 전공, 자격증(면허), 외국어능력, 직업훈련, 실무경험)의 항목별 지표를 통해 파악된다. 직업에서 실제 역량과 관련된 실무경험 및 자격증 등의 입직요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이재열·안중석, 2021), 직업 현황의 기초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6개 영역별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교육훈련 과정의 적용에 필요한 NCS 학습모듈간 개발과 개선, 연계가 필요하다(나현미·정란·장수아, 2021).

둘째, 자격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량기반의 자격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이동임·김윤아, 2021). 즉 디지털 전환 등 기술변화가 가속화 될수록 사람이 하는 직무는 업무 전반의 절차와 맥락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적용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종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여기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격은 종합적인 문제해결과 대처능력 중심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량기반의 자격검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12) 한국직업자격학회-한국산업인력공단 세미포럼 자료집(2021.6.18.)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일반자료실 https://www.ncs.go.kr/th06/bbs_lib_view.do?libDstinCd=01&libSeq=20210621153807744&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에서 2021. 8. 2 인출)

사례중심의 문제해결형 문항보다 여전히 지식측정에 초점을 둔 암기형 객관식 문항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인민간자격 및 개별법 국가자격 모두 이론시험에서 주로 과목별 문제 출제가 일반적이며, 자격검정은 과목 중심으로 단순암기형 지식 평가를 위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이시험(PBT)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론시험의 문제유형은 단순암기형 문항과 객관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중심의 문제해결형 문항의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과목별 문제 출제는 일 중심의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 즉 현 시점에 요구되는 '역량'을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다. 다만 개별법 국가자격의 실기시험에서는 직무영역별 구분과 직무영역간 연계를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검정방법의 경우 실기시험에서 공인민간자격과 개별법 국가자격 모두 수행평가가 각 44.1%로, 현재수준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다.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실기시험이 필기로 시행되는데 단답형(35.3%)이 서술형(13.7%)에 비해 많고, 역량기반 평가에서 중요한 면접시험은 5.9%만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임·김윤아, 2021).

구체적으로 자격제도가 지향하는 역량기반의 자격검정을 위해서는 문항개발과 검정과목 및 방법의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항개발'은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중심'의 문항 출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검정과목'의 경우 기존과 같은 과목별 출제 기준 대신 '과목통합'을 통한 사례위주의 문제 출제가 요구된다. 문제해결능력과 다차원적 사고능력의 평가를 위해 검정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특히 역량평가를 위해 CBT 방식을 적용하여 멀티미디어형 문항과 사례형 문항, CBT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등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동임·김윤아, 2021).

또한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기반의 마련 등 학교 교육 외에 일생활 병행이 가능한 과정형 자격취득이 강조되며 정부와 공급자의 관점만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needs)와 종사자의 전문성과 웰빙에 기초하는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동임·김윤아, 2021). 역량기반의 자격검정을 위해서는 먼저 아이돌봄 직종의 직무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급 체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역량 개념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자격 신설 시 민간자격에 대한 고려와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다. 국가가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 민간에서 이미 공인받은 자격과 동일한 명칭이 아닌 한, 국가는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데 이때 국가가 자격을 만들 수 있는 범위와 운영방식에 대해 어떻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자격증의 신설, 관리, 운영 측면에서 해당 기관의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국가자격이 민간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자격기본법」이 그 과정에서 판단 기준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자격증 제도 도입 초기에는 민간의 역량이 낮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영역이나 수요변화가 잦은 영역의 경우, 유기적 대응이 어려운 국가보다는 민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격증은 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공의 관점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자격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백옥선·이상윤, 2019: 62).

넷째, 유관자격 및 민간분야 활동과의 관계와 적용에 관한 것으로,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아동 교육·보육·돌봄) 전반의 자격체계와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시간 면제 요건으로 반영되어있는 국가자격 4종, 활성화 되어있는 민간분야 육아도우미의 활동과의 관계 설정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 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Ⅲ. 국내외 유관분야 인력 양성·자격체계 분석

이 장에서는 아동 돌봄에 관한 국내외 유관분야 인력 양성 및 자격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국가자격 도입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자격시험의 도입을 통해 수급 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꾀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체계, 대학 양성과정의 학점이수와 교육연한에 근거하여 국가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교적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체계, 대학 양성과정의 학점이수와 교육연한에 근거하되 무시험검정을 통해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건강가정사 자격, 교육기관을 통해 소정의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한 산모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 가구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운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격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을 자격제도 운영의 절차와 방식, 긍-부정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아이돌보미에 준하는 해외 인력관리 체계로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가정내 아동돌봄인력의 운영과 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1. 요양보호사

가. 요양보호사의 정의 및 도입 배경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지칭한다(보건복지부, 2010). 요양보호사는 과거 1급과 2급으로 나뉘었는데,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는 제외되었다(보건복지부, 2010a).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보건복지부, 2020a: 3)

나. 유예기간 및 교육

1) 기존 종사자 유예기간

기존종사자로서 2008년 7월 이전에 노인복지시설에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보건복지부 2009: 3). 이에 따라 기존종사자는 2010년 6월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유예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09: 3).

2) 교육시간

또한, 국가자격(사회복지사, 간호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면허)이 있는 경우 각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을 면제하고,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 8시간을 감면하였다. 또한 면허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1,200시간) 이상인 경우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하고,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을 추가적으로 감면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 전체를 면제하여주었다.

〈표 Ⅲ-1-1〉 신규, 면허소지자, 경력자의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구 분		~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			
		요양보호사 1급				요양보호사 2급				요양보호사			
		총	이론	실기	실습	총	이론	실기	실습	총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120	40	40	40	240	80	80	80
경력자 (1년 이상)	기타일반	160	80	40	40	80	40	20	20	160	80	40	40
	요양 or 재가	140	80	40	20	70	40	20	10	140	80	40	20
	요양 and 재가	120	80	40	0	60	40	20	0	120	80	40	0
국가 자격 소지자 (면허)	사회복지사	50	31	11	8					50	32	10	8
	간호사	40	28	4	8					40	26	6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3	9	8*					50	31	11	8*

주: *국가자격(면허)소지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중 1년 이상 경력자는 실습 면제

자료: 1) 보건복지부(2010a). 2010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6
2) 보건복지부(2010b). 2010년 하반기 요양보호사양성지침
3)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7.
4)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7.
5)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7.
6)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7.
7)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8.
8)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5.
9)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5.
10)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5.
11) 보건복지부(2019a). 2019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7.
12)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7.

이후 2010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 1급, 2급은 요양보호사로 합하여지고, 기존 2급 소지자에 대해서는 승급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0b).

〈표 Ⅲ-1-2〉 승급교육

구 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

주: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자료: 보건복지부(2010b). 2010년 하반기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6

3) 교육내용

가) 이론 및 실기 교육

보건복지부(2019b)의 「2019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의 구성을 살펴보면,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 각론,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인 요양보호 개론에서는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요양보호 관련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하여 다룬다. 2장인 요양보호 관련 지식에서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과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이해와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 운동, 수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장인 요양보호 각론에서는 노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방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4장 현장실습에는 현장실습에 대한 준비와 오리엔테이션, 내용 및 일지 작성, 평가에 대하여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3〉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 구성

장	절	세부내용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1. 노인과 노화 과정 2. 노년기 특성 3.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요양보호 업무
	인권과 직업윤리	1. 노인의 인권 보호 2. 노인학대 예방 3.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5.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 노인성 질환의 특성 2.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1. 치매 2. 뇌졸중 3. 파킨슨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 영양 2. 운동 3. 수면 4. 성생활 5. 약물사용 6. 금연과 적정 음주 7. 예방접종 8.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요양보호 각론	신체활동 지원	1.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2. 식사 및 영양 관리 3. 투약 돕기 4. 배설 돕기 5.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6. 체위변경과 이동 돕기 7. 감염성 질환 예방 8. 복지용구 사용 9. 안전 관리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1.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2. 식사 준비와 영양관리 3.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4.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5. 세탁하기 6.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7.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1.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2. 상황별 의사소통 3. 여가활동 돕기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1. 요양보호 기록 2. 업무보고 3. 업무회의
	치매 요양보호	1.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2.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3.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4. 인지자극 훈련
	임종 요양보호	1. 임종 전 단계

장	절	세부내용
		2. 임종기 단계 3.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응급상황 대처	1. 응급처치 2. 심폐소생술 3.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현장실습	-	1. 현장실습의 목적 및 원칙 2. 현장실습 사전 준비 3.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4. 현장실습 내용 및 일지 작성 5. 현장실습 평가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

나) 현장실습의 내용 및 운영

보건복지부(2017a: 6)는 현장실습의 목적을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관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현장 적응력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정의한다. 현장실습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서 각각 40시간씩 실시하도록 하며 실습지도자는 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실습일지를 점검하고 실습과정 전반에 대한 마무리 지도를 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7a).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에서는 현장실습의 내용으로 1. 세면 및 몸단장, 2, 식사도움, 3, 구강위생, 4. 의복 및 침구교체, 5. 목욕도움, 6. 체위변경과 이동, 7. 화장실 이용하기, 8. 응급상황 대응을 다루고 있으며, 실습일지 작성 및 기록과 평가 및 종결도 포함하고 있다(표 Ⅲ-1-4).

〈표 Ⅲ-1-4〉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내용

내용	
1. 세면 및 몸단장 2. 식사도움 3. 구강위생 4. 의복 및 침구교체	5. 목욕도움 6. 체위변경과 이동 7. 화장실 이용하기 8. 응급상황 대응

자료: 보건복지부(2017b). 요양보호사 실습 매뉴얼 실습생용

실습지도자는 〈표 Ⅲ-1-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습시설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6개월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없으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간병·요양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실습지도자의 자격을 갖는다.

〈표 Ⅲ-1-5〉 요양보호사 실습지도자의 자격

1. 실습시설의 요양보호사(자격 유예자 포함)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3년 이상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실습지도자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2. 요양보호사자격증(1급)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3. 실습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간병·요양업무 경력이 없는 자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설장이 실습지도자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26..

보건복지부(2020)은 시설 유형에 따라 1회 실습가능한 인원 및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가능한 인원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현원의 1/3 이상의 실습생을 받을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시설 및 방문요양·방문목욕의 경우 이용자의 현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 5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 3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표 Ⅲ-1-6〉 시설 유형에 따른 1회 및 1인당 실습가능인원

구분	1회 실습가능인원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가능인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현원의 1/3 범위 내	5인 이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현원의 1/3 범위 내	3인 이내
주야간보호	이용자 현원 범위 내	5인 이내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자 현원 범위 내	3인 이내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 27.

현장실습은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며 실습 중에는 반드시 지정된 실습지도자가 상근하여야 하고 실습 대상자(시설 입소자 혹은 이용자)의 의사 존중과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사전에 실습가능여부에 대하여 실습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4) 교육과정 수료

요양보호사 교육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하는 경우에 수료가 인정된다.

다. 요양보호사 자격검증 시험

2010. 1. 25. 노인복지법[13]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을 도입하였다. 자격검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두 유형 모두 5지선다의 객관식 방식으로 검증한다. 필기시험의 내용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이며 실기시험의 내용은 요양보호에 관한 것이다.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응시자 중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하여야지 자격검증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1-7〉 자격검증 시험 내용 및 방법

시험과목	시험내용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객관식 5지선다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자료: 보건복지부(2010b). 2010년 하반기 요양보호사양성지침, p.6

라.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2010. 1. 25. 노인복지법[14]이 개정되면서 제39조의13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를 두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2020)는

13) 법률 제9964호
14) 법률 제99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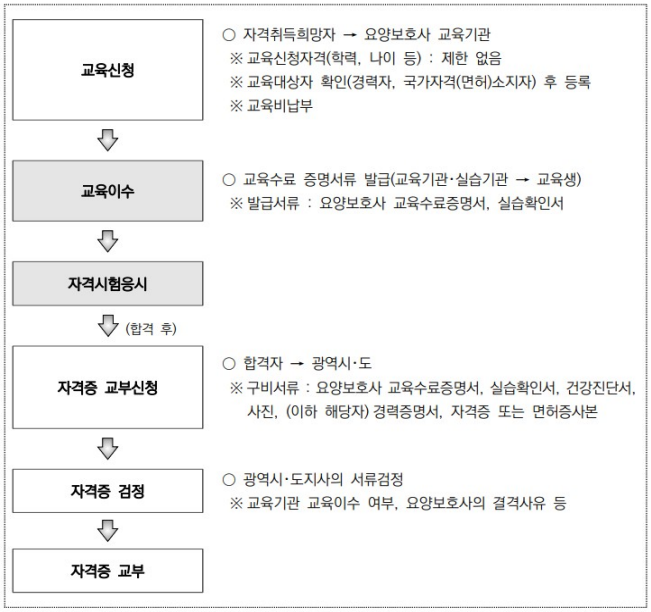
이에 따라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로 두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1, 2호와 관련하여서는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3~5호에 대하여는 각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마.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자격시험이 도입된 이후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는 [그림 Ⅲ-2-1]과 같다. 자격취득희망자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며, 광역시 및 도지사의 서류검정을 통해서 교육이수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자격증이 교부된다.

[그림 Ⅲ-1-1]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2. 청소년지도사[15)]

가. 청소년지도사의 정의 및 발전과정

1) 정의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16)]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자이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며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 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17)]

2) 발전과정 및 양성추이[18)]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 시행 이후로 1999년, 2005년, 2010년 총 3번의 개정을 거쳐 발전하였다. 93년 시행 시에는 사전연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1999년 개정되면서 자격검정 시험 이후 연수를 받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응시자격을 강화하였으며, 연수시간도 상향하였다. 2010년에는 담당기관을 3개 기관으로 분담하고 연수위탁기관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변경하였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3,705명(1993~1998년), 4,868명(1999~2002년), 4,863명(2003~2005년), 2,157명(2006~2007년), 32,223명(2011~2020년) 수준이었다.

15)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청소년지도사 https://www.youth.go.kr/yworker/usr/intro/define.do 참조하여 정리함. 2021. 07. 12. 인출)
16) 법률 제17285호
1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소개, 청소년지도자양성 https://www.kywa.or.kr/leader/leader7_1.jsp (2021. 07. 12. 인출)
18)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2019).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I) 연구내용을 참조, 정리함.

〈표 Ⅲ-2-1〉 청소년지도사 발전과정

구분		1993년 시행	1999년 개정		2005년 개정	2010년 개정
시행년도		1993~2002년	1999~2005년		2006년 이후	2011년 이후
등급		1,2,3등급	1,2,3등급		1,2,3등급	1,2,3등급
자격제도 특성		- 사전연수제도 - 양성기관 지정(대학 및 청소년 단체) ※ 사전연수 후 자격검정	- 사전연수제도 폐지 - 2,3급에 13개 전문선택영역추가 - 응시자격 개방체제 ※ 자격검정 후 합격자연수		- 2, 3급 전문선택 영역 폐지 - 대학에서 시험과목 이수자 필기시험 면제(2008년) - 시험과목 조정 (1급-5과목, 2급-8과목, 3급-7과목) - 응시자격 강화(종사경력 1년씩 추가) ※ 자격검정 후 합격자연수	- 위탁기관변경 - 3개 기관 업무 분담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자격검정 후 합격자연수
응시자격		사전연수 이수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양성인원		인원제한	인원제한 없음			
연수	사전	대학의 청소년(지도)학과, (이수과정 면제)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보이·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			
	자격	-	- 자격연수 선택: 한국청소년개발원(구제도) - 자격연수 의무: 한국청소년수련원(신제도)		- 자격연수 의무: 연수시간 상향(20→30시간)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문	-	- 청소년관련 단체 및 대학 - 2002년 연수과정 시범 운영(한국청소년수련원) - 2003년 전문연수운영기관 - 공모선정시스템 도입 운영		- 국비지원 전문연수 폐지 (전문연수과정→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 한국청소년수련원 자체 예산 편성 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검정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취득현황		3,705명(1993~1998년)	4,868명 (1999~2002년)	1,001명(구)	2,157명 (2006~2007년)	32,223명 (2011~2020년)
				3,867명(신)		

자료: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정의 https://www.youth.go.kr/yworker/usr/intro/define.do (인출일: 2021. 0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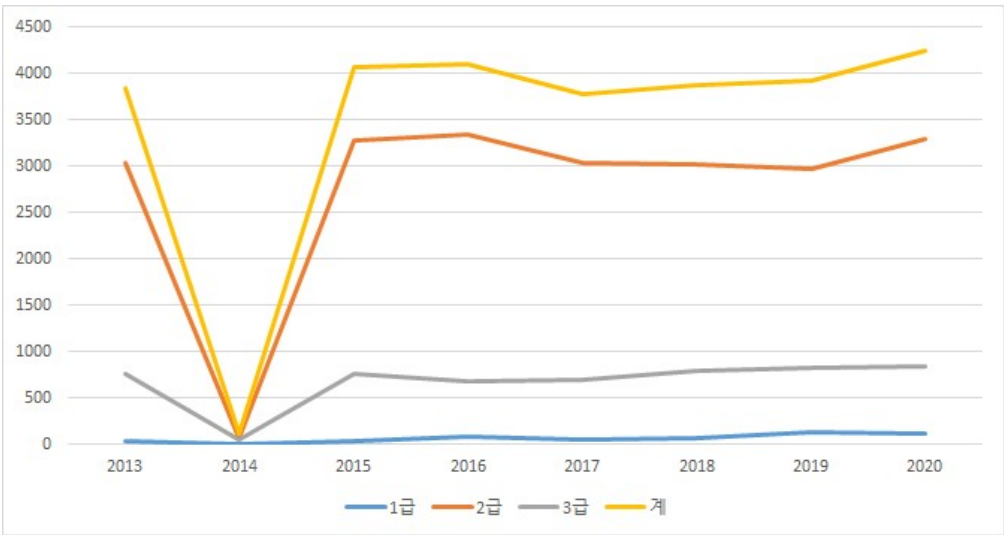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 양성추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하단의 표 및 그림과 같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매해 약 4,000명 안팎의 배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Ⅲ-2-2〉 청소년지도사 양성추이(2013~2020)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급	41	0	28	76	51	64	135	107
2급	3,041	62	3,275	3,346	3,032	3,024	2,966	3,293
3급	755	44	759	674	698	784	828	844
계	3,837	106	4,062	4,096	3,781	3,872	3,929	4,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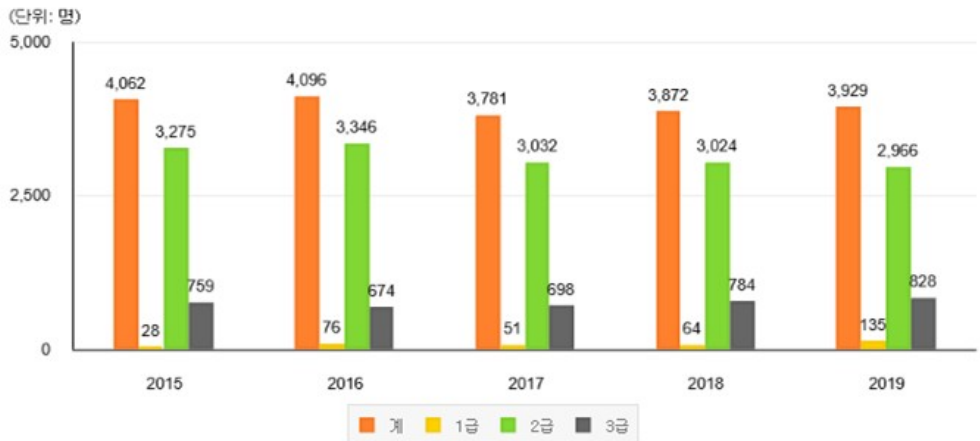
자료: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청소년지도사, 배출현황 https://www.youth.go.kr/yworker/usr/intro/define.do (인출일: 2021. 07. 12.)

[그림 Ⅲ-2-1] 청소년지도사 자격급별 양성 현황 및 추이



자료: 〈표 Ⅲ-2-2〉를 그래프로 나타냄.

[그림 Ⅲ-2-2] 청소년지도사 자격급별 양성 현황 및 추이



자료: 〈표 Ⅲ-2-2〉를 그래프로 나타냄.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는 자격검정→자격연수→배치 및 활동→보수교육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기 및 면접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이후 자격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3박 4일의 3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 과정을 거쳐 자격증이 발급된다. 자격증 발급 이후 청소년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는 2년에 1회 2박 3일(15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1) 자격검정

가) 응시자격

청소년지도사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각 급수에 따른 자격기준은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 따른다. 상세한 요건은 하단 표와 같다.

〈표 Ⅲ-2-3〉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구분	응시자격기준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구분	응시자격기준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소개, 청소년지도자양성, 자격검정 https://www.kywa.or.kr/leader/leader7_1.jsp (인출일: 2021. 07. 12.)

[그림 Ⅲ-2-3]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소개, 청소년지도자양성, 자격연수 https://www.kywa.or.kr/leader/leader8.jsp (인출일: 2021. 07. 12.)

나)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자격검정 과목의 수는 1급은 5과목, 2급은 8과목, 3급은 7과목으로 구성되며 상세 과목은 하단 표와 같다. 1급의 경우 주관식과 객관식을 병행한 필기시험, 2급과 3급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면접을 병행하고 있다. 이 경우 2급 응시자 중 3급 소지자는 면접을 면제한다.

〈표 Ⅲ-2-4〉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관련)

구분	과목	감정방법	
1급 (5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 ·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없음
2급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소지자는 면제)
3급 (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소개, 청소년지도자양성, 자격검정 https://www.kywa.or.kr/leader/leader7_1.jsp 2021. 07. 12. 인출

다) 자격연수, 전문연수, 보수교육

청소년지도사 대상 연수는 자격연수, 전문연수, 보수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격연수는 자격증 발급의 일환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각 급별로 3박 4일의 합숙연수(3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경우 온라인연수로 수행하였다. 전문연수의 경우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및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외 교육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자격유무와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자격이 없는 자가 40시간 이상 수료 시 자격요건 중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 2개월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보수교육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1, 2, 3급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2박 3일 합숙(15시간) 및 온라인교육을 선택적으로 운용한다.

〈표 Ⅲ-2-5〉 연수 종류별 대상 및 시간

구분	연수목적	연수대상	연수시간
자격 연수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의식 고취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 등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 배양 - 현장중심의 교육 및 정보습득을 통한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	1,2,3급 각 합숙연수(3박 4일-30시간 이상) *20년에 한해

구분	연수목적	연수대상	연수시간
	활동 현장의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한 현장중심의 청소년지도사 양성		온라인연수
전문연수	- 청소년현장 및 협업에서 활용 가능한 과정을 운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청소년지도자 양성 -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능력 배양을 통한 청소년 활동의 질적인 향상 도모 - 청소년활동 현장에 대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 기회마련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및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외 교육내용에 관심있는 사람 ※ 청소년지도사 자격유무와는 관계없이 참여가능	집합식, 1일 ~ 5박6일 형태로 운영 40시간 이상수료 시 자격검정 자격요건 중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개월 인정
보수교육	- 청소년지도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기능, 정보제공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 -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 변화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증진 -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청소년분야의 전반적인 흐름 이해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1·2·3급 자격소지자	2박 3일 15시간(합숙) 또는 온라인교육(선택적 운영)

자료: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연수소개, 자격연수 소개 https://www.youth.go.kr/yworker/usr/qual/intro.do
보수교육 소개 https://www.youth.go.kr/yworker/usr/edu/intro.do
전문연수 소개 https://www.youth.go.kr/yworker/usr/special/intro.do 2021. 07. 12 인출

라) 자격취득절차

상세한 자격취득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Ⅲ-2-4] 자격취득절차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소개, 청소년지도자양성, 자격검정 https://www.kywa.or.kr/leader/leader7_1.jsp (인출일: 2021. 07. 12.)

3. 건강가정사

가. 건강가정사의 정의 및 역할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한 전문가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을 담당한다((건강가정기본법[19] 제35조 제2항,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나. 건강가정사의 자격 및 이수과목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부여되며, 별도의 자격검증 시험제도는 두지 않는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은 핵심과목 5과목, 관련과목 7과목으로 총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이다.

〈표 Ⅲ-3-1〉 건강가정사 이수과목

구분		교과목
핵심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 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 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사업, 이수과목안내,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인출일: 2021. 7. 15.)

19) 법률 제17280호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용자인 산모가 제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바우처가 생성되면,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21).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력 모집, 교육 및 노무관리 등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21:79). 이재희·이정림·엄지원·김희선(2020:93-94)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대부분의 종사자가 50대 이상의 고령 여성으로 은퇴 후 소일거리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보고하며, 고령 여성 취업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산모·신생아 관리사로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서비스 인력의 자격 및 교육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가. 자격 및 규모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 [별표 1]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제공 인력에 대한 채용은 제공기관장이 하며, 연중 수시로 채용이 가능하며, 재용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를 즉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89). 2020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 수는 1,054개, 제공인력 수는 18,400명 수준으로 나타난다.[21]

나. 양성교육[22]

1) 교육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 [별표 1의 3]에 따라 거주(F-2), 재외동포

20)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정보마당, 주요통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인출일: 2021. 07. 14.)
22)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정리함.

(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의 비자를 가진 자로 한한다(보건복지부, 2021).

2) 교육과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과정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된다. 신규자 과정의 경우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 60시간의 교육시간 중 이론이 24시간, 실기가 36시간으로 구성된다. 경력자 과정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표 Ⅲ-4-1 참조) 교육시간을 감면해주는 과정으로 총 60시간의 교육시간과 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으로 구성된다.

〈표 Ⅲ-4-1〉 연수 종류별 대상 및 시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9호)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기타사항
신규자 과정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총 60시간 - 이론 24 - 실기 36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경력자 과정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분야 (가사 · 간병 방문지원,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 기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산모· 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총 40시간 - 이론 12 - 실기 28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3. 교육기관 수료 증명서로 확인 4.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으로 확인 ※ 1~4호 경력은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신규자 과정과 통합 운영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106.

교육 과목은 크게 1. 역할인식, 2. 서비스 준비, 3. 서비스 실행, 4. 문제해결, 5. 정부 바우처 행정, 6. 교육 행정으로 분류되며 상세한 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4-2〉 신규자 및 경력자 과정 교육 내용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단위: 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론	실기	합계
1. 역할인식	1-1. 제도의 이해	1-1-1. 바우처 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이해	0.5	0.0	0.5
		1-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0.5	0.0	0.5
	1-2.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1-2-1. 직업윤리 및 직무태도	0.5	0.0	0.5
		1-2-2. 건강관리사 근로기준	0.5	0.0	0.5
		1-2-3. 건강관리사 자기관리	1.0	0.0	1.0
2. 서비스 준비	2-1. 서비스대상 이해	2-1-1.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이해	1.5	0.0	1.5
		2-1-2. 신생아에 대한 이해	1.5	0.0	1.5
	2-2. 서비스 내용 이해	2-2-1. 서비스 현장의 이해	0.5	0.0	0.5
		2-2-2. 서비스표준의 이해	0.5	0.0	0.5
	2-3. 방문 준비	2-3-1. 기본 에티켓	0.5	0.5	1.0
		2-3-2. 의사소통	0.5	1.0	1.5
		2-3-3. 서비스 준비물	0.0	0.5	0.5
3. 서비스 실행	3-1. 최초 준비	3-1-1. 가정환경 및 욕구 파악	0.5	0.5	1.0
		3-1-2.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0.5	0.5	1.0
	3-2. 신생아 돌보기	3-2-1.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0.5	0.5	1.0
		3-2-2. 신생아 모유수유	2.0	4.0	6.0
		3-2-3. 신생아 인공수유	0.5	0.5	1.0
		3-2-4. 신생아 목욕	1.0	4.0	5.0
		3-2-5. 신생아 케어 일반	0.5	0.5	1.0
		3-2-6.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1.5	2.5	4.0
	3-3. 산모 돌보기	3-3-1. 산모 영양 관리	1.0	4.0	5.0
		3-3-2. 산모 건강 관리	2.0	4.0	6.0
		3-3-3. 산모 신체회복 지원	2.0	6.0	8.0
	3-4. 일상생활 지원	3-4-1. 가족 지원	1.0	0.0	1.0
		3-4-2. 가사 지원	0.5	0.5	1.0
		3-4-3. 정서 지원	0.5	0.5	1.0
4. 문제해결	4-1. 서비스 리뷰	4-1-1. 서비스 리뷰	0.5	2.5	3.0
	4-2. 갈등관리	4-2-1. 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0.5	1.5	2.0
5. 정부바우처 행정	5-1. 기록	5-1-1. 제공기록 관리	0.5	1.0	1.5
	5-2. 보고	5-2-1. 특이사항 보고	0.0	0.5	0.5
	5-3. 비용결제	5-3-1. 서비스 비용결제	0.5	0.5	1.0
6. 교육 행정	6-1. 교육행정	6-1-1. 교육행정	(2.0)	(3.0)	(5.0)

주: 1)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2)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p.109-110.

다. 보수교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은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와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는 연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인력의 경우 연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b:118). 보수교육의 내용은 〈표 Ⅲ-4-3〉와 같다.

〈표 Ⅲ-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보수교육내용

대상자	교육내용
공통	-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 결제 예방 -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사회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직업비전 -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 장애인 산모인식개선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 평가(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제공인력	- 산모관리(우울증 증상 및 진단, 산모보양식·간식 조리법, 신체 부위별 산후 부종관리방법, 산후 체중관리법 등) - 신생아 관리(신생아 주요 질환 이해) - 수유관리(모유수유 전문 과정) - 일상생활지원(수납 노하우 등) - 특수대상 관리(다문화 가정 이해, 외국인 산모를 위한 산후 음식 등)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상담 기본이론 및 기법 - 현장 클레임 대응법 - 방문 매너 이미지 메이킹 - 실무서류 작성 등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120.

5. 국내 유관자격 현황[23)]

유관자격 돌봄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31,444명(2019년 12월말 기준), 유치원 교원 53,362명(2019년 4월 기준), 초등돌봄전담사 약 1만 4천명(2019년 기준),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약 10만명(현직교원 5,882명/외부강사 96,120명, 2019년 4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817명(2020년 8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9,495명(2018년

23) 최윤경·박은정·우석진·김보미(2020). 성인지관점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참조, 재구성함.

기준)으로 나타나며, 아이돌봄지원법 상의 민간육아도우미의 현황과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최윤경 외, 2020: 67-72).

한편, 2019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의하면, 돌봄영역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는 2019년 110만 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750만9천명의 약 4%로 집계되었으며, 통계청 고용조사에서의 돌봄노동자 규모는 2008년 대비 2019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여기서 돌봄노동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35만명, 노인요양보호사 45만명, 노인생활지원사 3만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만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만명, 아이돌보미 2만5천명,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1만명, 초등돌봄전담사 1만2천명이 있으며, 여기에 가사관리사와 간병사 약 30여만명은 돌봄노동자 통계자료에 포함되어있지 않다(최윤경 외, 2020: 67-74).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육·돌봄의 직무를 수행하는 광의의 유관자격 체계를 살펴보면, 공립유치원 교원 임용고시를 제외하고는 아동 대상 교육·보육·돌봄 교직원/인력의 경우 교육·훈련의 양성과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으로 이루어진다. 보육교사 국자자격제도는 2004년 1월 29일「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무시험 원칙이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초등방과후 돌봄 인력은 초등돌봄교실(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강사), 지역아동센터(종사자),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의 자격, 역할, 채용 및 능력개발 사항과 돌봄인력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가 제안되었으며(유해미 외, 2019), 관련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예: 온종일돌봄체계 법안 발의[24]).

〈표 Ⅲ-5-1〉 교육·보육·돌봄인력 자격-양성-교육·훈련 현황

구분	자격	양성과정	연수·보수 교육	근로유형
유치원 담임교사	• 정교사 1급, 2급 소지자	• 1급: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재교육 또는 석사 학위 취득 • 2급: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	•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및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연수(교육부)	종일제
유치원 비담임교사	•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동	시간제 및 종일제
어린이집 담임교사	• 보육교사 1급, 2급 소지자	• 1급: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경력 및 석사학위 취득과 승급교육	• 능력 개발을 위한 정기 직무교육 및 상위등급 자격	종일제 (평일 8시간)

24) 권칠승의원 대표발의(2022. 6. 10)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2022. 8. 4)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분	자격	양성과정	연수·보수 교육	근로유형
		• 2급: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졸업 3급 취득 후 2년 이상 보육경력 및 승급교육	취득을 위한 승급 교육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 보육교사 3급 자격 이상 소지자	• 3급: 고등학교 졸업 후 보건복지부령 교육과정 수료	상동	시간제 및 종일제
초등돌봄 전담사	•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 돌봄전담사 능력 개발 차원의 다양한 교육 추진	시간제(4시간) 또는 종일제(8시간)
지자체 돌봄인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사 자격증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필수교육 (6시간,집합교육) • 선택교육 (20시간,집합·온라인 교육)	전일제(8시간) 및 시간제(4시간)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 소지자	-	• 기존 종사자 교육 25시간 • 신규 종사자 교육 25시간	종일제 (1일 8시간 이상)
육아종합 지원센터	• 보육교사 1급 • 사회복지사 1급 취득후 보육업무 3년 이상 종사자	-	-	시간제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론+현장실습) 이수자	이론교육 80시간, 현장실습 20시간	기본과정 및 특화과정 8시간	시간제, 영아종일제
민간 육아도우미	• 소개업체에 따라 자격부여요건 상이(예. 현장실습 및 해당업체 교육 이수자, 보육업무 경력자 여부 등)	• 베이비시터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양성 교육 (필기시험 운영 여부, 교육 시수 차이 등 기관별 자격 취득 요건 상이)	• 소개업체에서 온·오프라인 이론 및 실습 교육 자체 운영	시간제 및 종일제

자료: 1) 교육부(2020).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 10.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780호]
3)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보육교직원 'p. 161, p. 221.
4)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19). pp. 18-20.
5) 보건복지부(2020b). 2020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p. 48, pp. 55-56, p. 127.
6) 보건복지부(2020d).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 30, 59, 72.
7)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별 지원 자격기준'. p. 469.
8) 여성가족부고시 제2019-51호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9)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2020). 지원 및 양성 〉 양성 과정, 아이돌보미 활동 〉 돌봄 활동 내용. https://care.idolbom.go.kr/dolbomi/CMM/commonGoFront.do에서 2020. 10. 20 인출.
10) 유해미·권미경·김근진·이윤진·이혜민(2019). 아이돌보미 및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관리 방안 연구. pp. 144-159.
11) 최윤경·박은정·우석진·김보미(2020: 89-90). 성인지관점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표 Ⅲ-3-1〉 돌봄인력 자격과 양성과정 및 근로유형 현황서 재인용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해미 외(2019)는 「아이돌보미 및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 관리 방안 연구」에서 유사분야 돌봄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 초등돌봄인력 등)의 자격체계 고찰과 아이돌보미 직무분석,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의 자격관리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공공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의 자격관리 연계의 필요성과 아이돌보미 및 민간육아도우미에 대한 적정수준의 자격관리 방안을 통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사항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화된 노동권 보장에의 요구를 고려한 단계별 추진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고려한 이행 전략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이정원 외(2018)는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아이돌보미 활용과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실태를 파악하고, 양육지원체계 내에서 아이돌봄 재가 방문서비스의 역할과 자리매김, 향후 발전방향과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동 연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아이돌보미 활동 '소득'이 아이돌보미 일에 대한 만족도 결정의 중요 요인이자 동기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획된 아이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인력 유입과 양성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함 논의하였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단가 인상 외에, 우수한 인력의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경력의 개발과 업무난이도, 인력전문성, (미숙아와 장애아 등의) 특수사례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의 지급과 같은 지급단가/수당의 차등화를 제안하였다. 향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인력의 전문성 증진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이력관리와 국가자격의 도입을 위한 로드맵으로 보수교육의 업무영역별 세분화(예: 까다로운 아이,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등)와 아이돌보미 인력양성 TF의 구성과 운영을 제시하였다.

이미화 외(2016)는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자격 연구를 통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과 자격 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 교사 자격체계와 양성과정에 적합한 정비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미화 외(2017)는 「국가시험제 등 보육교직원 자격강화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및 현직 종사자에 비해 과잉 양성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한 자격체계 고찰과 국가시험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편, 오은진(2010)은 영국의 돌봄노동 종사자 자격제도 및 현황 분석에서 비공식 노동 분야였던 돌봄노동을 공식화하는 자격제도를 언급하며, 돌봄노동의 규모 파악과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자격제도를 통해 수요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조정윤·정향진·박종성(2013)은 국내 교육서비스 분야 자격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자격종목의 활용성과 신규 발굴할 자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서비스 자격의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보수적정성의 관점에서 활용성을 분석하여, 4개의 자격종목(학습컨설턴트, 장애인평생교육지도사, 영재지도사, 영아돌보미)을 교육서비스분야에서 신규로 발굴할 것을 제시하였다. 영아돌보미의 경우 영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돌보미의 자질과 능력의 검증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강일규 외(2008)는 아동돌봄도우미의 인력 현황과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 및 민간 아동돌봄도우미의 양성과 지원, 인력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담보의 필요성과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 및 국가수준 자격제도의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윤경 외(2020)는 광의의 아동돌봄은 취학 전-후 아동기 특성상 교육과 보육, 돌봄을 포괄하며, 아동대상 돌봄(교육·보육·돌봄)을 제공하는 교직원과 인력은 국가자격기준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통점과 이질성을 함께 갖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돌봄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 보수교육, 근로유형과 처우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교육·보육·돌봄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의 연계와 연속성의 확보가 공통요소에 기반하여 가능함을 논의하였다(표 III-5-1, 그림 Ⅲ-7-1 참조).

공통적으로 아동 대상의 교육·보육·돌봄의 인력 운영은 양성과정을 통한 교육훈련과 자격체계의 수립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양질의 우수인력의 진입과 교육, 고용과 근속 및 처우가 반영되는 지속적인 경력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민간 등 유관 자격의 체계의 상호 연계의 필요성과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논의가 있었다.

6. 국내 관련 법령 비교

가. 요양보호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관련 법령 비교

1) 직무 및 자격

노인복지법[25] 제39조의2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해 규정한다. 동법 제39조의2제2항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제3항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26] 제35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사를 규정하고, 건강가정사는 대학 이상의 학력 및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건강가정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사는 별도의 자격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청소년 기본법[27] 제21조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제6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검정을 청소년 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5) 법률 제9964호
26) 법률 제17280호
27) 법률 제17285호

〈표 Ⅲ-6-1〉 직무 및 자격증 교부 등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2)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데,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하였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는 각각 요양보호사와 청소년지도사의 자격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를 자격 취소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표 Ⅲ-6-2〉 결격 사유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표 Ⅲ-6-3〉 자격 취소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자격시험 응시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일정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표 Ⅲ-6-4〉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4)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와 별표 10의2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는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규정하는데, 연수 실시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Ⅲ-6-5〉 교육과정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표 Ⅲ-6-6〉 교육기관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 · 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 · 장소 · 내용 · 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우 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자격시험 실시기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표 Ⅲ-6-7〉 자격시험 실시기관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6) 자격시험 과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고,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을 별표에 규정한다.

〈표 Ⅲ-6-8〉 자격시험 과목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으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7)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실시 공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및 응시자격 증명서류에 대해 규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각각 요양보호사와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시험 실시 공고에 관해 규정한다.

〈표 Ⅲ-6-9〉 자격시험 응시원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 · 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 ·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표 Ⅲ-6-10〉 자격시험 실시 공고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 · 시험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전에 일시 · 장소 · 검정과목 · 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8)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제1항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시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2급·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또는 필기시험 면제자 중에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표 Ⅲ-6-11〉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① 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2급·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 ④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9)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을 시·도지사가 한다고 규정하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한다.

〈표 Ⅲ-6-12〉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실습확인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시 · 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10)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조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7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3은 각각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다.

〈표 Ⅲ-6-13〉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조치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1) 경과조치

노인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은 각각 부칙에서 요양보호사와 청소년지도사 관련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한다.

〈표 Ⅲ-6-14〉 경과조치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	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국외 돌봄인력 정책

해외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별로 이용가능한 아동 교육과 보육, 돌봄(ECEC) 서비스 유형은 다르며, 아동 대상 교육과 보육, 돌봄의 제 영역을 포괄하여 볼 때 OECD는 다음과 같이 교육·보육·돌봄(ECEC)의 인력을 구분하고 있다.

〈표 Ⅲ-7-1〉 아동 교육·보육·돌봄(ECEC) 인력(workers) 유형

구분	내용
보육교사 (Child care workers)	· 보육교사 자격요건은 국가마다 다르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양성과정 및 자격급 구성과 연계에 차이가 있음. · 상당수 국가에서 영유아 보육사(일반적으로 의무교육 수준) 혹은 직업교육 수준의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됨. ·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의무교육 연한(Secondary level) 졸업과 약 1년 혹은 2년의 직업교육 비학위과정을 운영

구분	내용
· 학령기 직전 교사 (Pre-primary teacher) · 초등교사(Primary teacher) · 유치원(유아원)교사 (Kindergarten, Preschool teacher)	· 학령기 직전의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초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형태임(예: 호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네덜란드의 경우 학령기 직전 교사교육은 유아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모두 포함 · 연방국가들은 각 주마다 혹은 지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사교육이 존재하나,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양성 목표와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함.
가정보육담당자 (Family and domestic care workers)	· 가정보육 담당자는 소규모 가정보육시설 혹은 가정보육시설과 같은 형태의 기관 환경의 양육자(caregivers)임. · Childminder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보육시설이나 영유아의 가정에서 Childminder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사람(nanny, babysitter)이 해당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
교육사(Pedagogues)	· 노르딕과 중앙유럽 국가들에서 교육사를 양성함. · 교육사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유아를 위한 돌봄 등 서비스제공에 초점을 두어 양성 · 교육사는 영유아기 외 청소년기, 아동기 환경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 · 일부 국가에서 교육사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책임을 맡고 있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함.
보조(담당)직원 (Auxiliary staff)	· 다양한 유형의 보조인력이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 근무 · 보조인력 양성과정은 국가별로 매우 다른데, 일부 국가는 형식적인 자격요건이나 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노르딕 국가는 유아원/유치원(preschool)의 보조인력은 고등의무교육(upper secondary level) 이수를 요구함.

자료: OECD(2011). OECD network "Survery for the Quality Tools and ECEC Portal". (http://www.oecd.org/education/school/49322268.pdf에서 p.3의 Table 1). 2015. 10. 9. 인출; 이미화 외(2017) 재인용.

대체로 가정보육(Home-based childcare workers)을 담당하는 인력을 위해 특성화 된 단기양성과정에 대한 규정과 공식적인 인증(official accreditation) 및 등록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양성과정의 시간과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나라별로 상이하며, 일례로 헝가리는 40시간 이수, 에스토니아는 이론수업 160시간과 실습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미화 외, 2017: 80).

Childminder에게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요구하는 국가로 시라프스와 말타에서는 보육인력과 동일한 최소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덴마크, 룩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는 동일연령 아동 대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인력에 준하는 최소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등 국가별로 돌봄인력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훈련의 양성과정이 상당히 다르다(이미화 외, 2017: 80). 대표적인 입법 사례로 영국의 Childminder와 Nanny,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Tagesmutter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영국의 Childminder

Childminder는 본인의 거주지에 아동을 데려와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 임금을 받고 아동을 돌봐야 하며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교육표준청 또는 교육·아동서비스및역량 표준국)에 등록되어야 한다[28]. Childminder는 책임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매년 1회 Ofsted(교육표준청, 이후 원어 약자 Ofsted로 표기함)의 감독을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받는다(김아름·유해미·윤지연, 2018: 87).

Childminder가 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업데이트 되는 12시간의 소아응급처치(Paediatric First Aid)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입문 교육과정(introductory training course)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29] Childminder로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는 8세이하 아동 대상일 것, 하루에 2시간 이상 자신의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로 되어있다. 또한 18세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보는 아동이 자신과 친인척 관계인 경우, 영국에서 근로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 아동 관련 직업이 금지된 경우, 아동돌봄 관련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Ofsted 등록이 거절되거나 취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 부적격인 인물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Ofsted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30].

나. 영국의 Nanny

Nanny는 의뢰인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동시에 1~2가정의 아동을 돌볼 수 있다. 단 자신의 집에서 2곳의 가정을 초과한 아동들을 돌보는 경우에는 childminder로 Ofsted에 등록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nanny로 활동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격은 요구되지 않는다(김아름·유해미·윤지연, 2018: 105). Nanny는 Ofsted에 등록할 의무는 없지만 부모의 원활한 선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Ofsted에 등록할 수 있으며[31], Nanny가 Ofsted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28) 영국정부 돌봄사업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co.uk/information/what-is-a-childminder (2021.2.10. 인출)
29) 영국정부 돌봄사업 홈페이지 https://childmindinguk.com/becoming-a-childminder (2021.2.10. 인출)
30)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become-childminder-nanny (2021.2.10. 인출)
31)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childminders-and-childcare-providers-register-with-ofsted/nannies-registration (2021.2.10. 인출)

조회, 아동연령에 적합한 소아응급처치에 관한 자격(First Aid qualification) 및 아동돌봄의 핵심 기술에 대한 최소 Level 2 이상의 자격(minimum level 2 qualification in childcare or training in the common core skills)이 요구된다.[32]

Nanny가 Ofsted에 등록하기 위한 Level 2 이상의 아동돌봄 자격은 아동돌봄·교육위원회(CACHE: the Council for Award's Children's Care and Education) 등의 기관에서 수여하는 자격으로 CACHE Level 2, Certificate in Childcare and Education(CCE)은 1년 종일제(one-year full-time) 또는 2년 시간제(two-year part-time)의 양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33]

영국의 childminder와 nanny 등록 요건은, 5세이하 아동을 돌보는 childminder의 경우 Early Years Register에 등록하고, 5~8세 아동을 돌보는 childminder인 경우 그리고 아동의 나이와 무관하게 nanny인 경우는 Childcare Register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34]. 영국에서 childminder와 nanny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등록 전 아동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훈련(first aid training)과 아동돌봄 전반에 관한 양성과정(childcare training)을 이수해야 한다. Childminder/nanny 관련 등록 시스템은 Ofsted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등록 과정에 필요한 아동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훈련과 아동돌봄에 관한 양성교육과정은 지자체 위원회(local council)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childminder/nanny 교육·훈련 과정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지자체위원회(local council)에서 지역 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PACEY(The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 아동돌봄 전문가협의회) 등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32)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childminders-and-childcare-providers-register-with-ofsted/nannies-registration (2021.2.10. 인출)

33) 영국 지자체 돌봄사업 https://www.kensington-nannies.co.uk/pages/nannies4 (2021.2.10. 인출)

34) Ofsted 등록 시 필요서류: 영국 정부 홈페이지((2021.2.10. 인출)
https://www.gov.uk/guidance/childminders-and-childcare-providers-register-with-ofsted/nannies-registration
- 범죄경력 조회(enhanced criminal record check with barred lists from the 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DBS))
- 돌봄 제공 아동 연령에 적합한 아동응급처치 훈련 이수(first aid training)
- 아동돌봄 교육과정(childcare training)은 지자체 위원회(local council)에 문의
- 건강검진결과(health declaration booklet)-childminder의 경우만 해당됨.
- 신원확인정보(contact details for 2 references)
- 대사관에서 발급한 인적성검사certificate of good character) 지난 5년간 해외 거주 시에 해당됨
- 16세이상의 사람이 집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을 경우 그들도 범죄경력 조회 및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성검사(지난 5년간 해외 거주시 해당) 제출 필요함. 이는 childminder의 경우에만 해당됨.

일례로 영국의 지자체 London borough of Merton에서는 ICP(Introduction to Childcare Practice)라는 입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PACEY(아동돌봄 전문가협의회)의 HBCA(Home-based Childcare) 교육과정 이수를 추천하기도 한다. 양성 교과목 및 교육과정의 구성은 아동돌봄 실제에 관한 실습 입문과목(ICP Course)과 PACEY(The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 아동돌봄 전문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가정내돌봄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정(HBCA: Preparing to Work in Home-based Childcare)을 제공하고, 아동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다른 예로 영국의 Harrow council의 경우는 Stanmore college와 함께 14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처치 교육(first aid course)의 경우 Learn in Harrow 라는 기관을 추천하고 있다. 35).

다. 독일·오스트리아의 Tagesmutter

Tagesmutter는 childminder와 같이 tagesmutter의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을 수행하며, 5명 이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Tagesmutter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교육학 관련 자격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영유아를 위한 응급조치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김아름·유해미·윤지연, 2018: 105).

이러한 교육과정은 지방정부의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 120시간의 교육학 과정(10시간 이상의 교육학원론 과목, 20시간 이상의 발달심리 과목, 10시간 이상의 다양성 관련 수업, 30시간 이상의 인성개발 및 의사소통, 10시간 이상의 건강·영양 관련 교과목 등 포함)을 수료해야 한다[36].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 이론적 교육 외에도 교육과정 기간 동안 총 160시간 이상의 인턴쉽을 완료해야 하며[37],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35) London borough of Merton 교육과정 안내 원문(일부): https://www.merton.gov.uk/communities-and-neighbourhoods/childcare/thinking-of-working-in-childcare/becoming-a-childminder (2021.2.10. 인출)
- London Borough of Merton runs an Introduction to Childcare Practice (ICP) Course. The cost of the Merton ICP course is £200, payable in advance of the course date. You can book a place once you have attended a Childminder Briefing.
- The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 (PACEY) deliver an e-learning course - Preparing to Work in Home-based Childcare (HBCA).
- Paediatric First Aid training. Below are some course providers, but you can choose any provider of this training: Actual First Aid(www.actualfirstaid.com), Tiger Lily Training (www.tigerlilytraining.co.uk), Surrey First Aid Training(www.surreyfirstaid.com), St Johns Ambulance(www.sja.org.uk).

36) 오스트리아 빈 정부 홈페이지 https://www.wien.gv.at/menschen/kind-familie/ahs-info/ausbildung.html (2021.2.10. 인출)

37) 오스트리아 빈 정부 홈페이지 https://www.wien.gv.at/menschen/kind-familie/ahs-info/ausbildung.html (2021.2.10. 인출)

경우에는 tagesmutter로서 활동할 수 없고 관청(Jugendamt)에서 tagesmutter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주지 않는다(김아름·유해미·윤지연, 2018: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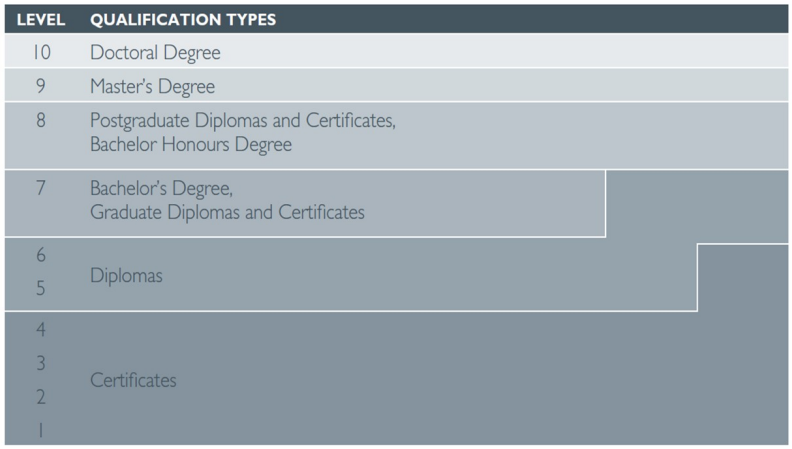
라. 국내외 아동 교육·보육·돌봄(ECEC) 인력의 자격체계 시사점

이 절에서는 본인 또는 의뢰인의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돌봄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으로 범주를 넓혀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동 돌봄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관서비스 이용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서비스 유형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ECEC(아동 대상의 교육·보육·돌봄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 이하 원문 약어 ECEC로 표기)는 센터와 학교, 개별가정에서의 가정보육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특히 ECEC에 관한 제반 환경과 운영 및 행정 체계는 점차 통합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ECEC에는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자격체계의 틀(Qualification Framework)이 있다 – 예) ISCED level, NCF(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수준의 자격체계에는 양적·형식적 요건으로 교육연한과 학점 수, 자격급 체계와 경력연한, 연수(보수교육 시간) 등이 있으며, 질적·비형식적 요건으로 교사 멘토링과 인성 지원의 상담체계, 보조인력의 배치와 같은 팀 단위 역할, 지자체와 각 원의 자율연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ECEC의 경우 학제와 관련하여 의무교육 시작 연령, 보편적인 법적 이용권한(entitlement), 무상 이용권한 등의 이슈를 갖고 있으며, 점차 많은 국가에서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등 단순히 돌봄과 보호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된 활동범위와 환경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OECD, 2015).

이러한 아동돌봄 인력 자격요건의 연속성을 체계화 한 예시로 뉴질랜드의 아동 교육·보육·돌봄 인력의 자격체계에 관한 학력연한과 레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7-1] 뉴질랜드 ECEC 자격체계(NQS)



자료: NZQA(2015b).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p.5; 최윤경 외((2015) 그림 V-2-1 재인용

아동돌봄 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증명서 제출에서부터(레벨 1~4), 프로그램 졸업증서(레벨 5~6), 학사학위에 준하는 교육연한(레벨 7), 그리고 학사학위 이후 과정 및 프로그램 이수(레벨 8), 석사학위(레벨 9), 박사학위의 경우 레벨 10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연한을 고려한 자격요건의 구성을 통해 아동돌봄인력의 역할과 급여 및 양성/보수 교육의 과정(교과목 내용 및 수)이 달라진다.

이는 앞서 살펴본 NCS 기반의 역량중심 자격체계의 도입과 같은 직무역량 단위에 기초한 관련 업무의 체계화 및 연계와도 연관된 것으로, 돌봄에 관한 유관분야 양성 및 자격 체계가 그 유관성과 연속성의 관점(예: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에서 체계화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를 통해 영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체계화 된 아동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가수준의 자격제도를 통해 돌봄인력에 대한 양성·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해외국가 사례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관리가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좀 더 공식화된 양성·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체계와 이에 따른 차별화 된 양성/보수 교육과정의 운영, 보수체계(처우)와 일자리의 질에 관한 쟁점이 지속됨에 따라 돌봄인력의 직무와 일자리 정책으로서의 대응은 해외사례에서 드러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광의의 돌봄 범주로 살펴볼 때 유관자격 분야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가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아

이돌보미에게 국가수준의 자격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돌봄노동의 역할과 사회경제적 가치, 범주에 관한 것으로, 오랜기간 돌봄의 영역과 관련 직무가 공식(유급)과 비공식(무급)의 영역, 공적분야에서부터 사적영역에 이르기까지, 종일제의 특화된 업무영역에서부터 일시적 시간제 돌봄과 보호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과 전문성의 수준을 갖고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돌봄노동과 가사노동과 같이 저평가되어있던 부분이 경제활동 전반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돌봄경제(care economy) 관점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예: ILO, 2018, 최윤경 외, 2020). 돌봄인력의 근로자성 인정과 가사근로자법의 도입과 같이 노동권의 보장 관점에서 종사자에 대한 법적 권리과 보호가 체계화 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돌봄정책은 돌봄의 직무를 수행하는 돌봄인력에 대한 고용·노동 및 처우, 일자리의 질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체계 및 자격제도와 마찬가지로 전문화 된 직무와 역량(competence, skill)에 기초하여 돌봄이 공식적으로 파악된 직무역할과 역량을 통해 이루어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예: NCS 기반 직무분석).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했던 돌봄에 대해 전환점이 되는 제도화 과정의 논의가 필요하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자격화에 대한 검토는 돌봄노동의 공식화와 가치산정을 구체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관리와 NCS 기반 자격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 등 관련 방안의 실행가능성을 검토 및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쟁점 및 의견조사 결과

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쟁점

3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돌봄 유관 자격에 관한 자격요건과 이행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시 고려해야할 주요 쟁점을 앞서 살펴본 자격 특성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도입 관련 쟁점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20a). 앞서 살펴본대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과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시행되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간병인,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민간자격에 머물렀던 노인요양 관련 직종들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권에 편입되었다(김준환, 2008).

현재와 달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초기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교육 이수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으로 총 240시간, 요양보호사 2급의 경우 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 실습 40시간의 총 120시간 교육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했으며 경력자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국가자격(면허)소지자의 경우 유형에 따라 교육시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10년 시험제도가 도입되고 교육기관이 지정제로 바뀌기 이전 시기의 자격제도는 요양보호사의 양적 확충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인력수급, 교육과정, 자격관리체계 등 여러 영역에서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보고된다. 먼저 인력수급의 경우 인력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고 신고하면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여 많은 교육기관이 난립하였고, 이로 인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약 98만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해당기간 자격증 소지자 대비 취업자의 비율은 약 20%대 내외로 나타났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수는 2008년 102,456명, 2009년 172,889명으로 같은 기간 요

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가 각각 339,197명, 692,138명인 것을 고려하면 공급의 과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용갑·서동민· 최태림·김윤영·경승구, 2015). 이러한 공급 과잉은 종사자의 처우를 하향시키고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되었다(김준환, 2008; 국회입법조사처, 2009).

교육과정의 경우 앞서 언급한 신고제로 인한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기본적 업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요양보호사가 배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있었다(엄기욱, 2011). 예를 들어 소수의 강사만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출석 부실관리, 실습 시 관련 업무가 아닌 청소 및 밭갈기 등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김준환, 2008; 엄기욱, 2011). 국회입법조사처(200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내실있는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쉽게 자격 취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히려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져서 지속적인 운영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

자격관리체계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이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서 요양보호사 1급은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활동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으며, 2급은 일상생활활동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직무상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김준환, 2008). 자격증을 신규 취득할 때 교육시간만 더 이수하면 1급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굳이 2급을 취득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구분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도 있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엄기욱, 2011).

이러한 문제 제기 결과, 2010년 1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설립이 신고제에서 시도지사에 의한 지정제로 변경되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요양보호사 자격은 관련 민간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이수 후(이론, 실기, 실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요양보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논의되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된 후 신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8년-2010년 사이 매년 약 30만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자격시험 도입 이후 2011년-2015년 사이 자격 취득자의 수는 매년 5-7만명 수준으로 급감하였다(이용갑 외, 2015).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임금, 처우 및 근로환경 등이 열악하여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인식,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막연한 기대의 하락, 자격시험 강화로 인한 자격취득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었다(경승구·장소현·이용갑,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약 86%에 육박하였는데, 자격을 쉽게 취득하는 것은 해당 직종의 전문성이 낮다는 인식을 주어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혜승·유승현, 2013). 일부 연구는 요양보호사 자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교과목 이수시간과 교과목을 확대하며,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윤민석·문진영, 2020).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현재 연령, 학력 등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는 것으로 인해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배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손덕순, 2013). 이용갑 외(2015)의 연구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검정 제도의 문제점으로 연령 및 학력 제한이 없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학력, 고연령 여성들이 직업의식이 부족한 상태로 자격 취득 후 현장에서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교육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일원화되면서 급수의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짧은 교육시간과 실습으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이 논의되었다. 국내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연간 24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덴마크는 요양보호사 22개월, 요양보조인력 16개월의 훈련기간을 요구하며, 일본은 요양인력의 경우 1~4년의 경험을 필요로 하며, 1급 요양보조인력에게는 230시간, 2급 요양보조인력에게는 130시간의 훈련을 요구한다(전병유, 2010).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적이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서동민, 2013).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는 자격 취득 2년 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공간의 확보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업무에서 제외되므로 임금에 영향을 미쳐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보수교육의 의무화 및 참가시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며, 보수교육 수행 주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용갑 외, 2015)

쉬운 자격취득은 시설장에게도 부담 요소가 되어, 시설장은 요양보호사의 잦은 이직과 우수 인력 구인의 어려움, 신규 요양보호사 재교육 부담 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엄격한 교육과 어려운 시험을 통해 양질의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공급받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승·유승현, 2013).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자격증 취득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불안정한 고용상태,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급여, 규정된 범위 외의 서비

스 요구 등의 요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취업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직접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상황이 있었다(손덕순, 2013).

젊은 인력들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경력개발과 진급이 불가능한 단순 노무직 취급을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경승구·장소현·이용갑, 2018).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및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규모는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50-60대로 구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국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통해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하여 경력개발 경로를 확보하고 젊은 인력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사자의 인력기준 강화 및 적정임금 지급 보장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요양보호사 제도 변화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확충을 위해 교육기관이 관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부여한 결과, 요양보호사가 과잉배출되고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과잉배출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자격시험을 도입한 이후에도 시험이 지나치게 쉬워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후 1, 2급 급수 구분이 없어졌는데 이로 인해 경력개발의 경로가 마련되지 않는 점이 젊은 층의 진입을 막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급수가 구분된다 하더라도 실제 수행 업무상에는 차이가 없는 지점도 고려되어, 자격급 체계에 맞는 직무와 역할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의 양적 확충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하는 비율은 20%대에 불과한데, 이는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수와 기관의 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육아전문관리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낮은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에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쉬운 자격시험 제도까지 더해졌을 때, 중기적으로 과잉 공급과 전문성 신장의 어려움,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 보수교육의 측면에서 근거법령이 없어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았으며, 보수교육 참여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참가 유인이 부족하였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보수교육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지속적인 질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시 보수교육과 관련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자격 체계 변화와 쟁점[38)]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 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3년부터 시행되면서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가 양성·배출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시행 당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는 사전 연수 후 자격검정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청소년지도사 양성 수급계획에 따라 등록 인원을 사전에 계획하여 이수과정을 운영한다. 양성기관은 등록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접수하여 기준에 따라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고, 연수대상자가 이수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하면 수료증을 발급하여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최종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수과정의 경우 1급은 10과목 160시간 이상, 2급 8과목 120시간 이상, 3급 9과목 5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문대학 이상(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을 전공한 경우 과정이수를 면제받았다. 자격검정의 경우 1급은 전공 5과목, 2급은 전공 4과목, 3급은 전공 7과목이며, 필기 평균 60점 이상, 이후 면접 합격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교부되었다.

이수과정 등록요건의 경우 1급과정은 대학졸업+3년 경력, 전문대졸업+5년 경력, 2급 자격소지+3년 경력이며, 2급 과정은 대학졸업, 전문대 졸업+2년 경력, 고등학교 졸업+4년 경력, 3급 자격소지+2년 경력이며, 교원(2급 정교사 이상), 사회복지사(2급이상), 사회교육전문요원(1급), 생활체육지도사(2급이상), 청소년상담원(3급이상) 자격소지자의 경우에도 등록 자격이 부여되었다. 3급과정의 경우 전문대졸업, 고등학교졸업+2년 경력자가 그 대상이었다. 등록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년 양성인원의 규모가 계획되었는데, 1급 100명, 2급 200-400명, 3급 200-300명 정도로 계획되었으며, 지원자 중 직업, 경력, 학력 순으로 점수를 산출하여 등록자를 선발하였다.

38) 김경준·박정배(2020)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과목 개편방안 연구 참조

이러한 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출하여 1999년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1999년 제도의 변화는 선 시험, 후 연수로 요약할 수 있다. 사전 연수과정의 인원 제한으로 인해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완화를 위해 사전연수 과정을 폐지하고 자격검증(필기+면접)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 자격검정 과목에 전문선택영역을 신설하고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신규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20시간 이상의 사후연수를 받도록 하였다(이광호, 2000). 1급 청소년지도사 취득 자격이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정되었으며, 기존에는 2급자격 없이 바로 1급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급 취득후 3년 경력자로 한정하여 기준을 강화하였다. 자격검정과목의 경우 전문선택영역을 신설하여 공통영역(필수+선택)과 전문선택영역(13과목 중 택 1)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선택영역을 통해 최소한 1개의 전문영역을 소지하도록 유도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검정과목의 경우 1급은 5과목으로 동일하고, 2급은 공통필수 6과목, 공통선택 6과목 중 3과목 선택, 전문선택 13과목 중 1과목 선택으로 10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3급은 공통필수 6과목+전문선택 13과목 중 1과목 선택으로 총 7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 이수과정 운영폐지를 보완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선택영역과 관련된 전문연수과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기관, 대학 등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전문연수과정은 최소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에 대해 20시간 이상의 사후 연수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격검정시험 과목이 이론중심으로 운영되어 현장 지도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검정과목의 적합성과 검정과목이 과도하게 많은 점, 전문선택 과목의 검정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 관련 쟁점이 있었다(김경준, 2008). 이러한 논의에 따라 2005년에는 자격검정의 과목 수를 축소하고(1급 5과목, 2급 8과목, 3급 7과목), 2, 3급 전문선택영역을 폐지하였다. 응시자격의 경우 종사 경력을 1년씩 추가하였으며, 사후 연수제도의 경우 연수시간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년부터 대학에서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상기한 2005년의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문선택영역 필기시험 과목 폐지의 경우 전문선택영역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자격연수시간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하고 2-3급 응시자격 요건의 종사 경력을 1년 추가하였으나, 이것이 청소년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한상철 외, 2009). 전문선택영역 필기시험과목 폐지로 인해 청소년지도사의 기량을 함양한다는 상징성이 퇴색되고, 청소년지도사의 조기 진로설정과 현장

실기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적 견인 장치가 상실되었다는 의견이다. 또한 자격검정과목 축소 및 필기시험 면제와 관련하여 필기시험은 전문적 지식의 표준과 평균수준을 유지하며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기시험이 사라지면서 청소년학과 교과목 및 교육내용에 혼란이 있으며,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의 지식 평균수준이 하락된다는 견해이다. 2008년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결과 이전과 비교하여 지식적 품성의 수준이 낮았다는 의견도 나타난 바 있다. 한상철 외(2009)의 연구에서는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 거의 모든 응시자가 통과하며,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질문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급수별 면접의 내용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김경준(2008)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전공과목 이수 시 필기시험 면제의 전제조건은 청소년 관련학과에서 표준교과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실습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나, 필기시험 면제 시행 이후에도 해당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필기시험을 치지 않으면서 현장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취득에 문제가 없어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필기시험의 부활, 현장실습의 의무화 등의 개선 의견이 있었다(모상헌·이진숙, 2014).

청소년지도사 자격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격검정제도 초기에 문제점으로 논의된 과도한 자격제한은 자격취득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의견이 있었다면, 반면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과목을 축소하는 등 지원을 용이하게 할 경우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후연수를 30시간으로 늘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지점이었으며, 보수교육의 의무화가 제안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가가 해야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자율적 운영에 맡길 경우 보수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지정하고 시험 절차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원자의 기본적인 지식 소양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운데, 시험이 면제되면 기본적인 지식수준과 역량이 확인되지 않고 관련 학과의 교육내용이 제각각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행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은 검정과목 학점이수 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이어 자격연수(3박4일 30시간)를 거쳐, 최종 결격사유 조회와 대학(원) 졸업과 검정과목 전공 이수를 확인하는 서류심사 절차를 통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교부하는 형태를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성 증진을 위한 다층적인 요소가 반영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건강가정사 국가자격제도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며,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등이 있다.

건강가정사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함께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직무에 따라 1-3급으로 분류하고 1급은 관리자급, 2급은 중간 실무자급, 3급은 일선 실무자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바 있다(성미애·이현아, 2004). 2005년 실제로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사의 등급이 별도로 없었으며,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여 직무의 성격에 따른 등급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격검정 시험이나 자격관리 기관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건강가정법의 시행 이후 건강가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 2등급으로 구분되는 등급제 도입과 건강가정사 자격관리 기구의 설치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건강가정사 자격관리 기구에서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던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심사 외에 자격증 발급 업무, 승급업무, 직무 및 승급 연수와 교육 등을 수행하여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안이 제시하였다(진미정·손승영·최규련·최선희, 2006). 또한 자격검정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가정사의 자격관리 및 전문성 확보, 건강가정사 수급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건강가정사의 무제한적으로 배출된다면 이로 인해 건강가정사의 자질과 전문성이 평가 절하되고 실제 전문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이다.

건강가정사 양성 교과과정과 관련해서는 건강가정 관련 과목이 최소 과목만 개설되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점, 이론과 실습의 연계가 부족하여 실무능력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영과 연구 등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목 부족 등이 지적되었

다. 건강가정사 자격과목이 사회복지사 자격과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역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건강가정 현장실습이 필수가 아닌 점,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아 정확한 건강가정사의 숫자 파악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박정윤, 2007).

이러한 논의에도 건강가정사 자격제도는 별도의 자격증 발급 기관이 없으며(여성가족부 담당), 등급제 및 자격검정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기존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령에 따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시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과 그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라. 산후도우미 자격 관련 쟁점

정식 명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불리는 산후도우미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조항에 근거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2006년 4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점차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건복지부, 2021)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며,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이다. 교육과정은 신규자 과정은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력자 과정은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자과정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업체 등 민간 유사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자,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 기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산모・ 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한다.

2006년 당시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일자리 지원자 모집 및 교육, 홍보, 도우미 요청 가정과 도우미의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도우미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2주 30시간이 있었으며, 보수교육으로 교육 이수 1년 이상 경과시 1일 7시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보건복지부, 2006). 2007년 교육과정이 40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에는 교육시간이 신규자 교육과 경력자 교육으로 나뉘어 신규자는 80시간, 경력자는 2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경력자의 기준은 '06, '07년 산모도우미교육 이수자, 노인돌보미 신규자 과정 120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기존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07; 보건복지부, 2008).

2008년 10월부터 교육과정과 대상이 모두 변경되어, 신규자 교육의 경우 기본과정 40시간과 심화과정 40시간으로 나누고 기본과정 이수 6개월 이내에 심화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경력자 교육은 대상자를 산모도우미 30시간 교육 이수자로서 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도우미 사업에 참여한 자로 하고,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보수교육이 8시간으로 증가하였다. 교육기관은 각 시·도에서 교육인원, 지역별 접근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경력자 교육과정 자격에 국고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과정 40시간 이수자가 포함되었으며, 2011년에는 돌봄서비스 공통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신규자의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40시간 및 심화과정 40시간(돌봄서비스 공통과정 30시간, 필수실기과정 10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력자의 교육과정은 돌봄서비스 공통과정 30시간, 필수실기과정 10시간으로 구성되었다. 2012년에는 신규자 교육이 기본과정 40시간(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심화과정 40시간(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으로 변화하였으며, 경력자 교육은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으로 변화해 실기 교육이 강화되었다.

2015년에는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분리된 교육과정을 신규자 과정으로 통합하고 교육시간을 60시간으로 조정하였다(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경력자 과정의 경우 대상 범위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최근 3년이내 유사 돌봄분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를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교육시간은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으로 이론 시간이 2시간 증가하였다.

산후도우미 자격 제도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김아름(2020)은 정

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정체성,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자격 관련 문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교육과정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의 한계 등의 쟁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격요건 측면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는 민간 산후도우미와 차이가 없으며, 모든 인력관리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어 공적 영역에서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할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및 과도한 보상금 요구,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결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자격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경우 18세 이상이면서 교육수료증 및 건강진단서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든 채용될 수 있으나, 아이돌보미의 경우 범죄경력,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으며 선발과정에서 면접을 통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면접심사위원으로 보육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담당 공무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부적절한 지원자를 필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후도우미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산후도우미 교육과정의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육시간이 매우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예산의 한계로 인해 현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가 많고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산후도우미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공공성의 전략에 관한 것으로,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 시 현재에는 아이돌보미의 제공이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이 수요가 증가할 경우 민간 기업을 통한 수급으로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는 지점이다. 산후도우미의 경우 시도에서 지정한 민간업체에서 모집, 홍보, 교육, 알선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와 민간 산후도우미의 질적 차이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교과과정의 경우 교과목과 시간을 규정해두었으나, 실제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가 민간이므로 기관에 따른 교육의 편차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기관의 문제는 전문성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가능한 교육과 자격의 부여는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및 관리되어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이 부여되고 있어 부적절한 지원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상황으로, 육아전문관리사 역시 부적격의 경우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존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면접의 시행은 적절한 견제 장치이지만 실제로 면접이 부적격자를 판별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바우처 서비스 요금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요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하여 노동강도 대비 부족한 임금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30). 이로 인해 고능률의 산후도우미는 이탈하고 신규 도우미의 진입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서비스 품질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기관 점검을 실시하나 이는 행정적인 검토에 불과하여 실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산모들에게 서비스 평가 설문 문자를 받는 정도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거나 산후도우미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불성실 기관도 특별한 제제 없이 운영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의 실시는 전담기관에서 담당하며,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부적절한 경우를 어떻게 필터링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침이 (가칭)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제도화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마. 가사근로자법 도입 관련 쟁점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적용이 제외되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만, 민간부문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박선영·구미영·한지영·황의정, 2013).

2011년 국제노동기구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면서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법제도 개편을 위한 시도가 있어왔으며(윤자영, 2011), 가사근로자와 관련한 논의의 주요 쟁점은 법적 보호에 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최저임금법 제3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가사사용인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가사사용인 적용 배제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가사서비스가 비공식영역에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가사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가사근로자와 가사근로이용자의 사인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직업소개소는 알선에 대한 책임만 지고 있어 이용자가 신뢰할만한 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조성혜, 2018). 관련 연구에서 가사서비스 공식화에 대한 FGI 조사 결과(박지순·권순원·정정임, 2015), 가사서비스가 공식화됨으로써 이용자의 차별적 대우가 감소하고, 휴식 및 식사 시간 확보, 복지혜택 증진 등 가사사용인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근로자로서의 사회적 인정과 직업의식 고취, 4대보험 가입을 통한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 비용 부담 완화, 가사사용인의 미래 안전장치 역할 수행, 젊은 층의 가사서비스 시장 참여 확대 및 각종 교육 실행에 따른 가사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가사서비스의 공식화는 4대보험 실시 등에 따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여 이용료가 올라가고, 이로 인한 단기적 이용자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언급되었다. 동 연구에서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 가사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제고되어 가사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사사용인의 고용 증가 및 고용안정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용노동부, 2021). 구체적으로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5. 21).

주요내용으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마련한 법인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사근로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관련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21년 6월 15일 공포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

(2022. 6. 16 시행)에 의하면,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으로(제5조 적용범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업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최소 근로시간(주 15시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과 퇴직금 및 유급휴일과 연차수당을 적용하며, 제시된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과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아동돌봄'을 포함하고 있다. 법에는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결격사유, 준수사항,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의 실시, 시정명령과 인증취소, 벌칙과 양벌규정,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에서 포괄하는 민간육아도우미에 대한 자격관리와 업체에 대한 등록 등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시사한다.

가사근로자 관련 제도의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경우 비공식 영역의 서비스를 공식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신뢰성 및 품질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의 알선을 통한 이용자와의 직접 계약에서 벗어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증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근로환경의 개선은 젊은 가사근로자가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사근로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보험 적용으로 인한 비용 전가에 대한 우려, 전문성 향상 교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점(제4조 정부의 지원에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이 포함되어있음),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 방안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가사근로자의 정의와 범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관련 서비스기관 인증과 서비스 질 관리, 가사근로자 전문성 제고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 및 안착되는지 그 이행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의 측면에서 볼 때 아이돌보미는 이미 공식화되어 있지만, 사적영역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봄 관련 종사자(민간육아도우미)가 재가 아동돌봄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수라는 측면에서 가사근로자 관련 제도의 마련을 고찰하고, 이러한 제도적

도입과 적용이 갖는 함의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유의한 효과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업무에 아동돌봄이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분포한 민간 영역의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살펴보고, 자격제도를 갖춘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도입에 따른 쟁점- 무시험검정 여부 및 양성·자격 체계

국가자격증 제도의 운영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의 수준과 지속적인 자격 유지 및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진다(진미정·손승영·최규련·최선희, 2006).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하는 경우 시험을 통해 일정수준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하지만, 대학 등 교육기관이 국가시험 준비를 위한 기관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관련과목 이수만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할 경우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준과 역량에 따라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의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인증과 질 관리 이슈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전문인력이 보유해야 할 전문성과 자질의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 즉 시험검정 여부에 따라 양성교육과정과 자격관리체계의 운영의 전략이 다르게 되며, 현행 NCS 기반 역량중심 직무평가체계에서는 현장 교육 중심의 내·외부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직무훈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추세로, 현재의 아이돌보미 양성-자격체계에 대한 점검과 발전의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무시험검정으로 시작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단시간에 많은 인력을 확보하였으나, 이후 수급 관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받으며 과도한 인력 배출로 인해 일자리의 포화, 이로 인한 임금하락, 일자리의 질 저하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지속되었다. 이후 국가시험의 도입으로 수급관리에 일정부분 유의한 성과가 있었으나, 시험 시행 이후 일자리의 질과 수급의 해소 및 전문성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2005년 자격제도 개선 당시 대학에서 자격검정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청소년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김경준, 2008), 현장전문가는 무시험전형을 반대하고, 학생 및 교수집단의 경우 현장실습과 연수 등을 동반하는 무시험전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년의 경과 규정을 두고 표준교과과정의 개발과 현장실습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과 실행을 전제로 필기시험을 면제하였으나, 2008년 시험을 면제하는 이행시점 단계에서 해당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기시험을 치루지 않으면서 현장실습을 받지 않고도 자격취득이 가능한 진행과정의 과도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시된 바 있다. 이때 무시험검정을 지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 등 타 자격제도와의 형평성 이슈가 있었다. 따라서 자격제도의 변화로 인한 이행과정의 체계적인 진행 여부가 이후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수급관리 등 운영 전반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가자격 도입 여부 및 자격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을 통해 인력수급과 운영체계 및 전문성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예: 서비스의 질 향상, 역량 강화, 수급 및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의 질과 처우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전문성의 향상과 얼마나 유의한 상관이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험 합격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시험을 통한 변별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시험을 통한 전문성의 향상과 이를 위한 변별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교과목의 선정과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과목에 대한 필기고사가 전문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 제도는 해당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안내하고, 최소한의 지식 소양을 갖추는 견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한상철 외, 2009).

앞서 살펴본 NCS기반 역량중심의 자격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자격시험(필기시험)의 도입 및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여부가 향후 육아전문관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수급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 얼마나 유의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공식 민간분야에서의 돌봄서비스 이용이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가사근로자의 업무범위에도 아동 돌봄과 중첩되는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급 미스매치 해소의 요구가 클 경우,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민간분야 육아도우미에 대한 질 관리와 함께, 공적 아이돌봄서비스 영역과 민간육아도우미 운영의 연계협력 지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공식화는 돌봄의 공공성과 수급 매칭 및 이용기반의 확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제도 도입의 이행과정에 예상되는 수급의 불안과 변동이 크지 않도록 이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자격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2. 국가자격 도입 관련 아이돌보미 및 사업담당자 의견 조사 결과

앞서 살펴본 국내 유관분야 국가자격제도의 쟁점 사항들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안에 관한 주요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광역센터 및 교육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응답자특성

1) 아이돌보미 응답자 특성[39)]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이돌보미의 유효 응답 사례수는 총 2,140명으로, 경상도에서 33.1%로 조사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도 20.1%, 경기도 19.1%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참여는 11.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35.7%, 중소도시 38.8%, 농어촌(읍면지역) 25.5%로 고르게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학력은 고졸 53.4%로 전체 응답의 과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3년제 대졸 21.3%, 4년제 대졸이상 18.8%, 중졸이하 학력 6.5%로 아이돌보미의 학력분포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이하 8.6%, 50대 54.8%, 60대이상 36.6%가 참여하였으며, 아이돌보미 경력별로는 5년이상~10년미만 38.0%, 3~5년미만 경력 20.4%, 1~3년미만 17.5%, 10년이상 16.2%, 1년미만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아이돌보미의 1주 평균 활동시간은 25.5시간으로, 주 활동시간 분포는 20~30시간미만 30.1%, 10~20시간미만 27.2%, 40시간이상 20.1%, 30~40시간미만 16.1%, 10시간미만 6.4%로 조사되었다. 월 급여는 응답 평균 117만 4천원으로, 100만원 미만 36.5%, 100~150만원 미만 30.2%, 150~200만원 미만 19.7%, 200만원 이상 13.6%였으며, 주 평균 근로일수는 5일(60.7%)로 나타났다. 급여수준에 대해 만족 16.4%, 불만족 41.6%로 5점평균 2.7점으로 불만족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9)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탑재된 웹조사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결과로, 주요 변인에 의한 비례표집을 반영한 결과가 아님에 유의가 필요함.

Cf.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N=6,111):
40대이하 10.2%, 50대 55.9%, 60대이상 33.8%; 고졸 56.3%, 2~3년제 대졸 17.4%, 4년제대졸이상 16.2%; 1년미만 경력 10.2%, 1~3년미만 21.5%, 3~5년미만 20.8%, 5~7년미만 22.4%, 7년이상 경력 25.1%; 시간제서비스 활동유형 84.0%, 종일제서비스 15.1%, 특별서비스 0.9%; 아이돌보미 월 소득 50만원 미만 21.0%, 50~80만원 미만 28.1%, 120만원이상 19.0%, 80~100만원미만 18.9%, 100~120만원미만 13.1%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 2018: 146-150).

활동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로는 중복응답 기준 시간제(일반형) 91.6%, 시간제(종합형) 6.4%, 영아종일제 13.4%, 기관연계서비스 5.0%, 질병감염아동지원 2.4%로 나타났다. 현재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업무에 대해서는 만족 64.3%, 불만족 6.8%로 5점평균 3.7점으로 만족 응답이 많았으며, 1주 근로시간을 현재보다 늘리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늘리고싶다 60.6%, 줄이고싶다 2.1%, 현재수준 유지 37.3%로 5점평균 3.7점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고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Ⅳ-2-1〉 아이돌보미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	(수)	구분	%	(수)
전체	100.0	(2,140)			
지역			경력		
서울	11.3	(241)	1년 미만	7.9	(170)
경기	19.1	(409)	1년 이상 ~ 3년 미만	17.5	(374)
충청/강원	16.4	(352)	3년 이상 ~ 5년 미만	20.4	(436)
전라	20.1	(430)	5년 이상 ~ 10년 미만	38.0	(814)
경상	33.1	(708)	10년 이상	16.2	(346)
지역규모			월 급여		
대도시	35.7	(764)	100만원 미만	36.5	(782)
중소도시	38.8	(831)	100만원~150만원미만	30.2	(646)
농어촌	25.5	(545)	150만원~200만원미만	19.7	(422)
연령			200만원 이상	13.6	(290)
40대 이하	8.6	(184)	주 활동시간		
50대	54.8	(1,173)	10시간 미만	6.4	(138)
60대 이상	36.6	(783)	10시간~20시간 미만	27.2	(582)
학력			20시간~30시간 미만	30.1	(645)
중졸이하	6.5	(139)	30시간~40시간 미만	16.1	(344)
고졸	53.4	(1,143)	40시간 이상	20.1	(431)
3년제 대졸	21.3	(456)			
4년제 대졸 이상	18.8	(402)			

2) 사업담당자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업담당자는 총 277명으로, 광역거점센터 담당자 6.9%(19명),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89.5%(248명), 교육담당자 3.6%(10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 8.3%, 경기 11.9%, 충청/강원 21.3%, 전라 22.4%, 경상 36.1%로 나타났다. 담당 지역별로 현재 소속된 아이돌보미는 평균 129명,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평균 122명으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사업담당자의 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수는 20명미만 13.7%, 20~100명미만 29.5%, 100~160명미만 26.7%, 160명이상 30.0%로 응답되었다. 지역 소속 아이돌보미의 월 평균 급여는 134만 6천원으로, 100만원미만 10.5%, 100~200만원미만 82.8%, 200~300만원미만 6.4%, 300~400만원미만 0.4%로 다수의 소속 아이돌보미 월 급여가 1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아이돌보미의 주 평균 근로일수 4.8일, 주 평균 활동시간 30.4시간으로 응답되었다[40].

〈표 Ⅳ-2-2〉 사업담당자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	(수)	구분	%	(수)
전체	100.0	(277)	경력		
지역			1년 미만	20.2	(56)
서울	8.3	(23)	1년 이상 ~ 3년 미만	28.9	(80)
경기	11.9	(33)	3년 이상 ~ 5년 미만	22.0	(61)
충청/강원	21.3	(59)	5년 이상 ~ 10년 미만	20.6	(57)
전라	22.4	(62)	10년 이상	8.3	(23)
경상	36.1	(100)	경상	36.1	(100)
구분					
광역거점센터	6.9	(19)			
서비스제공기관	89.5	(248)			
교육담당자	3.6	(10)			

40) 주 평균 근로일수 응답결과: 3일 3.0%, 4일 22.8%, 5일 67.4%, 6일이상 6.7%
주 평균 근로시간 응답결과: 30시간미만 55.8%, 30~40시간미만 16.4%, 40~50시간미만 18.0%, 50시간이상 9.7%

나.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1)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양성과정/자격체계 개선 방안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교육과정(9개 항목)과 아이돌보미 자격취득/유지(5개 항목)에 관해 항목별 필요성을 5점척도로 질문하였다. 이어서 보육교사/요양보호사와 같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을 도입할 경우 필요한 세부내용(12개 항목)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우선 현행 아이돌보미 양성과정과 자격취득 및 유지에 관한 개선 방안을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동권리/아동학대예방' 관련 교과목 강화와 '인성' 관련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 또는 강화, '채용 시 면접심사' 실시 강화에 대한 긍정응답이 70%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긍정응답은 상대적으로 적고, 반면 양성/보수교육의 '질을 보강하는 것'에 대한 긍정응답은 50~60%대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제시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70~90%의 높은 긍정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아이돌보미와 마찬가지로) '아동권리/아동학대예방' 관련 교과목 강화와 '인성' 관련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 또는 강화에 대한 긍정응답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양성교육 질 보강'(91.7%)'과 '실기교육 강화'(86.6%), '인적성검사 강화'(85.6%), '보수교육의 질 보강'(87.7%)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대면 교육과목 증대'와 '양성/보수 교육시간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응답이 적었다,

이로써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아이돌봄서비스이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아이돌보미와 사업담당자 공통적으로 '아동권리/아동학대예방' 관련 교과목 강화와 '인성' 관련 교과목 필수 지정 강화, 그리고 '양성/보수교육' 시간보다 내용과 질적인 보강, '인적성검사'의 실시 강화'의 대한 긍정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3〉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양성과정/자격체계 개선사항 필요도(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전문성 및 질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아이돌보미 (N=2,140)		사업담당자 (N=277)	
	④+⑤ 필요함	5점평균	④+⑤ 필요함	5점평균
양성과정				
1) 인성관련 교과목 필수 또는 강화	71.8	3.8↑	94.9	4.5↑

전문성 및 질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아이돌보미 (N=2,140)		사업담당자 (N=277)	
	④+⑤ 필요함	5점평균	④+⑤ 필요함	5점평균
2) 아동권리/아동학대예방 교과목 강화	74.1	3.9↑	93.1	4.5↑
3) 대면수업 과목 증대	35.6	3.2	71.7	4.0
4) 비대면 교육과목 증대	34.0	3.2	27.8	2.9↓
5) 실기 교과교육 강화	41.3	3.3	86.6	4.4↑
6) 현장실습 강화	36.5	3.2	74.7	4.0
7) 양성교육 총 시간 증대	17.9	2.8↓	41.9	3.4
8) 양성교육 질 보강	65.0	3.7↑	91.7	4.4↑
9) 양성교육과정내 교과목시험 도입	21.2	2.7↓	70.0	4.0
자격 취득/유지				
1) 인적성검사 실시/적용 강화	65.6	3.7↑	85.6	4.3↑
2) 채용시 면접심사 실시/적용 강화	67.4	3.8↑	78.7	4.1
3) 국가자격시험 도입	**50.0**	3.4	**71.8**	4.0
4) 현직 보수교육 시간 증대	16.2	2.8↓	42.6	3.5
5) 현직 보수교육 질 보강	57.3	3.6	87.7	4.3↑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자격시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이돌보미 50.0%(3.4점), 사업담당자 71.8%(4.0점)으로 긍정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사업담당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

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필요성

보육교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같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필요함 62.7%, 보통 22.1%, 필요하지않음 15.3%로 긍정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3.6점/5점평균). 하위특성별로는 농어촌지역, 아이돌보미 연령이 젊을수록, 고졸이하 학력, 5년미만의 활동 경력을 가진 경우 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필요성-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①+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 함	⑤ 매우 필요 함	④+⑤ 필요함	계	평균	사례수 (명)
아이돌보미	3.3	12.0	15.3	22.1	43.6	19.1	**62.7**	100.0	**3.6**	(2,140)
지역2										

구분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①+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 함	⑤ 매우 필요 함	④+⑤ 필요함	계	평균	사례수 (명)
대도시	3.7	13.7	17.4	22.3	42.1	18.2	60.3	100.0	3.6	(764)
중소도시	3.5	13.1	16.6	22.3	43.4	17.7	61.1	100.0	3.6	(831)
농어촌	2.4	7.9	10.3	21.5	45.7	22.6	68.3	100.0	3.8	(545)
X^2(df)/F	17.913(8)*								7.8***(a)	
연령										
40대 이하	0.5	7.1	7.6	25.0	42.4	25.0	67.4	100.0	3.8	(184)
50대	3.6	11.5	15.1	21.0	43.1	20.8	63.9	100.0	3.7	(1,173)
60대 이상	3.4	13.9	17.4	23.0	44.4	15.2	59.6	100.0	3.5	(783)
X^2(df)/F	24.244(8)**								7.5***(a)	
학력										
중졸이하	2.2	16.5	18.7	25.9	39.6	15.8	55.4	100.0	3.5	(139)
고졸	3.2	14.5	17.8	23.2	42.7	16.4	59.1	100.0	3.5	(1,143)
3년제대졸	3.1	7.5	10.5	21.3	46.5	21.7	68.2	100.0	3.8	(456)
4년제대졸이상	4.0	8.5	12.4	18.4	44.0	25.1	69.2	100.0	3.8	(402)
X^2(df)/F	41.992(12)***								8.8***(a)	
경력										
1년미만	1.8	4.7	6.5	25.9	44.7	22.9	67.6	100.0	3.8	(170)
1년-3년미만	4.3	5.6	9.9	21.9	46.8	21.4	68.2	100.0	3.8	(374)
3년~5년미만	3.2	10.1	13.3	17.9	46.1	22.7	68.8	100.0	3.8	(436)
5년~10년미만	2.9	16.1	19.0	22.7	42.4	15.8	58.2	100.0	3.5	(814)
10년이상	3.8	15.3	19.1	24.0	39.0	17.9	56.9	100.0	3.5	(346)
X^2(df)/F	57.801(16)***								7.8***(a)	
사업담당자	1.8	5.8	7.6	18.8	37.9	35.7	73.6	100.0	**4.0**	(277)

동일한 질문에 대해 사업담당자는 국가자격이 필요함 73.6%, 보통 18.8%, 필요하지않음 7.6%로 아이돌보미에 비해 긍정응답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4.0점/5점평균).

2) 국가자격 도입 시 자격체계 관련 개선 필요성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을 도입할 경우 양성 및 자격 관련하여 다음의 12개 항목별로 필요성을 5점척도로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채용 시 면접심사'와 '인적성검사'의 실시 및 적용이 긍정응답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이돌보미 '활동경력과 이력관리(DB구축)'와 '현장실습' 및 '실기교육' 내실화, 아이돌보미 '직무특성의 구분'(예: 신생아, 영아종일, 초등 등하원돌봄, 환아보호 등)에 대한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격취득 연령 제한에 대한 긍정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마찬가지로) '실기교육', '인적성검사' 및 '채용 시 면접심사'의 실시와 적용, 아이돌보미 '활동경력과 이력관리(DB구축)' 그리고 '자격취득 연령 제한'에 대한 긍정응답이 80~90%대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제시된 항목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자격취득 시 '최저학력 기준'(50.2%)과 '1-2급 자격체계 도입'(50.5%)에 대한 긍정의견이 과반이상으로 나타났다. 최저학력 기준과 자격급 도입에 대해서는 제시된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긍정응답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Ⅳ-2-5〉 국가자격 도입 시 항목별 필요도(12개)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국가자격제 도입 시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④+⑤ 필요함	5점 평균	④+⑤ 필요함	5점 평균
1	1) 인적성검사 실시 및 적용*	76.6↑	3.9↑	90.6↑	4.4
2	2) 채용시 면접심사 실시 및 적용*	77.3↑	3.9↑	89.9↑	4.3
3	이론수업 중 교과목시험(학과시험) 실시	38.5	3.2	82.7	4.2
4	이론수업 중 실기관련 교육 강화	54.0	3.5	91.7↑	4.5
5	현장실습 내실화	55.8	3.6	88.1↑	4.3
6	3)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시험 도입*	53.5	3.5	77.3	4.2
7	아이돌보미 1-2급 자격체계 도입	40.6	3.2	50.5	3.5
8	아이돌보미 직무특성에 따른 구분,특화(신생아, 영아종일, 등하원, 환아보호등)	53.2	3.5	73.7	4.0
9	자격취득에 대한 연령 제한	32.5	2.9↓	84.5↑	4.5
10	자격취득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 마련	40.2	3.1	50.2	3.4
11	자격갱신 절차 마련	34.1	30.	82.7	4.2
12	아이돌보미 활동경력 및 이력관리(DB구축)	63.8↑	3.7	88.8↑	4.3

주: * -1), 2), 6) 3개항목은 〈표 Ⅳ-2-1〉 과 동일항목임.

한편, 앞서 살펴본 아이돌보미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을 위한 개선방안에서 응답한 인적성검사(65.6%), 면접검사(67.4%), 국가자격시험 도입(50.0%)에 대한 '필요성' 응답과 비교하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시 동일한 3개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긍정응답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났다(각 76.6%, 77.3%, 53.5%). 국가자격 도입 시 보다 강화된 자격취득의 과정이 체계화 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가) 국가자격 도입 시 자격취득 연령제한 및 최저학력 기준

구체적으로 국가자격 취득 시 '연령제한'에 대해 아이돌보미는 평균 62.0세, 사업담당자는 자격취득 연령제한 평균 61.6세로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국가자격 취득 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경우 아이돌보미는 중졸 14.6%, 고졸 53.1%,

2-3년제 대졸 7.5%, 4년제 대졸 1.0%, 학력제한 필요없음 23.8%로 응답하였고, 사업담당자는 중졸 20.9%, 고졸 46.6%, 2-3년제 대졸 4.0%, 학력제한 필요없음 28.5%로 아이돌보미에 비해 학력기준에 대해 보다 유연한 경향을 보였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인성적 자질의 중요성과 국가시험 도입에 따른 전문성 확인의 제도적 장치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 응답으로 보인다.

〈표 Ⅳ-2-6〉 국가자격 취득 시 연령제한

단위: %(명), 세

구분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계(수)	평균
아이돌보미	0.7	2.8	96.4	100.0(2140)	62.0
사업담당자	0.4	1.1	98.6	100.0(277)	61.6

〈표 Ⅳ-2-7〉 국가자격 취득 시 최저학력 기준

구분	중졸이상	고졸이상	2~3년제 대졸이상	4년제 대졸이상	학력제한 필요없음	계(수)
아이돌보미	14.6	53.1	7.5	1.0	23.8	100.0(2140)
사업담당자	20.9	46.6	4.0	-	28.5	100.0(277)

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시 자격갱신 여부 및 갱신연한

국가자격 취득 시 자격갱신 절차와 자격갱신 연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국가자격 갱신 절차에 대해 필요함 34.6%, 필요하지않음 65.4%으로 응답하였으며, 갱신기간은 평균 5.2년으로 나타났다.

사업담당자는 국가자격 갱신 절차에 대해 필요함 82.3%, 필요하지않음 17.7%, 갱신기간은 평균 3.8년으로, 아이돌보미에 비해 자격갱신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의견이 우세하였으며 갱신연한에 대해서도 보다 짧은 주기를 응답하였다(5년미만 61.4%). 사업담당자의 경우 국가자격 도입 시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보미의 지속적인 활동과 이에 따른 질 관리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반영한 응답으로 보인다.

〈표 Ⅳ-2-8〉 적절한 국가자격 갱신절차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갱신해야 함	갱신 필요없음	계
아이돌보미	34.6	65.4	100.0(2140)
사업담당자	82.3	17.7	100.0(277)

〈표 Ⅳ-2-9〉 적절한 국가자격 갱신절차 기간

단위: %(명), 년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25년미만	계(수)	평균
아이돌보미	31.4	50.5	17.6	0.4	0.1	100.0(740)	5.2
사업담당자	61.4	32.9	5.7	-	-	100.0(277)	3.8

3) 국가자격 도입 시 적절한 방안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현행유지 44.3%, 양성과정 강화 25.9%, 국가시험 26.6%, 기타 1.3%로 나타났다. 사업담당자는 현재유지 15.5%, 양성과정 강화 21.3%, 국가시험 61.7%로 응답하여 '국가시험'을 통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이 우세하였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양성교육'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위특성별로 대도시 지역, 40대이하, 1~3년미만 경력, 활동시간이 많을수록 양성과정 강화에 대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현행유지'의 경우, 충청/강원지역, 중소도시, 60대이상, 중졸이하, 경력 5년이상, 활동시간 10시간미만 아이돌보미 그룹에서, '국가시험 도입'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5년미만 경력, 그리고 사업담당자의 경우 소속 아이돌보미 수가 많을수록 국가시험 도입에 대한 긍정의견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Ⅳ-2-10〉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 시 적절한 방식

단위: %(명)

구분	현행유지	국가시험 도입	양성과정 강화	기타	계(수)
아이돌보미	44.3	28.6	25.9	1.3	100.0(2,140)
사업담당자	15.5	61.7	21.3	1.4	100.0(277)

주. 현재유지-현재처럼 양성교육과정(이론/실습)과 신원조회/인적성검사/면접 후 국가자격 부여
국가시험 도입-양성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시험 합격 시 국가자격 부여
양성과정 강화 - 양성교육 교과목 수와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보강, 이수함.

가) 양성교육 시간 증가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양성교육 시간을 현재보다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양성교육 시간 증가 여부에 대해 '교과수업'과 '현장실습' 시간으로 나누어 오픈응답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과수업'은 아이돌보미 응답 평균 약 24.3시간, 사업담당자 평균 약 24.8시간을 현행 80시간에 더해 추가로 늘리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현장실습'의 경우 현행 2~20시간

에 더해 아이돌보미 응답 평균 13.7시간, 사업담당자 평균 17.3시간으로 응답되었다.

이로써 국가자격 도입 시 양성과정 교과교육의 시수는 약 20시간이상, 현장실습 시간은 약 10시간이상 확대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11〉 국가자격 도입 시 늘려야 할 교과수업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0시간 미만	10~20 시간 미만	20~30 시간 미만	30~40 시간 미만	40~50 시간 미만	50~60 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평균
교과수업 (이론+실기)	아이돌보미	57.1	4.2	12.2	0.6	2.9	0.9	22.0	**24.3**
	사업담당자	45.1	3.6	24.2	0.7	7.2	1.1	18.1	**24.8**
현장실습	아이돌보미	52.3	11.6	20.6	3.7	4.6	0.9	6.3	**13.7**
	사업담당자	45.1	14.1	21.3	2.9	4.0	0.7	11.9	**17.3**

나) 양성교육 시간 구성 전반

국가자격의 도입을 위해 교과수업(이론)-교과수업(실시)-현장실습의 3개과정 교육시간 구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응답 평균 교과수업(이론) 63.4시간, 교과수업(실기) 33.7시간, 현장실습 27시간으로 응답하였다. 사업담당자는 교과수업(이론) 64.1시간, 교과수업(실기) 44.5시간, 현장실습 34.7시간으로 응답하여, 아이돌보미에 비해 긴 교육시간의 구성을 응답하였다. 이론수업 외 실기수업과 현장실습의 보강에 대해 비중있게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12〉 국가자격 도입 시 적절한 교육시간 구성 - 교과(이론),교과(실기),현장실습

단위: %(명), 시간

구분		1~10시간 미만	10~20 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 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평균
교과수업 (이론)	아이돌보미	1.7	1.1	5.9	5.1	16.0	6.8	63.4	**63.4**
	사업담당자	0.4	-	5.6	7.4	14.7	9.1	62.8	**64.1**
교과수업 (실기)	아이돌보미	2.8	10.6	35.9	10.4	21.1	5.4	13.8	**33.7**
	사업담당자	0.9	6.1	20.8	6.9	26.8	12.1	26.4	**44.5**
현장실습	아이돌보미	4.8	15.3	44.3	11.4	14.2	3.2	6.8	**27.0**
	사업담당자	1.7	9.5	42.4	8.7	16.5	5.6	15.6	**34.7**

제시된 응답 평균을 합친 총 양성교육시간을 살펴보면 아이돌보미 응답 평균 124.1시간, 사업담당자 평균 143.3시간으로, 사업담당자의 교육시간이 약 20시간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국가자격 도입 시 취득의향 및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

1) 국가자격 도입방식별 기존 아이돌보미 취득의향 및 적절성 의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취득 시 다음에 제시된 방식(5개)에 대한 '취득의향'을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기존 아이돌보미 자격으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긍정응답이 8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이돌보미로서 실제 활동경력을 고려하여 일정자격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자격취득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0.5%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존 아이돌보미 모두에게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국가자격 부여를 하는 경우 취득의향이 있다 67.3%, 확대/강화된 양성교육과정을 추가 이수한 경우 부여하면 취득의향이 있다 66.0%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취득의향이 있다는 51.4%로 국가시험 응시에 대해 과반의 긍정응답을 보였다. 제시된 5개 방식 중 상대적으로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Ⅳ-2-13〉 국가자격 도입 및 이행 방식별 취득의향과 적절성 의견

항 목	아이돌보미 의향있음	사업담당자 적절함
1. 기존 아이돌보미 모두에게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국가자격을 부여	67.3	16.6
2. 실제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부여	**80.5**	**72.6**
3. 확대/강화된 교육과정을 추가 이수한 아이돌보미에게 부여	66.0	**81.6**
4. 새로 도입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아이돌보미에게 부여	51.4	69.0
5. 새로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기존 아이돌보미 자격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84.6**	40.4
6. 기존 아이돌보미가 새로 도입된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환기간을 일정기간 충분히 부여	-	**87.4**
7. 국가자격 취득 후,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체결 없이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가능	-	31.0

동일한 국가자격 취득방식(5개)에 대해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존 아이돌보미에게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적절성' 여부를 질문하였다.

사업담당자는 확대/강화된 양성교육과정을 추가 이수한 경우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8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이돌보미 실제 활동경력을 고려하여 일정자격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72.6%로 높게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도

69.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아이돌보미가 새로 도입되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격전환 기간을 일정기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87.4%로 나타났으며, 국가자격 취득 후 아이돌보미로서 근로계약 체결 없이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 가능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31.0%로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담당자의 경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과 이행 방식에서 확대강화 된 양성과정 이수와 국가시험제도, 아이돌보미 개별 활동경력에 대한 산정 고려와 충분한 자격전환 기간의 부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보미의 민간육아도우미로서 활동에 대한 찬성의견은 약 31%로 나타났다.

신규 국가자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으로 얼마동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사업담당자의 경우 5년미만 96.3%, 5년이상 3.7%로 전체 응답 평균 1.5년으로 나타났다.

2) 국가자격 도입방식(양성과정, 국가시험)별 취득의향이 없는 이유

아이돌보미에게 첫째, 양성교육과정 추가 이수를 통해 국가자격을 취득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N=727)를 중복응답으로 선택하게 한 결과, '교육을 이수할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되면 일하기 부담되어서' 31.4%,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가 번거로움' 24.6%, '교육과정이 힘들어서(교육내용이 어려워서)' 23.9%, 교육과정이수/자격증발급 '비용이 들어서' 18.6%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시험 응시를 통해 국가자격을 취득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N= 1,041),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73.8%, '국가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8.4%, '국가시험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어서' 7.4%, 기타 10.5%로 나타났다.

사업담당자에게 첫째, 양성교육과정 추가 이수를 통한 국가자격 취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별도의 기타 응답(41.2%) 외 아이돌보미 교육이수 시간 부족(33.3%), 자격요건이 강화되면 일하기 부담됨(27.5%), 자격증 신청·교부 절차의 번거로움 및 교육과정 이수 비용의 부담이 각 13.7%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시험 응시를 통한 국가자격 취득이 부적절한 이유로는 기타 응답(58.3%) 외, 국가시험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22.3%,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충분함 20.4%, 아이돌보미 국가시험 준비시간 부족 15.5%로 응답되었다.

〈표 Ⅳ-2-14〉 국가시자격 도입방식별 취득의향이 없는 이유(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단위: %

구분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양성교육과정 추가 이수를 통해 국가자격 취득의향 없음:		
1. 교육을 이수할 시간이 부족해서	43.1	33.3
2. 자격요건이 강화되면 일하기 부담되어서	31.4	27.5
3.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이 번거로워서	24.6	13.7
4. 교육과정이 힘들어서(교육내용이 어려워서 등)	23.9	23.5
5. 기타	19.9	41.2
6.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12.0	13.7
7. 자격증 신청 및 발부에 비용이 들어서	6.6	7.8
국가시험 응시를 통해 국가자격 취득의향 없음:		
1.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73.8	20.4
2. 기타	10.5	58.3
3. 국가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8.4	15.5
4. 국가시험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어서	7.4	22.3

3) 국가시험 난이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난이도 관련하여 첫째, 시험 합격 기준에 대해 사업담당자에게 질문한 결과 과목당 60점이상/전체평균 60점이상에 대한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과목당 40점이상/전체평균 60점이상 26.0%, 과목당 60점이상/전체평균 80점이상이 19.9%로 나타났다.

〈표 Ⅳ-2-15〉 국가시험 합격기준 및 난이도-사업담당자

단위: %

구분	사업담당자
시험 합격기준	
과목당 60점 이상/전체 평균 80점 이상 시 합격	19.9
과목당 60점 이상/전체 평균 60점 이상 시 합격	51.3
과목당 40점 이상/전체 평균 60점 이상 시 합격	26.0
과목당 40점 이상/전체 평균 40점 이상 시 합격	2.2
시험 난이도	
고연령/시간제 위주의 아이돌보미 활동 현황 및 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	54.2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시험으로, 이에 합당한 난이도를 갖추도록 함	44.8

둘째,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는 고연령/시간제 위주의 아이돌보미 활동 현황과 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서 '이에 합당한 난이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54.2%, 44.3%로 나타나, 상호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아이돌보미 운영 현황과 합격률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향성에 대한 찬성의견이 약 10%p 더 많았다.

4) 유관 자격증[41] 교육시간 면제에 대한 의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양성교육 시간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을 5점척도로 질문한 결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적절함 32.7%, 보통 30.1%, 부적절 37.2%로 평균 2.9점으로 나타났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적절함 21.7%, 보통 26.7%, 부적절 51.6%로 평균 2.5점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Ⅳ-2-16〉 유관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시간 면제에 대한 적절성

단위: 점, %(명)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평균	계(수)
아이돌보미	9.7	27.6	30.1	24.5	8.1	2.9	100.0(2,140)
사업담당자	19.5	32.1	26.7	18.1	3.6	2.5	100.0 (277)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자격증 소지자의 양성교육 시간 면제 및 최소 필수교육/현장실습 이수에 대해 어떠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이론교육 80시간을 모두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아이돌보미 59.2%, 사업담당자 66.4%로 사업담당자의 교육시간 면제에 대한 부적절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론교육 시간 이수'에 대한 의견은 아이돌보미 62.6%, 사업담당자 43.4%로, 현행과 같은 수준의 교육시간 면제 유지에 대한 의견은 각 3.4%, 0.7%로 적게 나타났다.

〈표 Ⅳ-2-17〉 유관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시간 면제에 대한 조정 의견

단위: %

항 목	아이돌보미 (n=797)	사업담당자 (N=143)
양성교육(이론교육 80시간) 이수 필요	59.2	66.4
모든 교육은 아니지만 일부 이론교육(인권,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등) 이수 필요	62.6	43.4
조정 필요하지 않음 - 현행대로 양성교육(이론교육) 이수 불필요	3.4	0.7
잘 모름	2.6	0.7

41) 양성교육 이론과정(80시간)을 받지 않아도 활동이 가능한 자격자(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안전관리 교육 등 필수교육(2~4시간)과 최소 현장실습(2~20시간, 자체판단)을 이수 후 활동 가능(2021 아이돌봄지원법 안내 76p)
- 관련 자격증: ①「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민간육아도우미 활동경험 및 향후 활동의향

본 조사에 참여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 19.6%, 없다 80.4%로 나타났다.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경험은 농어촌지역,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현재 월 활동시간 40시간이상/월급여 200만원이상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Ⅳ-2-18〉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수)
전체	19.6	80.4	100.0(2,140)
지역규모			
대도시	17.7	82.3	100.0(764)
중소도시	18.4	81.6	100.0(831)
농어촌	24.2	75.8	100.0(545)
X^2(df)/F	9.922(2)**		
연령			
40대 이하	17.4	82.6	100.0(184)
50대	18.5	81.5	100.0(1,173)
60대 이상	21.8	78.2	100.0(783)
X^2(df)/F	3.957(2)		
학력			
중졸이하	32.4	67.6	100.0(139)
고졸	20.8	79.2	100.0(1,143)
3년제 대졸	18.4	81.6	100.0(456)
4년제 대졸 이상	13.2	86.8	100.0(402)
X^2(df)/F	26.353(3)***		
월 급여			
100만원미만	18.9	81.1	100.0(782)
100만원~150만원미만	18.7	81.3	100.0(646)
150만원~200만원미만	19.2	80.8	100.0(422)
200만원이상	24.1	75.9	100.0(290)
X^2(df)/F	4.364(3)		
주 활동시간			
10시간미만	21.0	79.0	100.0(138)
10시간~20시간미만	19.2	80.8	100.0(582)
20시간~30시간미만	17.1	82.9	100.0(645)
30시간~40시간미만	18.9	81.1	100.0(344)
40시간이상	24.1	75.9	100.0(431)
X^2(df)/F	8.586(4)		

향후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의향에 대해서는 있음 20.9%, 보통 20.5%, 없음 58.6%로 평균 2.5점으로 응답되었다.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의향은 농어촌지역, 40대이하, 학력이 낮을수록, 아이돌보미 활동경력이 적을수록, 현재 월급여 100만원미만과 200만원이상 그룹에서, 주 활동시간 10시간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9〉 향후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의향 유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있음	계 (수)		평균
전체	18.6	40.0	20.5	18.6	2.3	100.0	(2,140)	2.5
지역규모								
대도시	21.2	40.2	18.8	18.2	1.6	100.0	(764)	2.4
중소도시	18.7	41.5	20.1	17.1	2.6	100.0	(831)	2.4
농어촌	15.0	37.2	23.5	21.3	2.9	100.0	(545)	2.6
X^2(df)/F	17.744(8)*							6.6**
연령								
40대 이하	17.9	26.1	31.5	20.1	4.3	100.0	(184)	2.7
50대	18.2	42.5	20.5	16.5	2.2	100.0	(1,173)	2.4
60대 이상	19.4	39.5	17.9	21.2	2.0	100.0	(783)	2.5
X^2(df)/F	33.965(8)***							4.4*(a)
학력								
중졸이하	16.5	35.3	20.9	24.5	2.9	100.0	(139)	2.6
고졸	18.2	41.6	19.0	19.2	2.0	100.0	(1,143)	2.5
3년제 대졸	19.3	37.1	23.9	16.9	2.9	100.0	(456)	2.5
4년제 대졸 이상	19.9	40.0	20.9	16.7	2.5	100.0	(402)	2.4
X^2(df)/F	12.871(12)							1.3
경력								
1년미만	15.3	29.4	28.8	22.9	3.5	100.0	(170)	2.7
1년~3년미만	16.3	34.8	24.3	21.9	2.7	100.0	(374)	2.6
3년~5년미만	19.5	40.6	24.3	13.5	2.1	100.0	(436)	2.4
5년~10년미만	19.0	44.3	16.7	17.4	2.5	100.0	(814)	2.4
10년이상	20.8	39.6	16.5	21.7	1.4	100.0	(346)	2.4
X^2(df)/F	49.341(16)***							5.1***
월 급여								
100만원미만	16.5	38.2	21.7	20.3	3.2	100.0	(782)	2.6
100만원~150만원미만	20.1	39.3	20.3	18.3	2.0	100.0	(646)	2.4
150만원~200만원미만	21.8	42.4	19.7	14.9	1.2	100.0	(422)	2.3
200만원이상	16.6	42.4	19.0	19.7	2.4	100.0	(290)	2.5
X^2(df)/F	18.142(12)							5.1**(a)

구분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있음	계 (수)		평균
주 활동시간								
10시간미만	13.0	33.3	23.2	26.1	4.3	100.0	(138)	2.8
10시간~20시간미만	16.8	40.0	18.2	22.3	2.6	100.0	(582)	2.5
20시간~30시간미만	18.1	40.9	22.6	16.1	2.2	100.0	(645)	2.4
30시간~40시간미만	23.3	39.2	20.6	15.1	1.7	100.0	(344)	2.3
40시간이상	20.0	41.1	19.5	17.4	2.1	100.0	(431)	2.4
X^2(df)/F	29.719(16)*							5.1***

마. 국가자격 도입 효과 및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1) 국가자격 도입 효과(도움정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이 다음 항목(13개)별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이 (아이돌보미 응답 기준) 약 60% 이상으로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부정응답(약 10%미만)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아이돌보미에 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자긍심의 향상'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제고'에 대한 긍정응답이 각 75.3%, 71.8%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담당자의 경우에도 '자긍심의 향상'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제고', 그리고 '아이돌보미 역량과 전문성 강화',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긍정응답이 많았다.

한편 아이돌보미와 사업담당자 공통으로 서비스 미스매치의 해소와 아이돌보미 양성규모 증가의 양적측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각 49.3%, 54.5%)이 다른 긍정적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Ⅳ-2-20〉 국가자격제도 도입시 도움정도

항 목	아이돌보미			평균	
	①+② 도움되지 않음	③ 보통	④+⑤ 도움됨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아이돌보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11.0	24.6	64.4	3.8	4.4↑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	8.1	26.3	65.6	3.8	4.4↑
아동학대의 예방	8.5	23.7	67.9	3.8	4.1
아이돌보미 이용 수요 증가(부모이용확대)	8.0	29.2	62.8	3.8	4.1
서비스 미스매치 해소	9.6	41.1	49.3	3.5↓	3.6↓
아이돌보미 자긍심 향상	5.5	19.3	75.3	4.0↑	4.5↑
아이돌보미 업무만족도 향상	8.3	28.3	63.4	3.8	4.0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5.5	22.6	71.9	4.0↑	4.4↑
아이돌보미 일자리의 질/안정성 향상	8.4	26.3	65.4	3.8	4.1
아이돌보미 급여 및 처우 개선	7.9	23.6	68.5	3.9	3.9
아이돌보미 양성규모 증가	10.1	35.4	54.5	3.6↓	3.6↓
아이돌보미 활동 이력/경력 관리 체계 향상	5.9	26.3	67.8	3.9	4.2
아이돌봄사업의 공공성 확대	5.7	27.1	67.2	3.9	4.2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으로 급여 및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응답은 아이돌보미 68.5%, 사업담당자 68.2%로 5점척도 각 3.9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급여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필요성)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국가자격 도입 시 명칭변경의 필요성 및 육아전문관리사에 대한 의견

국가자격 도입 시, 아이돌보미에 대한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아이돌보미 44.5%, 사업담당자 51.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약 반반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위특성별로는 아이돌보미 연령/경력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국가자격 도입 방식에 대해 국가시험 도입에 찬성의견을 보인 경우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Ⅳ-2-21〉 국가자격 도입 시 아이돌보미 명칭변경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계 (수)
아이돌보미	44.5	55.5	100.0 (2,140)
연령			
40대이하	54.3	45.7	100.0 (184)
50대	46.9	53.1	100.0 (1,173)
60대이상	38.6	61.4	100.0 (783)
X^2(df)/F	21.085(2)***		
학력			
중졸이하	25.2	74.8	100.0 (139)
고졸	38.7	61.3	100.0 (1,143)
3년제대졸	52.4	47.6	100.0 (456)
4년제대졸 이상	58.7	41.3	100.0 (402)
X^2(df)/F	81.152(3)***		
경력			
1년미만	56.5	43.5	100.0 (170)
1년~3년미만	50.5	49.5	100.0 (374)
3년~5년미만	43.8	56.2	100.0 (436)
5년~10년미만	41.6	58.4	100.0 (814)
10년이상	39.6	60.4	100.0 (346)
X^2(df)/F	21.518(4)***		
자격제도			
현재유지	36.1	63.9	100.0 (947)
양성강화	46.4	53.6	100.0 (554)
국가시험	55.8	44.2	100.0 (611)
기타	42.9	57.1	100.0 (28)
X^2(df)/F	59.411(2)***		
사업담당자	51.3	48.7	100.0 (277)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에 대한 명칭을 '육아전문관리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적절 55.3%, 보통 35.5%, 부적절 9.2%(평균 3.6점)으로 응답되었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적절 48.0%, 보통 36.8%, 부적절 15.2%(평균 3.4점)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2〉 국가자격 명칭 육아전문관리사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 (수)	평균
아이돌보미	2.2	7.0	35.5	37.9	17.3	100.0 (2,140)	3.6
경력							
1년 미만	0.6	3.5	27.6	43.5	24.7	100.0 (170)	3.9
1년~3년미만	2.4	6.4	32.1	39.6	19.5	100.0 (374)	3.7
3년~5년미만	2.5	8.5	33.7	40.8	14.4	100.0 (436)	3.6
5년~10년미만	2.0	7.2	38.8	34.4	17.6	100.0 (814)	3.6
10년 이상	3.2	6.6	37.6	38.2	14.5	100.0 (346)	3.5
X^2(df)/F	31.506(16)*						5.1***
자격제도							
현재유지	2.5	7.3	41.7	34.6	13.8	100.0 (947)	3.5
양성강화	1.4	7.4	31.2	43.5	16.4	100.0 (554)	3.7
국가시험	1.6	5.6	29.8	39.1	23.9	100.0 (611)	3.8
기타	21.4	17.9	35.7	14.3	10.7	100.0 (28)	2.8
X^2(df)/F	52.719(8)***						18.4***
사업담당자	4.3	10.8	36.8	37.5	10.5	100.0 (277)	3.4

아이돌보미의 경우 활동경력이 적을수록, 국가자격 도입 시 국가시험 실시에 대해 찬성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 명칭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바. 국가자격 도입 시 양성 및 보수교육 교과목 확대/추가 의견

1) 양성교육 과목에 대한 확대/추가 의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80시간)에 대해 국가자격 제도 도입 시 교육시간의 확대와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과목 구성(안)에 대해 체크하게 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과목 교육시간의 확대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는 긍정의견이 아이돌보미의 경우 30%대 내외, 사업담당자 60%대 내외로 약 2:1의 비율로 확대/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본소양교육(32시간) 중에서는 아이돌보미와 사업담당자 공통으로 아동안전 및 건강관리에 대한 사례와 토론,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방법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추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아동관찰 및 부모면담 방법에 대한 수업시간 확대 의견도 많았다.

아동권리이해 수업에 대한 확대/추가 필요 응답은 제시된 과목 중 아이돌보미/사업담당자 공통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해에 대한 확대/추가 필요 의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2-23〉 국가자격 도입 시 확대/추가가 필요한 양성교과목①-기본소양교육

기본소양교육(총 교육시수 32시간) 중 확대/추가	확대/추가 '필요함'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아이돌봄 직무의 이해 과목		
1.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이해 (1시간)	21.1↓	61.7
2. 아이돌보미의 직업윤리와 역할 및 자질 (3시간)	34.3	63.9
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족의 이해 (2시간)	34.7	62.8
4. 아동관찰 및 부모면담 방법 (4시간)	35.9	67.9↑
5. 실습오리엔테이션 (신규 2시간 추가)	36.5	65.0
아동안전·건강관리 과목		
6. 아동의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5시간)	37.8	56.7
7. 아동의 건강관리 (3시간)	32.8	56.0
8. 성인지 교육 (2시간)	33.2	54.5
9. 아동안전, 건강관리 사례 및 토론 (2시간)	42.2↑	67.5↑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교육 과목		
10. 아동권리의 이해 (현행 2시간)	27.0↓	49.8↓
11. 아동학대 예방교육(1): 판례를 통한 아동학대 이해(2시간)	36.0	56.0
12. 아동학대 예방교육(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방법(1시간)	43.1↑	67.5↑
13. 아동학대 예방교육(3):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방법(1시간)	35.8	63.9
14.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사례 및 토론(2시간)	33.5	60.6

아동발달단계별 교육(48시간) 중에서는 아이돌보미/사업담당자 공통으로 영아기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상호작용'과 '학령기아동 지도를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추가 의견이 많았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영아 놀이지도 이론과 실제', '유아기 부적응행동 이해와 지도 실제에' 대한 확대/추가 의견도 많았으며, '영아 수유/이유식'과 '영아 몸다루기/베이비마사지'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추가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업담당자는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학령기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에 대한 확대/추가의견을 적게 응답하였다.

〈표 Ⅳ-2-24〉 국가자격 도입 시 확대/추가가 필요한 양성교과목②-아동발달단계 교육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총 교육시수 48시간) 중 확대/추가	필요함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영아 돌봄의 이해 과목		
15. 영아기 발달의 이해 (2시간)	30.1	53.4
16.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 (2시간)	34.8	58.1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총 교육시수 48시간) 중 확대/추가	필요함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17. 영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 (3시간)	32.0	57.8
18.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 (2시간)	24.3↓	59.6
19. 영아의 몸 다루기 및 베이비 마사지 (3시간)	26.5↓	57.8
20. 영아기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2시간)	41.3↑	70.4↑
21. 영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4시간)	40.4↑	65.7
22. 영아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2시간)	36.4	62.5
유아 돌봄의 이해 과목		
23.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2시간)	30.4	49.5↓
24. 유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실제 (2시간)	34.5	57.8
25. 유아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와 지도의 실제 (2시간)	39.3↑	63.9
26. 유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4시간)	38.0	61.7
27. 유아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2시간)	36.0	60.6
28.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신규 2시간 추가)	38.7	64.6
학령기아동 돌봄의 이해 과목		
29. 학령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2시간)	30.6	45.8↓
30. 학령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및 지도 (4시간)	31.4	52.3
31. 학령기 놀이 및 매체지도 (3시간)	33.6	57.8
32. 학령기 또래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2시간)	33.9	54.2
33. 학령기아동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2시간)	33.5	58.5
34. 학령기아동지도를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법(신규 1시간 추가)	39.8↑	69.3↑

주. 2020년 양성교과목 및 황혜신·서주현·권기남·한세영·윤명자·강주현·박지선·강부자 외(2020). 아이돌보미 교육체계 및 교재개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38-240pp 내용을 참조하여 교과목 추가/확대에 대한 문항을 구성함.

2) 보수교육 과목에 대한 확대/추가 의견

보수교육 교과목 중 국가자격 도입 시 교육시간 확대/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으로는 아이돌보미와 사업담당자 공통적으로 아동심리 이해와 연령별 놀이지도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영아기 및 놀이활동과정 전반의 확대/추가 의견도 많았다.

아이돌보미는 상대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이해와 아이돌보미 직업윤리/서비스마인드, 소진예방에 대한 확대/추가 의견이 적게 나타났다.

〈표 Ⅳ-2-25〉 국가자격 도입 시 확대/추가가 필요한 보수교육 교과목

보수교육 중 확대/추가	필요함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기본과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실제 과목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35.5	63.9
2. 아동의 안전관리	41.7	72.6
3. 성희롱 예방	33.6	49.1↓
4.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30.2↓	69.7

보수교육 중 확대/추가	필요함	
	아이돌보미	사업담당자
5. 아동심리 이해	50.0↑	75.5↑
6. 부모상담	37.1	67.1
7. 연령별 놀이지도(놀이활동, 동화구연, 종이접기, 손 유희 등)	49.5↑	80.5↑
8. 놀이교구 제작 및 활용	41.4	66.8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제도 이해	25.7↓	60.3
10.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	30.2↓	64.6
특화과정 과목		
1. 영아기과정	32.3	78.3↑
2. 유아기과정	38.2	70.0
3. 학령기과정	32.4	46.9↓
4. 놀이활동과정	46.9	81.2↑

상기한 교육과정 수요와 요구를 고려하여 국가자격 제도 도입시 양성과정 강화 및 자격시험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 아이돌보미/사업담당자 조사결과 시사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국가시험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26.6%, 사업담당자 61.7%, 양성과정 강화에 대해서는 각 25.9%, 21.3%로 의견에 차이를 보였다. 국가자격 도입 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추가/확대 의견이 아이돌보미 약 30%대, 사업담당자 약 60%대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평균 양성교육과정 약 20시간이상, 현장실습 약 10시간이상 추가/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아이돌보미 양성규모의 증가와 서비스 미스매치 해소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자격 도입 시 연령제한과 자격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적용, 그리고 본 조사에 참여한 아이돌보미의 경우 민간육아도우미 활동 경험 있음 19.6%, 향후 활동의향 있음 20.9%, 국가자격 취득 후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가능 적절함 31.0%로 응답하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취득 이후 민간분야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정비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격 도입 시, 아이돌보미에 대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아이돌보미 44.5%, 사업담당자 51.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약 반반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육아전문관리사' 명칭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적절 55.3%(3.6점), 사업담당자의 경우 적절 48.0%(3.4점)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아이돌보미와의 개별 회의를 통해 파악된 국가자격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의 부재와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전국의 아이돌보미 2,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으며, 국가자격 도입에 따른 양성교육과정(현장실습과 실기교육)과 절차상 인적성검사와 면접심사의 강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로써 NCS 기반 역량중심의 직무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국가자격의 도입과 함께 강화된 양성과정의 마련과 보수교육의 체계화에 대한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법제화 방안

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제도로, 입직과 근속 및 경력개발의 단계별로 공식적인 절차와 요건(교육훈련 연한과 과정, 자격검정)을 통해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인성적·전문적 자질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주요 쟁점과 국내외 유관분야 자격체계에 대한 고찰, 아이돌보미/사업담당자 대상 의견조사 결과 분석에 기초하여, 아이돌보미 (1)국가자격 도입의 배경과 국가자격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 (2)국자가격 도입의 2개(안)에 대한 제안과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국가자격 도입의 2개안을 담은 법제화 방안을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으로 제시하였다.

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배경 및 운영 개요

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배경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저임금 노동으로 되어있는 돌봄에 대한 공식화 및 가치산정의 제고를 통해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화라는 상위의 목적을 갖는다. 개별 가정에 방문하는 재가 돌봄서비스로서의 아이돌봄의 경우, 해외사례에서도 부가적인 등록과 관리의 절차 외에 국가수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초 저출생의 사회·인구학적 위기와 아동 돌봄과 보육, 교육에 대한 다양한 양적·질적 수요 대비 공급과 이용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편차가 있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에 기인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필수서비스로서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특히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과 내용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가 세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수한 아이돌보미의 진입과 근속 등 양성의 확대를 꾀하고, 자녀양육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 및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 이용 간 매칭의 원활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돌봄생태계의 조성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 돌봄에 관한 유관분야 국가자격증의 경우(예: 보육교사 등) 이미 아이돌보미 활동의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기관 및 직장 어린이집과의 아이돌보미의 연계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재난 상황에서 긴급돌봄으로서의 확대된 역할, 영아와 질병감염아동에 대한 돌봄 등 전문화 된 직무,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가능성도 국가자격 도입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주요 고려사항

국가수준의 자격이 도입될 경우 시험 또는 무시험 검정 여부와 양성과정의 보강이 요구된다. 또한 인적성검사의 실시와 면접심사 및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등 자격발급의 요건과 절차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요구된다.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방식과 합격기준 등 검정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시험의 실시 없이 강화된 양성과정을 통해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무시험검정의 경우 교육기관 및 양성교육과정(표준교과개요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인증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검정방법은(대학 등) 교육과정의 학과목 이수와 실무경험/경력연한의 반영 여부, 자격시험의 응시 등이 주요 요건으로 고려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기존 아이돌보미가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도입되는 것으로, 기존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적용과 유예기간의 운영과 신규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아이돌보미의 양성과정으로 크게 나뉜다. 여기에는 유관 국가자격증 소지자(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 등)에 적용되는 교육감면의 요건과 공공-민간 영역에의 적용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국가자격 도입 시 고려사항에서 살펴본대로 국가자격의 도입은 자격제도의 설계와 도입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취업의 가능성과 직업의 안정성, 진입요건과 수급, 직무의 전문성과 처우와 같은 요건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모니터링의 운영과도 면밀히 연관될 필요가 있다.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요건과 절차, 고려사항에 기반하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검정방법'(시험:선다형, 다답형, 주관식답변 등; 면접/면담, 실습, 프로젝트, 구조화 된 질문, 관찰, 결과물 심사 등; 이론교과시험, 실기시험, 실습평가 등; 대학 등 교육과정 이수, 실무경력, 자격시험의 통과 등) 에 있어 현행과 같은 양성교

육과정을 통한 무시험검정 방식 또는 국가시험의 신규 도입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에 요구되는 직무의 표준과 핵심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시험검정의 방식을 고려한다. 장기적으로는 강화된 양성과정의 교과목 이수에 대한 종합적인 내부 및 외부 평가(예: 양성과정 이수 중 교과목 종합시험을 치름. 이후 자격시험에 응시)가 모두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자격을 도입할 경우 기존 아이돌보미에 대한 국가자격 부여의 방식과 전환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며, 유관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 신규 아이돌보미에 대한 양성과 배출에 대한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행과정에서 기존 아이돌보미의 활동과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아이돌보미 수급과 연계 및 질 관리 모니터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예: 청소년지도사 무시험검정 전환 과정에서 전문성 보장의 공백, 요양보호사 무시험에서 국가시험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양성규모가 크게 축소된 경험 등) 체계적 연계가 가능해야 하므로 신규 국가자격 도입의 이행과정은 현장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사업운영 지침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자격 도입 시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이행방안에 관한 것으로, 우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을 업무독점형으로 적용할지 또는 능력인정형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고려이다. 공공아이돌보미의 경우 체계적인 인력운영과 지속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독점형으로 국가자격의 취득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민간육아도우미의 경우 엄격한 업무독점형으로 민간/비공식영역의 돌봄 서비스 운영에 대해 제재와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능력인정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민간자격 제도와의 관계 설정 및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과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가자격체계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활용과 연계를 제고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접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민간영역의 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민간분야의 교육훈련과 자격취득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국가자격과 함께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제도의 활용, 교육업체의 등록 등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사업에 적용되는 돌보미 처우와 비용지원체계도 맥을 같이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즉 민간자격의 활용을 위해서는 (자격검정 현황조사를 통해) 공인 민간자격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NCS 표준직무능력 단위(고용노동부·국산업인력공단)와 NCS 교육훈련 모듈(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마련,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을 공공 아이돌봄사업으로 연계 및 서비스 매칭을 할 경우, 아이돌보미 양성·자격 체계의 기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다. 자격시험 도입 여부에 따른 국가자격 도입 방안 및 예상 장단점

1) 목적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의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국가자격증을 도입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2)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2개 방안 및 예상 효과와 장단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의 도입은 국가시험의 실시 및 양성교과목 확대 여부에 따라 1, 2안으로 구성하였다.

○ 1안: 현행 교육과정(80시간+현장실습) 유지 및 국가자격시험 도입

- 아이돌보미 업무독점형 자격, 육아도우미 능력인정형 자격[42)]

○ 2안: 교육과정 강화(110시간[43)]+현장실습) 및 학과시험 실시-국가자격시험 도입안함

- 아이돌보미 업무독점형 자격, 육아도우미 능력인정형 자격

국가자격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42) ① 업무독점형 자격: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에 특정업무를 할 수 없음.
② 능력인정형 자격: 특정분야의 지식이나 기술, 기능이 있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격이 활용되고 이러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

43) 부록 3 참조

가) 1안(국가시험 실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 및 어려움

국가자격시험 실시를 통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아이돌보미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을 통해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합리성과 체계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돌봄노동에 대한 공식화 및 노동가치의 합리적 산정, 이에 근거한 처우개선과 우수인력의 진입과 근속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우수인력의 유입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해 아이돌보미 공급규모의 증가와 지역별 대기수요 및 미스매치의 해소, 특화된 돌봄직무(예: 영아종일돌봄, 질병감염아동돌봄)의 전문성 증진으로 아이돌보미 이용 수요의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이로써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돌봄생태계 전반의 사각지대와 공백의 해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국가시험 실시를 통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어려움, 즉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첫째, 처우개선과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적 개선이 충분히 논의 및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시험의 실시와 확대된 교과목 시수는 아이돌보미의 진입과 양성규모를 위축시키고 이로써 수급 미스매치의 어려움이 제도 도입 초기에 커질 가능성이다. 둘째, 자격시험의 실시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이 시험준비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교육기관 및 현장을 통해 습득해야하는 종합적인 대응과 실무능력을 키우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아이돌보미 근로 희망자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인성적 자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시간제 위주의 아동돌봄의 직무에 자격시험에 대한 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개인별로 지나치게 커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도 도입의 본격화 이전에 시범적용이 이루어지고, 제도 이행기간으로서 과도기적 유예기간을 3~5년이상 충분히 두거나 국가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아이돌보미의 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유형별로 국가자격 시험의 과정이 필요한 업무영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의 증진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근로환경 개선이 선결요건으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가지고 과도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의 활용과 유관분야 자격자(유치원, 보육교사 등)의 진입을 원활히 하는 방안 등 연계협력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2안(교과목 110시간+학과시험 실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 및 어려움

2안의 경우 기존 양성과정에 30시간에 해당하는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시간이 증가된 안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종합적 대응력 위주의 아이돌보미 전문성과 역량의 증진되는 점이 대표적인 긍정 효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과정 내에서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학과시험의 실시를 통해 국가자격 부여에 합당한 전문성과 역량을 진단·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서 1안과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에 대한 공식화 및 노동가치의 산정, 이로 인한 처우개선과 우수인력의 진입/근속의 가능성 제고 및 종사자 전문성 증진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이로써 아이돌봄의 좋은 일자리가 아이돌보미 공급규모의 증가와 지역별 대기수요 및 미스매치의 해소, 특화된 직무(예: 영아종일돌봄, 질병감염아동돌봄)의 수행으로 아이돌보미 이용수요의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안의 핵심은 확대 강화된 양성교육과정이 '실기와 실습,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내용과 질의 보강'으로, 정부의 교육훈련 체계 전반의 선진화 된 운영이 요구된다. 교육 내용과 질의 보강, 참여적인 수업형태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과목 시간의 양적 확대에 머무는 안으로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역량이 증진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길어진 교과목 수업시간과 학과시험의 도입으로 고령자와 아이돌보미 희망자의 참여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아이돌보미 공급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1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질의 양성교육과정 운영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의 증진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근로환경 개선이 선결요건으로 함께 진행되어 다양한 특성의 아이돌보미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의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130시간 운영에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과정의 설계 및 교수학습 멘토링과 네트워크 운영을 반영하여 강화된 양성과정에의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중도이탈과 자격증 취득 후 활동하지 않는 비중을 줄여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희망자에 대한 양성과정 단계에서부터 인적DB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생애주기 커리어 경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V-1-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안 개요 및 장단점

<table>
<tr><th>구분</th><th>1안
현행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 도입</th><th>2안
현행 교육과정 강화(학과시험 도입 가능)</th></tr>
<tr><td>목적</td><td colspan="2">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의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국가자격증을 도입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와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td></tr>
<tr><td>구분</td><td colspan="2">- 업무독점형 자격 vs. 능력인정형 자격
- 자격시험 도입 vs. 교육과정 강화(학과시험도입)</td></tr>
<tr><td rowspan="2">내용</td><td colspan="2">- 아이돌보미: 업무독점형 자격, 육아도우미: 능력인정형 자격
- 신규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함
-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서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할 필요 없음(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육아도우미로 활동 가능), 육아도우미가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취득 가능
-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일정경력 이상인 사람에게(예: 최근 5년이내 3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부여는 대통령령에 위임
- 기존 아이돌보미 중 활동경력 요건이 안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제공되는 추가이수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육아전문관리가 자격 취득
- 개정법률 시행 유예기간은 5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td></tr>
<tr><td>-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증은 현행 교육과정(80시간+2~20시간) 이수 및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td><td>-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증은 확대·강화 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취득(자격시험 도입 안함): 이론수업 110시간+2~20시간 현장실습
- 교육과정 이수 시 학과시험 도입
- 실기교육과 현장실습 등 추가요구 과목을 양적·질적으로 보강
: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 평가와 실습멘토제 운영</td></tr>
<tr><td rowspan="2">장점</td><td>- 자격시험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지 않거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 해당 인력이 아이돌보미가 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td><td>- 교육과정 강화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역량 증진을 강화함
- 자격시험의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지원자 수 감소를 막을 수 있음.</td></tr>
<tr><td colspan="2">- 육아도우미도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국가자격증을 가진 민간 육아도우미를 부모가 믿고 선택할 수 있음.
- 국가자격증의 성격이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업무독점형 자격이지만,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능력인정형 자격이므로 기존의 육아도우미 중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및 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td></tr>
</table>

구분		1안 현행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 도입	2안 현행 교육과정 강화(학과시험 도입 가능)
예상쟁점	자격시험 도입여부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기 및 현장실습이 교육시간의 2/3를 차지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 이에 비해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교과학습 80시간 이상, 실습 2~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습의 비중이 낮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아이돌보미의 경우 실습을 확대하기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가정 내 돌봄이기 때문으로 요양보호사와 달리 실습장소를 구하고 개별가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됨. - 실습을 확대하기 어려운 점은 (가칭)육아전문관리사 교육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실기 및 현장실습의 비중이 낮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운영할 경우 필기시험으로 아이돌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및 육아도우미의 급여 및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시험이 도입될 경우 지원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은 교과학습 80시간, 실습 10시간 이상(2~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요구되는 교육시간이 1/3을 넘는 수준에 불과함. - 강화된 교육과정 시수(이론 80시간, 실기 30시간, 실습 2~20시간)에 다변화 된 교육방식 및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종합적 문제해결과 인성적 자질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도록 함. - 현재 아이돌보미의 연령이 50대 이상이 다수인 상황에서 교육시간을 요양보호사 수준으로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교육시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도입하지 않고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부여할 경우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증 도입의 의의와 전문성 제고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양성과정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 종합 학과시험을 실시하는 안을 제안함.
	해외사례	- 해외사례에서 아이돌보미/육아도우미가 정부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자격시험을 운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육아도우미를 정부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가정 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음. - 영국의 childminder와 독일의 tagesmutter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돌보미의 집에 5명 이내의 아동을 데리고 와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 및 육아도우미와는 제공하는 돌봄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음. - 아동의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nanny의 경우는 특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2.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법제화 방안(일부개정법률안 초안)

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운영 절차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은 자격시험 시행 여부에 따라 양성과정의 교과목 구성 및 교육시간의 구성이 다르게 된다. 1, 2안의 운영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안은 현재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이론 80시간, 실습 2~20시간) 이수 후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고,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과목별 60점이상/전체평균 60점이상) 이후 아이돌보미로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활동이 가능한 방안이다. 1안은 아이돌봄서비스에 요구되는 인성적·전문적 자질을 표준화 된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이다.

2안은 현재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보다 강화된 교과과정(이론 110시간+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시간이 100시간(80시간+2~20시간)에서 잠정 130시간(110시간+2~20시간)으로 증가한 양성교육과정을 갖는 안이다. 교과내용의 보강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수행한 양성교육과정 개정 연구(황혜신 외, 2020)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된 교육시간 확대 과목 수요(예: 실기교육, 사회성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 미디어기기 이용, 건강·안전 관리, 문제행동 관리 등)를 추가 편성하여 이론수업 대비 실제사례 위주의 실기교육 비중이 강화된 표준 양성교육과정의 마련을 제안하였다(부록 3: 육아전문관리사 양성교육과정(안) 참조). 이는 또한 이수과정에 출석률 기준과 '종합 학과시험'을 도입하여 과목별 60점이상의 경우 양성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하고 합당한 절차를 통해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안이다. 2안은 양성교과목 이수 과정과 이후 자격 발급의 절차를 거치면서 돌봄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둘째, 국가자격의 도입은 아이돌봄지원법의 공공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를 모두 포괄하되, 아이돌보미에게는 국가자격의 취득이 업무독점형 자격을 의미하며, 민간육아도우미에게는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해 운영되는 인력운영의 체계(예: 활동이력 및 경력관리, 서비스 질관리 모니터링 등)를 가지며, 민간영역의 돌봄서비스는 국가자격을 갖춘 돌봄인력의 활동 참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44]이 제고되는 영향을 갖는다. 국가자격 취득자의 민간 돌봄영역에서의 활동과 이로 인한 확장은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원 및 질 관리, 인력운영에 대한 정책 설계를 필요로 한다.

44) '공공성'은 다양한 하위개념을 포괄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access) 또는 형평성, 비용지불가능 및 비용지원(affordability), 서비스의 질/전문성(quality), 돌봄인력(staff)의 운영과 관리를 포함함.

셋째, (가칭)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의 도입은 다음의 현행 운영절차를 유지한다.

▸신청 →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 [국가시험 응시] → 근로계약 체결 → 돌봄활동(매년 보수교육/건강진단서 제출) → 돌봄활동 이력 관리 및 DB 구축

상기한 운영절차를 통해 다음의 세부 사항을 고려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의 경우 국가자격의 부여를 위해 운영절차의 어느시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인적성검사의 경우 면접심사에 참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면접심사의 실시를 자격취득 이전 최종적인 판단의 절차로 하여, 현장실습 수료 이후 및 근로계약 체결 이전으로 옮기거나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가능하다.

(2)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 응시자격을 일정기간 활동경력이 있는 아이돌보미에게 부여하는 안으로, 현장실무경험(예: 3년경력)을 반영한 시험 응시자격 부여 방안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은 아이돌보미 1-2급의 자격체계와 경력개발(career path)의 전문성 증진의 모멘텀, 나아가 이러한 경력 및 국가시험 합격에 기반하여 육아전문관리사의 국가자격을 돌봄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이에 합당한 자격급 수당을 지급하는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경력자에 대한 관리와 자격체계를 통해 아이돌보미 내에서 경력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된 직무의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국가자격의 도입은 해당직무에 합당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국가수준의 공신력있는 인정으로, 이에 걸맞는 전문적인 활동 영역(예: 현장실습멘토, 현장실무경험 지원 등)과 처우개선이 수반되도록 국가자격과 체계적으로 연관된 근로여건의 개선과 직무 설계를 마련한다.

(3) 자격취득 시점의 학력제한(최저학력 고졸)과 연령제한을 만 60세로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 자격취득 이후의 활동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하는 미래역량의 개념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력과 연령 제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매 5년 활동이력과 결격사유를 고려한 자격갱신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연간 최소 활동시간과 보수교육 이수가 충족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5) 국가자격의 운영은 아이돌보미 활동경력과 근무평정에 대한 DB 구축과 서비스 질 관리

모니터링의 체계적 운영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격 취득 이후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한 경력을 인력관리 DB에 반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자격체계에 대한 공인과정과 NCS 양성과정(프로그램) 표준화 모듈의 적용이 필요하다.

(6)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 외에, 경력연한에 따른 2-3년 주기의 수준별 교육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보수교육은 상시 접속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또한 매일의 현장에서 갖게되는 질문과 상담, 피드백은 Q&A 자료집 활용과 온라인상담 코너를 통해 육아전문관리사 멘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7) 유관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시간 면제를 현행보다 축소하여, 재가서비스로서의 아이돌봄 직무를 충실히 익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초등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상호 인정과 교류가 가능한 돌봄서비스 운영이 되도록 한다.

나. 기존 아이돌보미 및 유관자격 소지자 적용 방안

기존 아이돌보미에게는 일정기간(예: 최근 5년이내 3년간 매년 6개월이상-월 60시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갖추고, 심각한 민원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강화된 양성과정 및 국가시험 응시를 대체하는) 특별양성과정 이수와 관련 절차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함(개정법률안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 경력자에 대한 국가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상기한 경력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돌보미의 경우는 5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양성과정 및 국가시험 응시 면제에 해당하는 활동이력(예: 3년간 매년 6개월이상, 월60시간 이상 활동, 결격사유 미발생)을 충족하여 신규 국가자격을 취득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아이돌보미에 대해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개정법률 시행의 유예기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쟁점이 남는다. 법령의 시행일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를 마치는 시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법제처, 2020: 566),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위임입법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한다(법제처, 2020: 567). 이에 따라 기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행 유예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개정법률안 부칙 제7조).

다만 팬데믹 등으로 인한 대면활동의 제한 등 급변하는 돌봄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자격 부여의 적용 시점 및 유예기간의 적용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유관 국가자격 소지자(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의 경우는 기존대로 교육시간 면제를 유지하되 최소화 하며, 양성과정 중 아동학대와 안전관리 등의 필수 교과 이수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이후 동일한 아이돌보미 자격유지 및 갱신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한다.

다. 국가자격 도입 법제화 방안(일부개정법률안 초안)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주요 요건 및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아이돌봄지원법 상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법제화 방안을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시하면 〈표 V-2-1〉, 〈표 V-2-2〉와 같다.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안 공통적으로 육아전문관리사의 정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육아전문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기존 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일부개정법률안 1,2안의 차이는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교부 요건으로 1안은 육아전문관리사 교육과정 수료 및 자격시험 합격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안은 교육과정 수료를 요건으로 한 점에 있다[45]. 기존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자에 대한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 취득의 기한을 5년 이내로 적용하는 〈부칙〉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노인복지법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에 관한 법 조항의 구성을 참조한 것이다.

〈부록 3〉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규정하였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안 공통으로 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 규정하였고, 1안은 이에 추가하여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실시 공고,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45) 일부개정법률안 1, 2안(표 V-2-1, 표 V-2-2)은 제9조의2 육아도우미 교육기관 인증 등에서 차이를 보임.

〈표 Ⅴ-2-1〉 아이돌봄지원법 신규조문 대비표(1안)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육아전문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육아전문관리사”란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전문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전문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	**제7조(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육아전문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라 육아전문관리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육아전문관리사**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육아전문관리사 교**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육아전문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②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제7조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을 빌려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전문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육아전문관리사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표 Ⅴ-2-2〉 아이돌봄지원법 신규조문 대비표(2안)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육아전문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육아전문관리사”란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전문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전문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	**제7조(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육아전문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라 육아전문관리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육아전문관리사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육아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전문관리사**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139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육아전문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제7조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을 빌려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육아전문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육아전문관리사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육아도우미 교육기관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육아도우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관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아이돌봄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현행	개정안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터 시행한다. **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민정의원 대표발의(2022. 8. 4)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일규·김기홍·변숙영·김덕기(2008).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경승구·장소현·이용갑(2018).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요양보호사 제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290-304.

고용노동부(2021). 2021년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교육부(2020).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국회입법조사처(200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태조사 보고서

권칠승의원 대표발의(2022. 6. 10)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경준(2008).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2008(2), 1-16.

김경준·이종원·박정배·변종배(202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덕기·김상진·이동임·정지운·주인중·최영렬·윤여인·이창래·임경범·한애리·김윤아(2020).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아름(2020).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 긴급점검.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2020.11.23) 자료집.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준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요양보호사의 인력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나현미·정란·장수아(2021). NCS-NCS학습모듈 개발·개선 현황 및 연계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RIVET Issue Brief 211호.

모상헌·이진숙(2014). 청소년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정희·김성순(2020).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선영·구미영·한지영·황의정(2013).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동현·전수길·오성욱(2014). 가가서비스 종사자 고용제도화에 대한 의식조사

박정윤(2007). 건강가정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발전방향

박지순·권순원·정정임(2015).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방안과 일자리창출 효과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백옥선(2018).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백옥선·이상윤(2019).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II).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2020) 법령 입안 심사기준

보건복지부(2010a). 2010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0b). 2010년 하반기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7a). 20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7b). 요양보호사 실습 매뉴얼 실습생용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9a). 2019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19b). 2019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

보건복지부(2020a). 2020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보건복지부(2020b).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0d).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동민(2013).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장기요양연구 1(1), 100-136.

성미애·이현아(2004). 건강가정사의 역할, 자격 및 양성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45-355.

손덕순(2013). 요양보호사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 22, 143-157.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19)

엄기욱(2011).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여성가족부(2020b).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통계(세부자료)).

여성가족부(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21b). 2021년 1월 기준 아이돌보미 현황(내부자료).

여성가족부(2021d).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

오은진(2010). 영국의 돌봄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자격제도와 직업훈련 및 고용현황.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8(3).

유해미·권미경·김근진·이윤진·이혜민(2019). 아이돌보미 및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윤민석·문진영(202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윤자영(2011). 가사사용인의 근로실태 및 보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광호(2000).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변화의 차별적 특성과 향후 양성방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전문정책연구(2000.12) 3-60.

이동임·김윤아(2021). 역량기반 자격검정의 필요성과 방향. KRIVET Issue Brief 214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미화·문무경·최윤경·강은진·이진화·최은영·김문정·김승진·문미옥·정선아·황옥경·조형숙(2017).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개편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강은진·박진아·김동훈·이재희·김길숙·김태우·최지은(2017). 국가시험제 등 보육교직원 자격강화 연구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용갑·서동민·최태림·김윤영·경승구(201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보건복지부·인천발전연구원

이재열·안중석(2021). 자연과학·공학·제조 분야 기초 직업지표 현황과 변화. KRIVET Issue Brief 214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이혜승·유승현(2013). 노인 요양보호사의 인력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전병유(2010). 우리나라 노인요양사 인력 문제와 대안적인 요양인력모델의 모색. 한국사회정책 17(3), 67-91.

조성혜(2018).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법과 정책연구 18(3), 223-259.

조정윤·정향진·박종성(2013). 교육서비스 분야 자격의 개선 및 신설 방안. 직업과 자격 연구 2(1). 103-122.

조정윤(2021).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수요기반 국가자격제도 관리운영(주제발표1). 2021년도 한국직업자격학회-한국산업인력공단 세미포럼 자료집(2021.6.18.)

진미정·손승영·최규련·최선희(2006). 건강가정사 자격제도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서울대학교

최영렬·김덕기·박문곤(2018). 민간자격 생태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윤경·김은설·신동주·장혜진·박창현·홍성은(2016). 유아교육(ECEC) 교원 양성자격 정비 및 재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박은정·우석진·김보미(2020). 성인지관점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2019).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상철·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서정아(2009).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원.

황혜신·황혜신·서주현·권기남·한세영·윤명자·강주현·박지선·강부자 외(2020). 아이돌보미 교육체계 및 교재개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8). Care work and care jobs for the future of decent work.

NZQA(2015b).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OECD(2015).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1). OECD network “Survery for the Quality Tools and ECEC Portal”.

(http://www.oecd.org/education/school/49322268.pdf에서 p.3의 Table 1). 2015. 10. 9. 인출

[온라인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3. 15. 인출

자격기본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314호, 1997. 3. 27., 제정]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2208&ancYd=19970327&ancNo=05314&efYd=1997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1. 7. 1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114#0000에서 2020. 10. 22 인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사업, 이수과목안내,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인출일: 2021. 7. 15.)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s://www.ncs.go.kr/th01/TH-102-001-01.scdo, 2021. 8. 2 인출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일반자료실), https://www.ncs.go.kr/th06/bbs_lib_view.do?libDstinCd=01&libSeq=20210621153807744&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에서 2021. 8. 2 인출) -주제발표1(조정윤)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수요기반 자격제도 운영. 2021년도 한국직업자격학회-한국산업인력공단 세미포럼 자료집(2021.6.18.)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https://www.ncs.go.kr/unity/th03/ncsSearchMain.do.) -NCS 학습모듈 개발 및 수정보완 현황, 2021. 8. 2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 7.1.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정보마당, 주요통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인출일: 2021. 07. 14.)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정의 https://www.youth.go.kr/yworker/usr/intro/define.do 2021. 07. 12 인출

②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연수소개, 자격연수 소개 https://www.youth.go.kr/yworker/usr/qual/intro.do
③ 보수교육 소개 https://www.youth.go.kr/yworker/usr/edu/intro.do
④ 전문연수 소개 https://www.youth.go.kr/yworker/usr/special/intro.d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사업소개,
① 자격검정 https://www.kywa.or.kr/leader/leader7_1.jsp 2021. 07. 12. 인출
② 자격연수 https://www.kywa.or.kr/leader/leader8.jsp 2021. 07. 12.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2020). 지원 및 양성 〉 양성 과정, 아이돌보미 활동 〉 돌봄 활동 내용. https://care.idolbom.go.kr/dolbomi/CMM/commonGoFront.do에서 2020. 10. 20 인출.

영국 정부 홈페이지
① https://www.gov.uk/guidance/childminders-and-childcare-providers-register-with-ofsted/nannies-registration (2021.2.10. 인출)
② https://www.gov.uk/become-childminder-nanny (2021.2.10. 인출)
③ https://www.gov.uk/guidance/childminders-and-childcare-providers-register-with-ofsted/nannies-registration (2021.2.10. 인출)

영국 정부 돌봄사업 홈페이지, what is a childminder
https://www.childcare.co.uk/information/what-is-a-childminder (2021.2.10. 인출)

영국 정부 돌봄사업 홈페이지, becoming a childminder
https://childmindinguk.com/becoming-a-childminder (2021.2.10. 인출)

영국 지자체 돌봄사업
① 런던 London borough of Merton 교육과정 안내 원문(일부): https://www.merton.gov.uk/communities-and-neighbourhoods/childcare/thinking-of-working-in-childcare/becoming-a-childminder (2021.2.10. 인출)
② 켄싱턴 https://www.kensington-nannies.co.uk/pages/nannies4 (2021.2.10. 인출)

오스트리아 빈 정부 홈페이지 https://www.wien.gv.at/menschen/kind-familie/ahs-info/ausbildung.html (2021.2.10. 인출)

[참고 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법률 제18285호]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노인복지법 [법률 제996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아이돌봄지원법」 [법률 제17539호]
「자격기본법」 [법률 제5314호]
「직업안정법」 [법률 제17326호]「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여성가족부고시 제2019-51호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780호]

부록

부록 1. 설문지 (아이돌보미용)
부록 2. 설문지 (사업담당자용)
부록 3.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시행령, 시행규칙)

부록 1. 설문지 (아이돌보미용)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관련 의견 조사 (아이돌보미 대상)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시어 귀하의 의견을 응답하여 주시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안의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연구원 ☏ 02-398-7761, yjyj465@kicce.re.kr
한국리서치 이승찬 연구원 ☏ 02-3014-0054, sclee@hrc.co.kr

선문1. 본 조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단수]
1. 예
2. 아니오 -〉 설문종료

선문2. 귀하는 최근 3개월 이내 정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일을 하고 계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단수]
1. 예
2. 아니오 -〉 설문종료

선문3. 조사 참여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를 중단하시더라도, 이어 하실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해 주신 정보는 설문 이어 하기 및 중복응답 방지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

선문4. 귀하가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시도 ()
2. 시군구 ()

문1. 귀하가 현재 제공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 되는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1.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2. 시간제(일반형) 돌봄서비스
3. 시간제(종합형) 돌봄서비스
4.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5. 기관연계서비스

문2. 귀하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받는 월평균 급여는 얼마입니까?

※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월평균 ()만원

문2-1. 귀하는 아이돌보미 급여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단일척도]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3. 귀하의 일주일 평균 아이돌봄서비스 근로일수와 활동시간(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주 평균 총 근로일수 () 일
2. 주 평균 총 근로시간 () 시간

문3-1. 귀하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현재보다 늘리고 싶으십니까? 줄이고 싶으십니까?

1. 많이 늘리고 싶다
2. 다소 늘리고 싶다
3. 현재 수준 유지
4. 다소 줄이고 싶다
5. 많이 줄이고 싶다

문4. 귀하는 지금 하고 계시는 아이돌보미 업무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5. 선생님께서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에 다음 각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인성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추가(또는 강화)한다					
2.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관련 과목을 강화한다					
3. 대면수업에 의한 교육과목을 늘린다					
4. 비대면 교육과목을 늘린다					
5. (교과교육 중) 실기교육을 강화한다					
6. 현장 실습을 강화한다					
7. 양성교육의 총 교육 시간을 늘린다					
8. 양성교육의 질을 보강한다					
9. 양성교육과정에서 교과목 시험을 도입한다					

문5-10.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에 이 외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1. ()

문6. 선생님께서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취득 및 유지 과정에 다음 각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인적성검사의 실시 및 적용을 강화한다					
2. 채용 시 면접심사의 실시와 적용을 강화한다					
3. 아이돌보미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한다					
4. 현직 보수교육 시간을 늘린다					
5. 현직 보수교육의 질을 보강한다					

문6-6. 아이돌보미 자격취득 및 유지 과정에 이 외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1. ()

문7. 귀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등과 같이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도 국가자격 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필요 ->문7-2
2. 불필요 ->문7-2
3. 보통 ->문8
4. 필요 ->문7-1
5. 매우 필요 ->문7-1

//문7=4,5만 응답//

문7-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 ->문8

//문7=1,2만 응답//

문7-2.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

문8. 귀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요양보호사 등과 같이 아이돌보미에 대해 국가자격을 도입할 경우, 다음의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인적성검사 실시 및 적용					
2, 채용 시 면접심사 실시 및 적용					
3, 이론수업 중 교과목 시험(학과시험)의 실시					
4, 이론수업 중 실기관련 교육 강화					
5, 현장 실습 내실화					
6,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시험 도입					
7, 아이돌보미 1급-2급 자격체계 도입					
8, 아이돌보미 직무특성에 따른 구분 및 특화 (예: 신생아, 영아종일, 초등 등하원, 환아보호 등)					
9, 자격취득에 대한 연령 제한					
10, 자격취득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 마련					
11, 자격갱신 절차 마련 : 아이돌보미 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갱신 과정을 거치도록 함.					
12,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 및 이력 관리(관련 DB 구축)					

문8-13. 이외에 아이돌보미에 대해 국가자격을 도입할 경우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1. ()

문9-1. 만약 국가자격취득에 연령 제한을 둔다면, 몇 세까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이돌봄 활동에 대한 연령제한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 시 연령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만 ()세

문9-2. 만약 국가자격취득에 최저학력 기준을 둔다면, 최저학력기준으로 다음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중졸 이상
2. 고졸 이상
3. 대학(2~3년제) 졸업 이상
4. 대학(4년제) 졸업 이상
5. 학력 제한 필요 없음

문9-3. 만약 국가자격취득에 자격갱신절차를 둔다면, 몇 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년
2. 자격갱신절차 필요 없음

문10. 귀하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도 도입 이후, 자격을 취득하는 신규 아이돌보미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현재처럼 양성교육과정(이론/실습) 및 신원조회/인적성검사/면접 후 국가자격 부여
2. 양성교육 교과목 수와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보강하여 국가자격 부여

 예) 현행 : 이론 80시간+ 실습 20시간 → 보강 : 이론 80시간+α + 실습 20시간+α
3. 국가시험을 도입하여 양성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시험 합격 시 국가자격 부여
4. 기타()

문10-1.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양성교육 과정 수업 시간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성교육 과정을 교과수업(이론+실기)과 현장실습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0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 〈참고〉

- 요양보호사: 수업 [이론 80시간 + 실기교육 80시간] + 실습 80시간의 총 240시간 이수 후 국가시험 응시
- 건강가정사: 대학에서 12개과목 36학점이상 이수한 경우 국가자격 부여

현행:	교과수업 (80시간) + 실습(20시간)

1, 교과수업 현행 80시간 + ()시간 총 시간

2. 현장실습 현행 20시간 + ()시간 총 시간

문10-2. 국가자격 도입을 위해 양성교육 과정을 교과수업(이론)-교과수업(실기)-현장실습의 3개 과정으로 할 경우, 각각의 교육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교육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교과수업(80시간) + 실습(20시간)

1, 교과수업(이론) ()시간

2. 교과수업(실기) ()시간

3. 현장실습 ()시간

4. 총 교육시간 ()시간

5. 잘 모르겠다

문11. 귀하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시, 다음의 방식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할 의향이 있습니까?

※ 국가자격 취득 방법으로 기타 추가로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6.기타 항목에 “의향있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의향있음	의향없음
	1	2
1. 기존 아이돌보미 모두에게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국가자격을 부여할 경우		
2. 실제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할 경우		
3. 확대/강화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 이수한 아이돌보미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할 경우		
4. 새로 도입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아이돌보미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할 경우		
5. 새로 도입되는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기존 아이돌보미 자격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경우		
6. 기타		

//문11-6.기타 항목에 1.의향있음 응답시//

문11-6-1. 귀하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법으로 기타 방식에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1. ()

//문11-3 2. 의향없음 응답자//

문12-1. 양성교육과정 추가 이수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표기해주십시오

1. 교육과정이 힘들어서(교육내용이 어려워서 등)
2. 교육을 이수할 시간이 부족해서
3.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4.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이 번거로워서
5. 자격증 신청 및 발부에 비용이 들어서
6. 자격요건이 강화되면 일하기 부담되어서
7. 기타()

//문11-4 2. 의향없음 응답자//

문12-2. 귀하가 국가시험 응시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국가시험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어서
2. 국가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3.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4. 기타(　　)

문13-1. 귀하는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문13-2. 귀하는 향후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전혀 없음
2. 없음
3. 보통
4. 있음
5. 매우 있음

문14. 귀하는 현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이론교육 80시간)을 받지 않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 현장실습(20시간) 및 아동학대예방 등 필수교육은 받도록 하고 있음.
1. 매우 부적절
2. 부적절
3. 보통 ->문15
4. 적절 ->문15
5. 매우 적절 ->문15

문14-1. 귀하는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가 양성교육(이론교육 80시간)을 받지 않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가정 현장실습(20시간) 및 아동학대예방 등 필수교육은 받도록 하고 있음.

1. 양성교육(이론교육 80시간) 이수 필요
2. 모든 교육은 아니지만 일부 이론교육(인권,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등) 이수 필요
3. 조정 필요하지 않음 - 현행대로 양성교육(이론교육) 이수 불필요
4. 잘 모름

문15.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이 다음 각 항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2	3	4	5
1. 아이돌보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2.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					
3. 아동학대의 예방					
4. 아이돌보미 이용 수요 증가(부모의 이용 확대)					
5. 서비스 미스매치 해소					
6. 아이돌보미로서의 자긍심 향상					
7. 아이돌보미 업무만족도 향상					
8.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제고					
9. 아이돌보미 일자리의 질/안정성 향상					
10. 아이돌보미 급여 및 처우 개선					
11. 아이돌보미 양성규모 증가					
12. 아이돌보미 활동 이력/경력 관리 체계 향상					
13. 아이돌봄사업의 공공성 확대					

문15-14. 이외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1. ()

문16. 국가자격 도입 시, '아이돌보미'에 대한 명칭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명칭 변경 필요함
2. 명칭 변경 필요하지 않음

문17-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을 '육아전문관리사'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적절 ->문17-1-1
2. 부적절 ->문17-1-1
3. 보통 ->문17-2
4. 적절 ->문17-2
5. 매우 적절 ->문17-2

문17-1-1. 육아전문관리사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

문17-2.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에 대한 명칭을 제안하신다면 어떤 명칭이 좋을까요?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문18. 그 밖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

문19-1. 아래 [양성교육 과목]은 아이돌보미가 이수해야 하는 양성교육 과목입니다.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각 과목별로 교육시간 확대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I. 기본소양교육(총 교육시수 32시간) 중 아이돌봄 직무의 이해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해 (현행 1시간)		
2. 아이돌보미의 직업윤리와 역할 및 자질 (현행 3시간)		
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족의 이해 (현행 2시간)		
4. 아동관찰 및 부모면담 방법 (현행 4시간)		
5. 실습오리엔테이션 (신규 2시간 추가)		

문19-2. I. 기본소양교육(총 교육시수 32시간) 중 아동안전·건강관리 과목군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6. 아동의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현행 5시간)		
7. 아동의 건강관리 (현행 3시간)		
8. 성인지 교육 (현행 2시간)		
9. 아동안전, 건강관리 사례 및 토론 (현행 2시간)		

문19-3. I. 기본소양교육(총 교육시수 32시간) 중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교육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척도]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10. 아동권리의 이해 (현행 2시간)		
11. 아동학대 예방교육(1): 판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이해 (현행 2시간)		
12. 아동학대 예방교육(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 방법 (현행 1시간)		
13. 아동학대 예방교육(3):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방법 (현행 1시간)		
14.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사례 및 토론 (현행 2시간)		

문20-1. II.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총 교육시수 46시간) 중 영아 돌봄의 이해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15. 영아기 발달의 이해 (현행 2시간)		
16.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 (현행 2시간)		
17. 영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 (현행 3시간)		
18.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 (현행 2시간)		
19. 영아의 몸 다루기 및 베이비 마사지 (현행 3시간)		
20. 영아기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현행 2시간)		
21. 영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현행 4시간)		
22. 영아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현행 2시간)		

문20-2. Ⅱ.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총 교육시수 46시간) 중 유아 돌봄의 이해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23.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현행 2시간)		
24. 유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실제 (현행 2시간)		
25. 유아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와 지도의 실제 (현행 2시간)		
26. 유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현행 4시간)		
27. 유아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현행 2시간)		
28.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신규 2시간 추가)		

문20-3. Ⅱ.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총 교육시수 46시간) 중 학령기아동 돌봄의 이해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29. 학령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현행 2시간)		
30. 학령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및 지도 (현행 4시간)		
31. 학령기 놀이 및 매체지도 (현행 3시간)		
32. 학령기 또래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현행 2시간)		
33. 학령기아동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현행 2시간)		
34. 학령기 아동 지도를 위한 스마트 기기 사용법 (신규 1시간 추가)		

문20-4. 지금까지의 양성교육 과목 이외에도 추가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십시오.

1. ()

문21-1. 아래 [보수교육 과목]은 아이돌보미가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과목입니다.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중 각 과목별로 교육시간 확대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기본과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실제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2. 아동의 안전관리		
3. 성희롱 예방		
4.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5. 아동심리 이해		
6. 부모상담		
7. 연령별 놀이지도(놀이활동, 동화구연, 종이접기, 손 유희 등)		
8. 놀이교구 제작 및 활용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제도 이해		
10.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		

문21-2. 특화과정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1. 영아기과정		
2. 유아기과정		
3. 학령기과정		
4. 놀이활동과정		

21-3. 문 20의 보수교육 과목 이외에도 추가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십시오.

1. (　　)

배문1.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만(　　)세

배문2.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

2. 여

배문3. 아이돌보미 총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민간돌봄경력은 제외하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로 일하신 경력만 적어 주십시오.

1. (　　)년 (　　)개월

배문4. 선생님께 가지고 계신 유관 자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
3. 초중등 교사 자격 소지
4. 의료인 자격 소지
5. 기타 다른 자격 소지(　)
6. 자격증 없음

배문5.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2-3년제)
4. 대졸(4년제)
5. 대학원이상

부록 2. 설문지 (사업담당자용)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관련 의견 조사

(광역/시군구 아이돌봄사업 담당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광역거점센터 및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시어 귀하의 의견을 응답하여 주시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안의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연구원 ☏ 02-398-7761, yjyj465@kicce.re.kr
한국리서치 이승찬 연구원 ☏ 02-3014-0054, sclee@hrc.co.kr

선문1. 본 조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설문종료

선문2. 귀하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 설문종료

선문3. 조사 참여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를 중단하시더라도, 이어 하실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해 주신 정보는 설문 이어 하기 및 중복응답 방지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

선문4. 귀하가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 장소를 기준으로 한 곳에만 체크해주세요.

1. 광역거점센터 -〉 시도 ()
2. 서비스제공기관 -〉 시도 () 시군구 ()

문1. 귀하가 담당하고 계신 지역에 현재 소속된 아이돌보미와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각각 몇 명 입니까?

1. 소속된 아이돌보미 약 ()명
2. 활동중인 아이돌보미 약 ()명

문2. 귀하가 담당하고 계신 지역의 아이돌보미들이 받는 월평균 급여는 약 얼마입니까?

1. 월평균 ()만원

문2-1. 귀하는 아이돌보미 급여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적절
2. 부적절
3. 보통
4. 적절
5. 매우 적절

문3. 귀하가 담당하고 계신 지역의 아이돌보미들의 일주일 평균 아이돌봄서비스 근로일수와 활동시간(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주 평균 총 근로일수 () 일
2. 주 평균 총 근로시간 () 시간

문4. 선생님께서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에 다음 각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인성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추가(또는 강화)한다					
2.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관련 과목을 강화한다					
3. 대면수업에 의한 교육과목을 늘린다					
4. 비대면 교육과목을 늘린다					
5. (교과교육 중) 실기교육을 강화한다					
6. 현장 실습을 강화한다					
7. 양성교육의 총 교육 시간을 늘린다					
8. 양성교육의 질을 보강한다					
9. 양성교육과정에서 교과목 시험을 도입한다					

문4-10.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에 이 외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1. ()

문5. 선생님께서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취득 및 유지 과정에 다음 각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인적성검사의 실시 및 적용을 강화한다					
2. 채용 시 면접심사의 실시와 적용을 강화한다					
3. 아이돌보미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한다					
4. 현직 보수교육 시간을 늘린다					
5. 현직 보수교육의 질을 보강한다					

문5-6. 아이돌보미 자격취득 및 유지 과정에 이 외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1. ()

문6. 귀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등과 같이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필요 ->문7-2
2. 불필요 ->문7-2
3. 보통 ->문8

4. 필요 ->문7-1

5. 매우 필요 ->문7-1

//문7=4,5만 응답//

문7-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 ->문8

//문7=1,2만 응답//

문7-2.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

문8. 귀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요양보호사 등과 같이 아이돌보미에 대해 국가자격을 도입할 경우, 다음의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인적성검사 실시 및 적용					
2, 채용 시 면접심사 실시 및 적용					
3, 이론수업 중 교과목 시험(학과시험)의 실시					
4, 이론수업 중 실기관련 교육 강화					
5, 현장 실습 내실화					
6,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시험 도입					
7, 아이돌보미 1급-2급 자격체계 도입					
8, 아이돌보미 직무특성에 따른 구분 및 특화 (예: 신생아, 영아종일, 초등 등하원, 환아보호 등)					
9, 자격취득에 대한 연령 제한					
10, 자격취득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 마련					
11, 자격갱신 절차 마련 : 아이돌보미 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갱신 과정을 거치도록 함.					
12,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 및 이력 관리(관련 DB 구축)					

문8-13. 이외에 아이돌보미에 대해 국가자격을 도입할 경우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1. (　　)

문9-1. 만약 국가자격취득에 연령 제한을 둔다면, 몇 세까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이돌봄 활동에 대한 연령제한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 시 연령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만 (　　)세

문9-2. 만약 국가자격취득에 최저학력 기준을 둔다면, 최저학력기준으로 다음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중졸 이상
2. 고졸 이상
3. 대학(2~3년제) 졸업 이상
4. 대학(4년제) 졸업 이상
5. 학력 제한 필요 없음

문9-3. 만약 국가자격취득에 자격갱신절차를 둔다면, 몇 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　　)년
2. 자격갱신절차 필요 없음

문10. 귀하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도 도입 이후, 자격을 취득하는 신규 아이돌보미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요.

1. 현재처럼 양성교육과정(이론/실습) 및 신원조회/인적성검사/면접 후 국가자격 부여
2. 양성교육 교과목 수와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보강하여 국가자격 부여

 예) 현행 : 이론 80시간+ 실습 20시간 → 보강 : 이론 80시간+α + 실습 20시간+α

3. 국가시험을 도입하여 양성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시험 합격 시 국가자격 부여

4. 기타(　　)

문10-1.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양성교육 과정 수업 시간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성교육 과정을 교과수업(이론+실기)과 현장실습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0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 〈참고〉

- 요양보호사: 수업 [이론 80시간 + 실기교육 80시간] + 실습 80시간의 총 240시간 이수 후 국가시험 응시
- 건강가정사: 대학에서 12개과목 36학점이상 이수한 경우 국가자격 부여

현행:	교과수업 (80시간) + 실습(20시간)

1. 교과수업 현행 80시간 + (　　)시간 총 (　　)시간
2. 현장실습 현행 20시간 + (　　)시간 총 (　　)시간

문10-2. 국가자격 도입을 위해 양성교육 과정을 교과수업(이론)-교과수업(실기)-현장실습의 3개 과정으로 할 경우, 각각의 교육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교육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교과수업(80시간) + 실습(20시간)

1. 교과수업(이론) (　　)시간
2. 교과수업(실기) (　　)시간
3. 현장실습 (　　)시간
4. 총 교육시간 (　　)시간
5. 잘 모르겠다

//사업담당자 질문//

11. 귀하는 기존 아이돌보미에게 새로 도입되는 국가자격을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	부적절
	1	2
1. 현행/기존 아이돌보미 모두에게 일괄 국가자격을 부여한다(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2. 실제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3. 국가자격 도입을 위해 확대/강화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 이수한 아이돌보미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4. 새로 도입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아이돌보미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5. 기존 아이돌보미가 새로 도입된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환 기간을 일정기간 충분히 부여한다		
6. 새로 도입되는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기존 아이돌보미 자격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7.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취득 후,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체결 없이 민간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다		
8. 기타		

//문11-8.기타 항목에 1.적절 응답시//

문11-8-1. 귀하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방법으로 기타 방식이 적절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1. ()

2.

//문11-5. 유예기간 항목에 1.적절 응답시//

11-9. 기존 아이돌보미가 새로 도입된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규 국가자격으로의 전환 기간(일종의 유예기간)을 얼마 동안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예기간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0'년으로 응답하여 주세요.

1. ()년

//문11-3 2. 적절하지 않음 응답자//

문12-1. 양성교육과정 추가 이수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표기해주십시오

1. 교육과정이 힘들어서(교육내용이 어려워서 등)
2. 교육을 이수할 시간이 부족해서

3.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4.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이 번거로워서
5. 자격증 신청 및 발부에 비용이 들어서
6. 자격요건이 강화되면 일하기 부담되어서
7. 기타()

//문11-4 2. 적절하지 않음 응답자//

문12-2. 국가시험 응시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표기해주십시오

1. 국가시험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어서
2. 국가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3.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4. 기타()

문12-3-1. 국가시험 응시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경우, 국가시험의 난이도는 어느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1 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 과목당 60점 이상/전체 평균 80점 이상 시 합격
2. 과목당 60점 이상/전체 평균 60점 이상 시 합격
3. 과목당 40점 이상/전체 평균 60점 이상 시 합격
4. 과목당 40점 이상/전체 평균 40점 이상 시 합격
5. 기타()

문12-3-2. 국가시험 응시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경우, 국가시험의 난이도는 어느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1 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국가시험으로, 이에 합당한 난이도를 갖추도록 한다
2. 고연령/시간제 위주의 아이돌보미 활동 현황 및 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한다
3. 기타()

문13-1. 국가시험을 통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장점 ()
2. 단점 ()

문13-2. 양성과정 보강을 통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장점 ()
2. 단점 ()

문14. 귀하는 현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이론교육 80시간)을 받지 않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 현장실습(20시간) 및 아동학대예방 등 필수교육은 받도록 하고 있음.

1. 매우 부적절
2. 부적절
3. 보통 ->문15
4. 적절 ->문15
5. 매우 적절 ->문15

문14-1. 귀하는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가 양성교육(이론교육 80시간)을 받지 않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가정 현장실습(20시간) 및 아동학대예방 등 필수교육은 받도록 하고 있음.

1. 양성교육(이론교육 80시간) 이수 필요
2. 모든 교육은 아니지만 일부 이론교육(인권,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등) 이수 필요
3. 조정 필요하지 않음 - 현행대로 양성교육(이론교육) 이수 불필요
4. 잘 모름

문15.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이 다음 각 항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2	3	4	5
1. 아이돌보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2.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					
3. 아동학대의 예방					
4. 아이돌보미 이용 수요 증가(부모의 이용 확대)					
5. 서비스 미스매치 해소					
6. 아이돌보미로서의 자긍심 향상					
7. 아이돌보미 업무만족도 향상					
8.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제고					
9. 아이돌보미 일자리의 질/안정성 향상					
10. 아이돌보미 급여 및 처우 개선					
11. 아이돌보미 양성규모 증가					
12. 아이돌보미 활동 이력/경력 관리 체계 향상					
13. 아이돌봄사업의 공공성 확대					

문15-14. 이외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1. ()

문16. 국가자격 도입 시, '아이돌보미'에 대한 명칭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명칭 변경 필요함
2. 명칭 변경 필요하지 않음

문17-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을 '육아전문관리사'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적절 ->문17-1-1
2. 부적절 ->문17-1-1
3. 보통 ->문17-2
4. 적절 ->문17-2
5. 매우 적절 ->문17-2

//문17=1,2만 응답//

문17-1-1. 육아전문관리사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

문17-2.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에 대한 명칭을 제안하신다면 어떤 명칭이 좋을까요?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문18. 그 밖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

문19-1. 아래 [양성교육 과목]은 아이돌보미가 이수해야 하는 양성교육 과목입니다.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각 과목별로 교육시간 확대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I. 기본소양교육(총 교육시수 32시간) 중 아이돌봄 직무의 이해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해 (현행 1시간)		
2. 아이돌보미의 직업윤리와 역할 및 자질 (현행 3시간)		
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족의 이해 (현행 2시간)		
4. 아동관찰 및 부모면담 방법 (현행 4시간)		
5. 실습오리엔테이션 (신규 2시간 추가)		

문19-2. I. 기본소양교육(총 교육시수 32시간) 중 아동안전·건강관리 과목군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6. 아동의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현행 5시간)		
7. 아동의 건강관리 (현행 3시간)		
8. 성인지 교육 (현행 2시간)		
9. 아동안전, 건강관리 사례 및 토론 (현행 2시간)		

문19-3. I. 기본소양교육(총 교육시수 32시간) 중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교육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10. 아동권리의 이해 (현행 2시간)		
11. 아동학대 예방교육(1): 판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이해 (현행 2시간)		
12. 아동학대 예방교육(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 방법 (현행 1시간)		
13. 아동학대 예방교육(3):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방법 (현행 1시간)		
14.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사례 및 토론 (현행 2시간)		

문20-1. II.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총 교육시수 46시간) 중 영아 돌봄의 이해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15. 영아기 발달의 이해 (현행 2시간)		
16.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 (현행 2시간)		
17. 영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 (현행 3시간)		
18.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 (현행 2시간)		
19. 영아의 몸 다루기 및 베이비 마사지 (현행 3시간)		
20. 영아기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현행 2시간)		
21. 영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현행 4시간)		
22. 영아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현행 2시간)		

문20-2. II.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총 교육시수 46시간) 중 유아 돌봄의 이해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23.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현행 2시간)		
24. 유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실제 (현행 2시간)		
25. 유아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와 지도의 실제 (현행 2시간)		
26. 유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현행 4시간)		
27. 유아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현행 2시간)		
28.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신규 2시간 추가)		

문20-3. Ⅱ.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총 교육시수 46시간) 중 학령기아동 돌봄의 이해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29. 학령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현행 2시간)		
30. 학령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및 지도 (현행 4시간)		
31. 학령기 놀이 및 매체지도 (현행 3시간)		
32. 학령기 또래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현행 2시간)		
33. 학령기아동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현행 2시간)		
34. 학령기 아동 지도를 위한 스마트 기기 사용법 (신규 1시간 추가)		

문20-4. 지금까지의 양성교육 과목 이외에도 추가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십시오.

1. ()

문21-1. 아래 [보수교육 과목]은 아이돌보미가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과목입니다.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중 각 과목별로 교육시간 확대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기본과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실제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2. 아동의 안전관리		
3. 성희롱 예방		
4.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5. 아동심리 이해		
6. 부모상담		
7. 연령별 놀이지도(놀이활동, 동화구연, 종이접기, 손 유희 등)		
8. 놀이교구 제작 및 활용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제도 이해		
10.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		

문21-2. 특화과정 과목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확대나 추가 필요함	확대나 추가 필요하지 않음
	1	2
1. 영아기과정		
2. 유아기과정		
3. 학령기과정		
4. 놀이활동과정		

21-3. 문 20의 보수교육 과목 이외에도 추가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십시오.

1. ()

배문1.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만()세

2.

배문2. 귀하가 아이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한 총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1. ()년 ()개월

배문3. 귀 기관에서 아이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 인력은 현재 총 몇 명입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총 ()명

배문4. 귀하는 아이돌봄사업 담당자로서 업무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부록 3.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국가자격제(육아전문관리사) 관련 신구조문대비표(1안)

1. (1안) 자격시험 도입

가. 개요

1) 여성가족부의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증을 도입

2)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증은 현행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

3)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의 성격은 아이돌보미에게는 업무독점형 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육아도우미에게는 능력인정형 자격증으로 규정

4)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일정 경력 이상인 사람에게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부여는 대통령령에 위임

5) 개정법률 시행 유예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함

※ 교육과정 이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과목 수료 시 학과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1안)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2조(육아전문관리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시행 이전에 일정 경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보미	

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1안)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제3조(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아전문관리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육아전문관리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신설〉	**제3조의2(육아전문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육아전문관리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육아전문관리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육아전문관리사 양성 교육과정의 과목으로 한다. **제3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3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자로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육아전문관리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9(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육아전문관리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아전문관리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육아전문관리사 교육수료증명서 2. 별표 6의 제1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육아전문관리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실습확인서(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라 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

	는 제외한다) 3. 별표 6의 제1호나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	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실습확인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현장실습시간을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6.〉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제3조의10(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성·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19-51호]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중 교과학습 이론교육은 80시간으로 함(기본소양교육 32시간,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 48시간) ·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을 규정 - 아이돌보미 보수과정은 기본과정 8시간, 특화과정 8시간으로 규정 · 기본과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교육은 필수로 하며, 여타 교육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삭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6(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으로 대체)	

· 특화과정은 영아기과정, 유아기과정, 학령기과정, 발달에 따른 놀이과정(신체·인지언어·정서사회성 발달놀이)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국가자격제(육아전문관리사) 관련 신구조문대비표(2안)

1. (2안) 교육과정 강화 및 자격시험 미도입

가. 개요

1) 여성가족부의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증을 도입

2) 육아전문관리사 국가자격증은 강화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취득(자격시험 미도입)

3)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의 성격은 아이돌보미에게는 업무독점형 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육아도우미에게는 능력인정형 자격증으로 규정

4) 교육과정 이수 시 종합 학과시험 도입

5)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일정 경력 이상인 사람에게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부여는 대통령령에 위임

6) 개정법률 시행 유예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함

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2안)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제2조(육아전문관리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시행 이전에 일정 경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보미	

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2안)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	**제3조(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은 110시간 이상의 교과교육 및 2~2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과교육은 80시간의 이론교육과 30시간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아전문관리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총 240시간(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규정) - 교육과정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을 규정
〈신설〉	**제3조의2(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육아전문관리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아전문관리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육아전문관리사 교육수료증명서 2. 별표 6의 제1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육아전문관리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실습확인서(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라 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6의 제1호나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실습확인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시·도지사는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6.〉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의3(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1.「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성·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19-51호]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중 교과학습 이론교육은 80시간으로 함(기본소양교육 32시간, 아동 발달 단계별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 48시간) ·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	삭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6(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으로 대체)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비교검토(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간을 규정 - 아이돌보미 보수과정은 기본과정 8시간, 특화과정 8시간으로 규정 · 기본과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교육은 필수로 하며, 여타 교육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화과정은 영아기과정, 유아기과정, 학령기과정, 발달에 따른 놀이과정(신체·인지언어·정서사회성 발달놀이)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6]

육아전문관리사의 교육과정(제3조의2제2항 관련)

1. 육아전문관리사 양성 교육과정(안)_2안 기준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총 110시간			80	30
Ⅰ. 기본소양교육 (46시간)				
1	아이돌봄 직무의 이해 (12+2시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해	1	
2		아이돌보미의 직업윤리와 역할 및 자질	3	
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족의 이해	2	
4		아동관찰 및 부모면담 방법	4	
5		실습오리엔테이션	2	2
6	아동안전·건강관리 (12+9시간)	성인지 교육	2	
7		아동의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4	3
8		아동의 건강관리	3	2
9		아동안전, 건강관리 사례 및 토론	2	2
10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1	2
11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교육 (8+3시간)	아동권리의 이해	2	
12		아동학대 예방교육(1) : 판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이해	2	
13		아동학대 예방교육(2)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방법	1	2
14		아동학대 예방교육(3) :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방법	1	
15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사례 및 토론	2	1
Ⅰ.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 (64시간)				
16	영아 돌봄의 이해 (20+9시간)	영아기 발달의 이해	2	
17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	2	
16		영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	3	1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18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	2	2
19		영아의 몸 다루기 및 베이비 마사지	3	2
20		영아기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2	1
21		영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4	1
22		영아 돌봄 관련 사례 및 실제	2	2
23	유아 돌봄의 이해 (14+3시간)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2	
24		유아기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실제	2	
25		유아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및 지도의 실제	2	2
26		유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4	1
27		유아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2	
28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2	
29	학령기아동 돌봄의 이해 (14+4시간)	학령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2	
30		학령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및 지도	4	2
31		학령기 놀이 및 매체 지도	3	1
32		학령기 또래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2	
33		학령기아동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2	
34		학령기 아동 지도를 위한 스마트 기기 사용법	1	1

주. 2021년 양성교육과정 개편 내용 반영

가.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나.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 경력인정기관

※ 보수교육과정은 현행 유지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년도 제 회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시험)

응시번호		성 명		연락처	자 택 : 휴대전화 :
주민등록 번 호	-				사 진 (3㎝×4㎝)
주 소	□□□-□□□				
전자우편 (e-mail)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기관명	(소재지 : 시·도)			
	이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시간 : 시간)			
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 □ 경력자 과정 □ 자격·면허 소지자 과정				
자격·면허 종류	□ 보육교사 □ 유치원 교사 □ 초·중등교사 □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				
응시지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위에 기재·표기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시험실시기관의 장) **귀하**

절 취 선

응 시 표

(년도 제 회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시험)

응 시 번 호			사 진 (3㎝×4㎝)
성 명		응시지역	
주 민 등 록 번 호	-		

(시 험 실 시 기 관 명)

210㎜×297㎜ [인쇄용지(2급) 60g/㎡]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발 급 30일 재발급 7일

신청인	성명(한자)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육아전문관리사 교육기간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시험정보	시험시행일		시험합격일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시)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9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규발급 첨부서류	1. 육아전문관리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5.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수수료 신규: 10,000원 재발급: 2,000원
재발급 첨부서류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습니다)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호의3서식]

년 제 호

육아전문관리사 교육수료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수실적	교육과정명			
	강의과정 (이론 · 실기)	이수기간		이수시간(①)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실습과정	현장실습기관명	실습기간	실습시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실습시간(②)		시간
	총 이수시간 (①+②)			시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육아전문관리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4서식]

실습확인서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생년월일	교육기관명	교육과정종류

2. 현장실습기관

시설명	시설종류	주소	연락처

* 시설종류는 “시설” 또는 “재가”를 말합니다.

3. 실습지도자

이름	생년월일	소속	직위	담당업무	담당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실습확인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습시간	총 시간		
합격여부		평가점수(평균)	
비 고		실습지도자	(*자필서명*)

* 합격여부와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합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9제1항에 따라 위 실습이수자의 현장실습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실습시설(기관)의 장 직인

육아전문관리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5서식]

제 호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 성 명 :
○ 생년월일 :

사진
3cm×4cm

위 사람은 「아이돌봄 지원법」 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호의6서식]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

연번	자격증 번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발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